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 출자, 출연 등의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예산을 활용한 전기, 철도서비스 등 사업 집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국회에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은 645.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규모도 2019년 기준 861.1조원으로 전년 대비 32.8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며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보고서는 340개의 전체 공공기관 결산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내용과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및 자체 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경상운영비, 자체감사, 기부금 운용 등의 총괄 또는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저조, 손실 및 부채 증가, 법령 및 지침 위반, 사업 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정책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공공기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 실적제고 필요 3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지원사업 퇴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사회복귀
성과제고 필요 10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기금을 직접적인 갯생보호사업에 사용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필요 14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1.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경비의
집행 부적정 23
 - 1-1.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생활준비금, 이사보조비 등
집행 부적정 23
 - 1-2.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7
 - 1-3.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 개선 비용 등 집행
부적정 30
 - 1-4.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 비중 하락 33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 실시
부적정 등 37



2-1.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 실시 부적정	37
2-2.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의 사용용도 외 집행 과다 부적정	4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등	46
3-1.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46
3-2.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채용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	51
4. 한국교육개발원 수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택 필요 등	54
4-1. 수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택 필요	54
4-2.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하여 수탁사업 과제수와 비율의 과다 부적정	58
4-3.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원격지원 사업 등 수탁사업의 이월금 과다 발생 부적정	61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상운영비 성격이 강한 상해연구센터 사무실 임차료의 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64
6.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사업성과 확대 필요 등	68
6-1.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정책연구 기능의 협업 필요	68
6-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대 필요	71
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의 개원 기념식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 부적절	74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시연구사업비를 통한 학술행사 추진 부적정	78
9. 한국교통연구원의 계약 법령을 위반한 위탁용역 대가 지급 지연 부적정	82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비 외의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85
10-1. 연구관련사업비 외의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지양 필요	85
10-2.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일반사업비 비중 과다	88
11.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한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부적정 등	92
11-1. 연구사업비를 통한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부적정	92
11-2. 기관고유사업 수용비의 연례적 조정 증액 과다 부적정	97

CONTENTS

12.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퇴직자 대상의 과도한 포상 부적정 등	99
12-1.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포상 부적정	99
12-2.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 지원금 지급 지양 등	102
13. 산업연구원의 지침을 위반한 재외근무수당의 연구정보활동비 집행 부적정	104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한 연구연가자 생활준비금 등 지급 부적정	107

[국가보훈처]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5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15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의존도 심화	119

[금융위원회]

1.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 적정성 검토 필요	129
2.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관대화 경향 개선 필요	134
3.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마련 검토 필요	140
4.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상환 불가능 부채규모의 정확한 산정 필요	143
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149
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150
5-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출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의 이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5
5-3. 금융기관출연료를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한 금융기관출연료를 조정 등 검토 필요	16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1.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지원 사업의 설치목적 달성 위한 사업 관리 필요 171

교육위원회

[교육부]

-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업무위탁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지양 필요 183
- 2.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 부적정 18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193
 - 1-1.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의 공동 기술마케팅 개선 필요 195
 - 1-2. 융합연구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 제고 필요 203
 - 1-3. 출연연 지역조직의 운영 실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09
-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사업의 집행 부진 등 개선 필요 215
 - 2-1.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의 안테나 개발 지연 217
 - 2-2.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수신 등 위성운영주체 일원화 검토 필요 221
 - 2-3. 우주센터 2단계 건설 등 시설사업비 실집행률 개선 필요 226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사업과 기금사업 이원화 부적정	229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유임무 사업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관리강화 필요	230
3-2. 주요사업과 ETRI지원 사업 간 연구성과 불균형	237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방식 고도화 필요	243
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료 수입 관리 개선 필요	247
4-1.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료 수입의 사용 배분 부적정	248
4-2. R&D 재투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료 사용을 지양할 필요	252

법제사법위원회



부부

가.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의 부족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¹⁾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은 2017년도 5월에 시작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총 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조정위원 73명, 심사관 13명, 조사관 18명, 실무관 6명으로 전체 110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다.

2019년도 법률구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527억 3,6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법률구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률구조	52,736	52,736	0	0	52,736	52,736	0	0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나. 분석의견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의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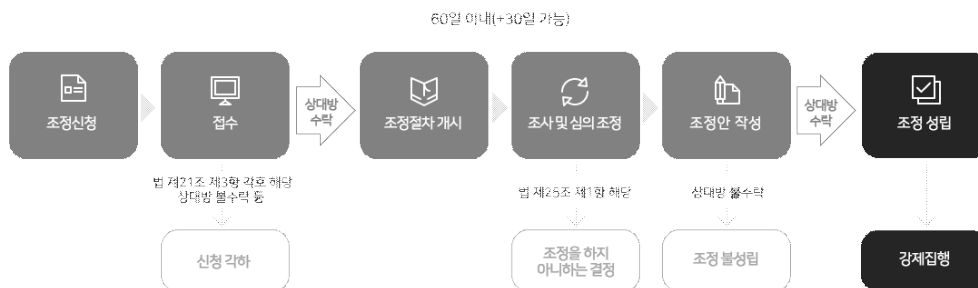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수락여부에 따라 조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정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조사 및 심의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안이 작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때 성립된 조정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90일 내 진행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 조정절차]



자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사업 실적은 조정개시로 인해 처리가 완료된 사안에 한해 산정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전체 접수 건수는 1,088건이며, 이중 조정개시 된 사건은 364건으로 접수된 사건 대비 조정개시 사건 비율이 약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2,711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941건이 조정개시 처리되어 34.7%의 실적이 나타났다.

반면 2019년도는 상대적으로 접수 사건(수)의 증가로 총 2,861건이 접수되었으나, 실제 조정개시 된 사건은 지난해 보다 78건 적어진 863건으로 접수 사건(수) 대비 조정개시 되어 처리된 사건(수)의 비율은 약 30.2%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실적('17~'19)]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진행
		계	조정 미개시	조정 개시					
				조정 성립	조정불 성립	미조정 결정	취하 등	소계	
2017	1,088	892	528	266	37	2	59	364	196
	(100)	(82.0)	(48.5)	(24.4)	(3.4)	(0.2)	(5.4)	(33.5)	(18.0)
2018	2,711	2,541	1,600	653	63	5	220	941	170
	(100)	(93.7)	(59.0)	(24.1)	(2.3)	(0.2)	(8.1)	(34.7)	(6.3)
2019	2,861	2,697	1,834	533	55	2	273	863	164
	(100)	(94.3)	(64.1)	(18.6)	(1.9)	(0.1)	(9.5)	(30.2)	(5.7)

주: 2017년은 7월부터 사업이 실시되어 6개월의 성과만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임대차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개시되어 처리된 사건의 실적이 낮다는 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사업의 경우, 양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해결에 동의 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가 조정제 불응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조정강제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²⁾ 하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신청에 따른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실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이와 같은 처리건수 외에도 공단의 실적지표의 하나인 사건 조정처리 소요기간 역시, 2019년도 목표치는 32일이었는데 반해 45.6일이 걸린 만큼,⁴⁾ 해당 조

2) 2020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정강제개시가 가능해 졌다.

3) 의안번호: 24934

4) 2017년도 12월 법무부에서 실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기간의 신속성을 묻는 항목에 신속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아, 이에 대해 국제사법위원회의 2017년도 법무부에 대한 결산검토보고서 상 조정신청사건 처리소요기간을 성과지표에 넣도록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정처리기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신속한 분쟁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해 조직 및 인원배치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는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로 총 6개의 지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부별로 조정위원,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을 두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조정위원의 경우 비상임으로 해당 인원을 제외한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019년도 기준, 수원 지부는 심사관 4명, 조사관 4명, 실무관 1명으로 전체 9명에 의해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부대비 높은 인적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인적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서울지부로 2명의 심사관, 4명의 조사관, 1명의 실무관으로 전체 7명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장 적은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구지부로 총 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지부가 없는 강원, 인천, 제주 등의 지역은 공단 지부에서 정한 관할 구역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다.

[2019년도 지부별 인력 및 관할구역 현황]

(단위: 명)

지역	인력현황					관할범위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	합계	조정위원	
서울중앙	2	4	1	7	13	서울, 강원도
수원	4	4	1	9	17	인천, 경기도
대전	2	3	1	6	9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1	2	1	4	9	대구, 경북
부산	2	3	1	6	13	부산, 울산, 경남
광주	2	2	1	5	12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3	18	6	37	73	

주: 조정위원의 경우 비상임으로 상근하지 아니함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업에 대한 지부별 신청 건(수)는 서울중앙 761건, 수원 640건, 대전 345건, 대구 555건, 부산 297건, 광주 263건으로 총 2,861건이 접수되었다. 운영인원 1인당 조정개시 건(수) 평균은 23.3건이며, 가장 인적 구성이 낮은 대구의 경우 운영인원 1인당 조정개시 건수가 평균 47.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 부산이나 광주의 경우 1인당 조정개시 건수가 각각 10.7건, 13.8건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지부의 경우 분쟁접수 건 역시 297건, 263건으로 타 지역 대비 접수 및 조정개시 실적 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지부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실적]

(단위: 건, %)

구분	운영 인원	접수	처리		진행	운영인원 1인당 조정개시처리건
			조정미개시	조정개시		
서울중앙	7	761 (100.0)	549 (72.1)	185 (24.3)	27 (3.5)	26.4
수원	9	640 (100.0)	393 (61.4)	219 (34.2)	28 (4.4)	24.3
대전	6	345 (100.0)	202 (58.6)	135 (39.1)	8 (2.3)	22.5
대구	4	555 (100.0)	277 (49.9)	191 (34.4)	87 (15.7)	47.8
부산	6	297 (100.0)	224 (75.4)	64 (21.5)	9 (3.0)	10.7
광주	5	263 (100.0)	189 (71.9)	69 (26.2)	5 (1.9)	13.8
전체	37	2,861 (100.0)	1,834 (64.1)	863 (30.2)	164 (5.7)	23.3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지부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인원과 조정신청 건수, 개시 건수 등의 실적과 비교할 경우 지부별로 인당 처리건수의 차이가 최대 37.1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접수되는 사건 건수의 추이에 따라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인당 처리건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업을 실시하고도 있다는 점에서 지부별 운영인원 및 실적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정절차, 처리비용, 조정효과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19년도 경기도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는 4건이며, 서울시의 경우 113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 서울시의 경우 11명으로, 지자체의 경우 사건 접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경기도나 서울시의 조정위원회 인력을 감안하여, 인당처리건수가 높은 지역이나, 지부가 없는 지역에 대해 공단 인력의 유동적 배치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실적 및 사건의 조정처리 소요기간 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시
상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례제정('17.9.29), 규칙제정('18.1.11)	- 주택 임대차보호법 · 조례제정('16.5.19)
위원회 구성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구성일 : '18.2.1 · 위원수 : 15명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구성일 : '16.9.1 · 위원수 : 11명
상담센터 운영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소일 : '09.4.18 · 상담위원 : 20명(공인중개사)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개소일 : '02.11.1 · 상담위원 : 35명(변호사19, 공인중개사 16)
처리비용	- 수수료 10,000원 ~ 100,000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동일)	
조정효과	- 법에 따른 강제력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동일)	

자료: 경기도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인당 조정개시처리 비율의 차이를 줄이고, 해당 지부가 관할하는 범위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강원,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 인원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지원사업¹⁾은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안정된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2018년도 10월 보호사업의 인권경영 추진 및 생활관 입소자에 대한 자립의식 함양, 자치적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자율형 생활관의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1월 기준 청소년 기관 3개소(서울서부, 전남동부, 광주남부)를 제외한 전 기관(21개)에 확대 실시하고 있다.

숙식제공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보호심사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의 수혜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24개월 까지 숙식제공 및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동 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숙식제공지원사업 프로그램]

- 자율형 생활관 운영으로 자립기반 마련, 직업훈련, 취업 등의 생계활동
- 상담 및 사회성향상 교육을 통한 정보습득, 심성순화, 여가활동
- 회복적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청소, 복지기관 방문 등)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korecha.or.kr>)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34억 2,600만원이며, 28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숙식제공지원사업(자율형생활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숙식제공지원사업	3,426	3,426	0	0	3,426	2,872	0	554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1633-300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숙식제공지원사업 퇴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지원사업의 보호 종료는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자립한 자, 보호자에게 인계된 자, 취업 퇴소한 자, 사망 또는 무단 퇴소한 자, 범죄행위로 구속된 자, 징계 퇴소한 자, 자진 퇴소한 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퇴소한 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 규칙 제33조에 의해 대상자가 보호 종료를 한 때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며, 단 숙식제공, 직업훈련, 주거 지원 대상자 등 현 재원에 대해서는 보호, 진로, 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 멘토링 관리를 성실하게 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퇴소자 중 사후관리에 동의한 인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퇴소자는 1,077명이며, 사후관리 동의인원은 493명으로 전체 퇴소자 대비 사후관리 동의 비율은 45.8%정도이다. 해당 비율은 2017년 50.7%, 2018년도 49.9%에서 다소 하락하고 있는데, 해당 사후관리를 받게 되면, 면접, 통신, 방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선행유도, 범죄성 있는 지인과의 교제금지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활동을 막고자, 퇴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많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만약 해당 사업 지원이 퇴소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퇴소자 관리 방식의 변화를 통해 퇴소자에게 실질적으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개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숙식제공지원사업 사후관리 동의 인원 추이('15~'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종료인원	1,702	1,624	1,527	1,318	1,077
사후관리 동의인원	627 (36.8)	660 (40.6)	774 (50.7)	658 (49.9)	493 (45.8)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징계로 인한 퇴소자의 경우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등에 해당사항이 없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2019년도 숙식제공지원사업의 수혜자 중징계로 퇴소한 자는 총 14명으로, 2018년도 대비 약 4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제공지원사업 수혜자 중 징계퇴소자 추이('15~'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수혜자	2,340	2,273	2,167	1,846	1,568
징계로 인한 퇴소자	7 (0.3)	4 (0.2)	12 (0.6)	10 (0.5)	14 (0.9)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징계로 퇴소할 경우 사회복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식제공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사회복지 성과의 하나로 취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숙식제공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소자에 대한 자립의식 및 자치적 해결 능력 배양으로, 사회에서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숙식제공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의 생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성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퇴소자 중 취업자 수는 전체 퇴소자 1,077명 중 179명이 취업자로 약 16.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도별 숙식제공지원사업의 퇴소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도 23.6%, 2016년도 21.5%, 2017년도 24.8%, 2018년도 24.4%, 2019년도 16.6%로 2019년도 취업률이 지난해인 2018년도에 비해 약 7.8%p 감소하여, 지난 연도보다 다소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식제공지원사업 퇴소자 취업률 추이('15~'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퇴소자(수)	1,702	1,624	1,527	1,318	1,077
퇴소자 중 취업자(수)	401 (23.6)	349 (21.5)	378 (24.8)	322 (24.4)	179 (16.6)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숙식제공지원 사업의 수혜자들의 취업률 하락은 실질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취업관련 교육을 기반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숙식제공지원 사업의 수혜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기금을 직접적인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필요

가. 현 황

갱생보호활동¹⁾ 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숙식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2019년도 예산액 275억 7,200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2019회계연도 갱생보호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갱생보호활동	27,572	27,572	0	27,572	27,572	0	0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갱생보호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 공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²⁾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1633-30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9년 말 기준 기금의 규모는 15억 5,400만원이며, 공단은 법령에 따라 기금을 공단의 일반회계(국고보조금 사업비 등)와 구분하여 별도계정으로 운용·관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용·관리하고 법무부가 감독하는 갱생보호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갱생보호기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 충당, 지방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초 설치 목적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지출액은 최근 10년간 평균 90만원이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출된 금액이 없다. 대신 공단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 대여가 주된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3년의 경우 기금 총액 8억 8,700만원 중 86.1%인 7억 3,500만원을 일반회계에 대여하고 있었다.

-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갱생보호기금 운영 현황(2010~2019)]

(단위: 백만원)

연도	이월금 (A)	모금액 (기부금 등)(B)	일반회계 대여금 (C)	회수금 (일반회계 의 대여금 반납)(D)	금융수입 (예금이자 등)(E)	합계 (F=A~E 합계)	갱생보 호사업 지출 (G)	기말잔액 (F - G)
2010	646	26	190	25	0.7	887	9	879
2011	714	19	165	25	0.7	923	1	923
2012	241	9	681	25	0.4	957	0	957
2013	103	0	764	20	0.3	887	0	887
2014	152	0	735	29	0.3	916	0	916
2015	191	0	706	29	0.3	926	0	926
2016	249	0	677	29	0.3	955	0	955
2017	308	0	648	29	0.4	985	0	985
2018	366	0	619	29	0.4	1,014	0	1,014
2019	424	504	36	583	8	1,554	0	1,554
평균	343	56	518	82	1.1		0.9	

주: 1. 예금은 평잔 기준, 그 외 항목은 기말 기준임

2. 2019년 모금액 증가는 각 지부에서 관리하던 기부금을 갱생보호기금으로 적립시킨 데에 기인함

3. 일반회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일반회계임

4. 일반회계 대여금은 각 연도의 신규 발생액이 아니라 각 연도의 대여금 잔액임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단은 기관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기금을 이용하여 충당하고 장기간(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거나 자금 확보 후 일시상환하였는데 최근 11년간 대여 사유는 공단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 지방이전 신축사옥 부지매입비 부족이었다.

[갱생보호기금의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2009~2019)]

(단위: 백만원)

연도	사유	금액	이자율	회수 일정
2009	인건비부족	200	0%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20백만원씩 회수 (2019년 회수 완료)
2012	퇴직금 부족	90	0%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9백만원씩 회수
2012 ~ 2013	지방이전 신축사옥 부지매입비 부족	553 (2012년 415) (2013년 138)	0%	양천빌딩 매각 대금으로 2019년 일시 상환 완료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은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기금의 사용처는 갱생보호,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단의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단의 인력운용이나 지방이전 등을 위한 기금 대여가 기금의 용도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갱생보호를 위한 직접 사업에는 지출하지 않고 공단 대여금으로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 설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금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접적인 갱생보호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갱생보호기금의 운용수익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0만원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수익금, 공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이다.

공단은 수지차 보전 방식을 적용받는 기관³⁾으로 공단의 사업수입금은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기부금은 수령 시기와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재원이다. 결국 운용수익금이 기금 증식의 주요한 수단이다.

최근 10년간 공단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운용수익인 이자수입액은 연평균 1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여유자금을 이율이 0.1%인 보통예금에 예탁하였고, 2019년에야 6개월 만기 상품에 15억원을 예탁하여 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었다.

3) 수지차 보전 방식을 적용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갱생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2010~2019)]

(단위: 백만원)

연도	이자수입	보통예금 예치액 (이율 0.1%)	정기예금 예치액
2010	0.7	697	-
2011	0.7	758	-
2012	0.4	311	-
2013	0.3	123	-
2014	0.3	181	-
2015	0.3	220	-
2016	0.3	278	-
2017	0.4	337	-
2018	0.4	395	-
2019	8	11	1,500 (6개월 만기, 이율 1.8%)
평균	1.1		

주: 보통예금 예치액은 평잔기준임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공단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온 것은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에 자금을 보관할 때에도 자금의 상시 출납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가능한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필요가 있다.

공단의 내부규정인 「갱생보호기금 운용·관리 규정」⁴⁾ 또한 기금의 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의 예입, 수익증권 매입, 부동산 취득 및 수익사업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용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합리적인 운용수익을 통해 기금이 증식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계획과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갱생보호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8조 (기금증식사업) ①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5. 기타 장기성 예금 금리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1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경비의 집행 부적정

한국개발연구원¹⁾ 사업은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및 관계기관 공무원 기타 단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등에 대한 연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부설 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429억 1,700만원 중 374억원을 집행하였고, 30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 연구원	41,539	41,539	1,378	0	42,917	37,400	3,025	2,49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1.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생활준비금, 이사보조비 등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학위과정 운영 사업은 정책학, 개발정책학, 공공관리학으로 구성된 석사과정과 국제개발정책 혹은 개발경제 분야 전공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개발정책학 박사과정 등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업 운영비, 교재비용 등을 지원하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기본연구사업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9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9-301

[2019회계연도 학위과정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학위과정 운영	906	906	0	9	915	915	0	0

자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나. 분석의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연구사업과의 관련성, 사업목적 연관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의 학술파견을 위한 해외 이사준비비, 생활보조금, 항공료 등을 기본연구사업비로 집행하였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내부 규칙인 「학술파견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라, 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연구직으로서 근속 5년을 경과한 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타기관 등에서 전문지식을 활용 또는 연마할 수 있도록 1년을 기한으로 학술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2015~2019년도 동안 학술파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생활준비금, 의료보험료 등의 경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015년 생활준비금 2,785만원과 왕복항공료 1,427만원, 2019년 의료보험료 1,035만원, 생활준비금 2,941만원, 왕복항공료 2,445만원 등의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이사준비비, 의료보험료 등을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연구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술파견 시행규칙」

제3조(신청자격) ① 학술파견 신청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연구직으로서 근속 5년을 경과한 자
2. 제1호의 자격자 중 국제기구파견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자
3. 이 규칙에 의한 학술파견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자

② 전 제1항의 근속기간 산정시에는 연구직과 교원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며, 교원이 학술파견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책임과목을 완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근속기간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학술파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생활준비금, 의료보험료 등의 경비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연도	인원	경비						
			해외 근무 수당	의료 보험료	생활 준비금	이사 보조비	왕복 항공료	자녀 학자금	합계
연구 사업비	2015	4	70,040	4,391	27,845	0	14,270	160	116,706
	2016	4	16,113	△101 ³⁾	0	0	0	0	16,012
	2017	3	13,997	2,000	7,046	0	4,620	0	27,663
	2018	6	26,917	0	13,619	0	6,589	0	47,125
	2019	6	89,630	10,346	29,405	11,693	24,445	0	165,519

자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학술파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준비금, 의료보험료 등을 집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학술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준비금, 이사준비비 등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⁴⁾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한다. 즉, 연구사업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조직에서 연구의 추진을 위해 편성·집행한 경비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기본연구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편성지침 상 기관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에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의 해외 생활에 필요한 생활준비금, 이사보조비, 왕복항공료, 자녀학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3) 학술파견 조기 복귀에 따른 환수

4)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15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한다. 즉, 연구사업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조직에서 연구의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한 경비로 한정한다.

[기관고유사업의 분류]

구분	내용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

둘째, 국제개발정책 등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동 사업을 내부 직원의 학술파견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에 해당한다.

동 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설립 목적인 「한국개발연구원정관」 제5조제9호5)에 따른 개발 및 공공정책 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학위과정 운영과 필요한 각종 행사, 교재마련, 학위과정 추진을 위한 학생장학금 등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학술파견자는 내부 연구직 직원으로 파견기간 동안은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직접 수업을 실시하는 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타 기관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위과정 운영 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학술파견자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따라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연구사업과의 관련성, 사업목적 연관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의 학술파견을 위한 해외 이사준비비, 생활보조금, 항공료 등을 기본연구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한국개발연구원정관」

제5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9. 개발 및 공공정책 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 개발정책 교육관련 연구·자문

1-2.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가. 현 황

민간투자지원사업은 민간투자제도의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질의답변 등의 정책서비스와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층적인 연구 및 세부요령을 마련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일반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7억 6,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억 8,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억 5,7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간투자지원 사업	769	769	688	0	1,457	834	623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개발연구원의 일반사업인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⁶⁾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부의 제도수립 지원 및 관련 연구 수행,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민자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협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검토, 자금제조달 및 사업 시행조건 조정 관련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일반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5~2019년도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전체 예산현액 22억 2,500만원 중 17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이 4억 9,900만원이며, 매년 이월액이 2016년 9억 1,700만원, 2017년 9억 7,400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예산액 7억 6,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억 8,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억 5,7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6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7.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	2,225	0	2,225	1,726	499	0	77.6
2016	3,060	499	3,559	2,642	917	0	74.2
2017	3,050	917	3,967	2,993	974	0	75.4
2018	2,270	974	3,244	2,556	688	0	78.8
2019	769	688	1,457	834	623	0	57.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처럼 동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며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한국개발연구원의 2015~2019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예산상 연구과제 대비 실제 연도 내 완료된 과제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민간투자 연구사업의 과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총 7개의 연구과제를 예산상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연내에 2개 과제만이 완료되는 등으로 완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매년 예산상 목표로 하였던 연구과제가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

고 다음연도로 이월 완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동 사업의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완료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연내 완료	예산	연내 완료	예산	연내 완료	예산	연내 완료	예산	연내 완료
민간투자 연구사업		9	2	9	5	13	9	3	15	7	2
정책 서비스	국제협력	2	2	2	2	2	3	2	2	2	2
	국내 교육	8	8	15	15	15	15	14	14	14	14
	Infra Info DB	2	2	2	2	5	5	5	5	4	4
합계		21	14	28	24	35	32	24	36	27	2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19년의 경우에도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기본 계획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민자투자 연구과제의 착수시점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일부 예산의 경우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⁷⁾으로 예산 편성 기간과 집행기간의 불일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방식의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컨퍼런스에 참여 예정인 3개국 참석예정자가 불참하여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1-3.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 개선 비용 등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은 경제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청소년 및 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다양한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분석하고 지식자원화하여 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17억과 다음연도 이월액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7억 5,500만원 중 1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	1,700	1,700	55	0	1,755	1,588	167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이 아닌 연구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경제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비용 등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비인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관련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주로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다.

[기관고유사업의 구분]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따라서, 연구관련사업에 속하는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에서도 연구사업과 관련되는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당 사업에서 연구관련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정보제공 사이트 기능개선 등 연구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017~2019년도 동안 경제정보제공 사이트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관련사업비로 2017년도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계약 대금 1,9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연구관련사업인 동 사업을 활용하여 사이트 기능개선 외부용역 선급금과 완료금 4,84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구관련사업을 활용한 사이트 기능 개선 용역비 등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행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 (연구관련사업)	2017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계약 대금	19,800
	2019	사이트 기능개선 외부용역 선급금과 완료금	48,4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연구지원사업이 아닌 연구관련사업에서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개선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4.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 비중 하락

가. 현 황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연구관련사업과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 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기관고유사업의 분류]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집행 세부지침」

나. 분석의견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 고유 연구 기능의 수행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5~2019년도 동안의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관고유사업비 71억 200만원 중에서 기본연구사업비가 23억 4,500만원으로 33.0% 수준이었으나, 2017년은 기관고유사업비 78억 300만원에서 기본연구사업비가 21억 2,100만원으로 전체 대비 27.2% 수준이며, 2019년은 기관고유사업비 50억 4,400만원 중에서 기본연구사업비가 8억 200만원으로 15.9%로 하락하여, 기관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비 연도별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관고유사업(A)	7,102	7,882	7,803	7,803	5,044
연구지원	1,017	1,167	1,167	1,167	998
연구관련	3,740	4,520	4,515	4,515	3,244
기본연구사업(B)	2,345	2,195	2,121	2,121	802
기본연구사업 비중(B/A)	33.0	27.8	27.2	27.2	15.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그 외의 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비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전체 대비 5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0.3%, 산업연구원은 54.6%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사업과 국제행사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연구관련사업 규모가 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기본연구사업비 비중이 28.4%로 한국개발연구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 비중은 다른 유사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비 연도별 비중 현황(2019)]

(단위: 백만원, %)

구분	행정	보건	대외	산업	노동	개발
기관고유사업(A)	1,797	2,357	5,894	3,814	2,050	5,044
연구지원	424	672	713	818	286	998
연구관련	402	264	3,508	912	845	3,244
기본연구사업(B)	971	1,421	1,673	2,084	919	802
기본연구사업 비중(B/A)	54.0	60.3	28.4	54.6	44.8	15.9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과 연구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관련사업은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학술 및 정보교류, 국제연찬사업 등의 주로 교육, 국제교류, 학술행사에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지원사업은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으로 내역이 이루어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사업명	2019 예산	사업명	2019 예산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사업	1,700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550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877	도서자료 관리 및 정보제공	365
학술 및 정보교류	448	연구기획사업	43
북한경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 및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운영	50	POD(Print On Demand) 운영사업	40
국제연찬사업	13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제정보 제공	32		
합계	3,244	합계	99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관련사업인 국제교류, 학술행사 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기관의 대외적인 교류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⁸⁾에 따른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주요 업무가 재정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므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대비 기본연구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비 비중이 최근 하락하는 추세이며 타 기관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¹⁾ 사업은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 연구,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336억 2,600만원 중 30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31,935	31,935	1,691	0	33,626	30,228	1,899	1,50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 실시 부적정

가. 현 황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조세·재정정책의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소 등과 함께 국제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등과 같은 학술·정책연구 교류를 수행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사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액 3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억 5,400만원 중 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8-301

연도로 7,9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제기구협력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협력 사업	395	395	159	0	554	476	79	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을 추진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 사업계획에서 동 사업을 통하여 OECD 국제재정포럼, OECD-KIPF 공동 영문보고서 출판, 덴마크 정부와의 공동출판 사업, 하와이대학의 동서문화센터(EWC), 한미경제학회 등과 국제회의 개최 등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OECD 사업	○ OECD 내의 재정정책 분야 전문가 및 OECD 회원국의 재정 정책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OECD-KIPF 공동 영문보고서로 출판 ○ 기획재정부가 매년 본원에 의뢰하는 OECD-한국 기획재정부-KIPF 공동주최 「OECD 국제재정포럼」을 지속 추진
덴마크 정부와의 공동출판 사업	○ 2007년부터 본원은 중앙·지방 간 재정분야의 세계적 학자들 및 유럽 정부의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IPF-덴마크 정부 공동주관 국제세미나를 격년으로 지속적으로 개최 ○ 2019년에는 KIPF-덴마크 정부의 국제세미나 및 공동 출판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보고서를 출간할 예정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국제회의 사업	○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IDB, 하와이대학의 동서문화센터(EWC), 한미경제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 등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에서 OECD Fiscal network annual meeting에 참석하는 등 OECD 관련 학술교류, 공동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랑스와 미국 하와이 방문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출장 계획]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미국(하와이) ²⁾
출장목적	OECD Fiscal network annual meeting 참석 등 OECD 관련 업무수행	EWC MOU 체결 업무협의
출장자(역할)	실장급,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국외출장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 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국외출장을 추진한 문제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도에 최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오스트리아를 출장지로 하는 WU Global Tax Policy Center와 MOU 체결 및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출장과 독일의 경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RWI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된 국외출장을 추진하였다.

물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정변경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국외출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동 사업에서 추진된 대부분의 국외출장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계획에 포함된 출장은 OECD 고위 예산당국자 네트워크 성과관리 연례회의에 참여하는 프랑스와 미국(하와이) 출장 비용인 약 1,900만원 정도만 계획과 일치하여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국외출장은 최초와 변경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EWC 관련 국외출장을 제267차 정기이사회(19. 3. 28)에서 이월금에 따른 변경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였다.

[국제기구협력사업 사업에서 추진된 국외출장 현황(2019)]

(단위: 백만원)

국가	일시	국외출장내용	여비 집행액	계획 포함 여부
미국	2. 24. ~ 2. 28	○ 2019 KIPF-EWC Conference에서 “포용적 성장과 조세정책” 이라는 주제로 토론 및 발표	10	○
독일, 벨기에	7. 13 ~ 7. 21	○ 독일의 경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RWI (Rheinisch-Westfäl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및 대표적인 응용과학기술연구소 Fraunhofer ISI를 방문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 ○ 벨기에의 EU기관인 ECSG(European Cards Stakeholders Group)와 독일의 연방통계청을 방문하여, 유럽국가의 카드사용 및 수수료에 관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통계자료 등을 수집	11	×
프랑스	11. 4 ~ 11. 10	○ OECD Workshop on Govern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in Government Administration에 참여 ○ OECD 고위 예산당국자 네트워크 성과관리 연례회의에 참여	9	○
오스트리아, 스위스	10. 6 ~ 10. 12	○ WU Global Tax Policy Center와 MOU 체결 및 상호협력방안 협의 ○ High Level Digital Economy Taxation Conference 참석	8	×
태국	12. 11 ~ 12. 14	○ OECD 아시아지역 고위 예산당국자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여 ○ OECD Asian Budget Survey 관련 의견 수렴에 참여 ○ 본원과 OECD의 공동 연구사업 추진 과정 확인을 위한 회의	2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타 사업인 국제교류협력 사업에서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인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국제재정학회(IIPF), 미국조세학회(NTA), 아태경제학회(APEA) 등에서의 국제적 학술활동과 미국행정학회(ASPA), 한미경제학회(KAEA),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대만중화재정학회(CAPF)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국외여비, 연구정보활동비 등을 편성한 사업이다.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2019년도 추진된 국외출장을 살펴보면, 독일을 출장지로 독일 정부, 위원회 등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출장지로 미국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ASPA)의 2019년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국제기구협력사업과 유사한 해외 기관 방문, 학술대회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 국외출장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협력사업에서 추진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출장의 용도로 집행이 가능하다.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추진된 국외출장 현황(예시)]

국가	일시	국외출장내용
독일	2. 24. ~ 3. 2	- 독일의 정부, 주요 위원회, 기업 등을 방문하여 경제 정책과 일자리 대책을 파악, 국내 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방안을 모색 - 정책기획위원회(비전 2040 경제팀)의 주관으로 독일 현지 조사 - 독일의 경제에너지부, 사민당, 인더스트리 4.0 위원회, 독일 경제인 연합회, 독일 노총(DFG),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Factory (창업센터) 등 방문
미국	3. 8 ~ 3. 13	- 미국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ASPA)의 2019년 연례학술대회 참석 - 정부재정(Public Finance)관련 과제협의 및 전문가 자문
스페인	7. 27 ~ 8. 1	정책분석·관리학회(Association for Public Analysis & Management, APPAM)의 2019년 국제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연구관련사업에 해당하여, 독일의 경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RWI 등을 방문하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외출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사업에 속하는 동 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없고 연구관련사업인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2.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의 사용용도 외 집행 과다 부적정

가. 현 황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은 조세·재정정책 및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각 주제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내 연구위원과 외부학자 및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과제별로 토론회 및 포럼을 수시로 개최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액 1억 3,9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139	139	0	0	139	134	5	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인 동 사업을 경상경비 용도인 채용 관련 세미나로 집행한 문제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고유사업은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며,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이 포함된 연구관련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고유사업의 분류]

구분	내용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인 동 사업을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예산의 일부분을 연구인력의 채용을 위한 세미나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의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7~2019년도 동 사업의 예산을 연구위원 세미나, 고객만족도조사에 집행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년사(영문판) 발간 502만원, 2017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1,376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19년도 AEA Annual Meeting 참석 및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심사(여비) 2,825만원, 박사 리크루트 세미나 개최 비용 2,205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2020년도 AEA Annual Meeting 참석 및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심사 3,306만원, 박사 리크루트 세미나 개최 2,983만원 등을 집행하여, 연구관련사업이자 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인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을 채용 세미나, 채용을 위한 국외출장, 고객만족도조사 등의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채용, 고객만족도조사 등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한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년사(영문판) 발간	5,016
	2017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13,760
	소 계	18,776
2018	2019년도 AEA Annual Meeting 참석 및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심사(여비)	28,245
	박사 리크루트 세미나 개최	22,050
	연구위원 채용 광고	801
	소 계	51,096
2019	2020년도 AEA Annual Meeting 참석 및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심사	33,606
	박사 리크루트 세미나 개최	29,825
	소 계	63,43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의 집행액 중 채용,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등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의 경우에는 11.2%에서 2018년 39.8%, 2019년 47.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 사업의 목적과 달리 집행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 집행액 대비 경상경비로 집행한 금액의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사업 집행액(A)	170	128	134	432
채용 등 경상경비 성격 집행액(B)	19	51	63	133
B/A	11.2	39.8	47.0	30.8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이 연구관련사업이며 사업목적이 토론회, 협의회 개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활용하여 채용 관련 경비나 고객만족도조사 등의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¹⁾ 사업은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312억 8,000만원 중 28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9,401	29,401	1,879	0	31,280	28,520	2,244	51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 필요한 국제행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타당성조사, 일몰연장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반사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액 3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억 7,0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4-301

[2019회계연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387	387	83	0	470	136	334	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분석의견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사업수행체계를 개선하여 동 사업의 예산액 규모에 대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몰연장평가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²⁾에 따라,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며, 여러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는 같은 규정 제15조제3항³⁾에 따라 전담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수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 ①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신청서

③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1조의2제1항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7의 일몰연장신청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제3항의 일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사의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년도 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몰연장신청서
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3)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 일몰연장평가의 의뢰) ③ 타당성조사, 일몰연장평가(이하 '타당성조사' 등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타당성조사 등의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의뢰받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일몰연장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보고서 제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및 일몰연장평가의 사업수행체계]

구분	기관	업무내용
타당성 조사	국제행사 주관기관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전년도4) 12월말 까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 타당성조사 신청서(해당 되는 경우) (전년도 1월말)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행사 중 심사대상 사업을 확정 하고 타당성조사 등을 의뢰(전년도 2월말 또는 3월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 타당성 검토 및 보고서 제출
	기획재정부	○ 승인심사
일몰연장 평가	국제행사 주관기관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 일몰연장신청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 일몰연장신청서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몰연장신청서의 접수 현황을 위 원회에 보고하고 일몰연장평가를 의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 일몰연장평가 타당성 검토 및 보고 서 제출
	기획재정부	○ 연장평가심사

자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바탕으로 제작성

이러한 국제행사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체계와 예산 편성 시점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4)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국고 지원이 최초로 필요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국제행사의 타당성조사 및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하는 특정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는 해당 연도 2월말 또는 3월초이며 해당 연도 초반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 사업의 최초 타당성조사 단계인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기(12월)보다 예산 편성 시점인 9월(국회 예산 제출 시점)이 앞서 있는 관계로 국제행사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수요의 예측이 어려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산상 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2017~2019년 예산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2018년은 전체 예산현액 3억 8,700만원 중에서 3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8.6%이며, 2019년은 전체 예산현액 4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3,6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8.9%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도 3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2017	287	16	303	303	0	0	100.0
2018	387	0	387	304	83	0	78.6
2019	387	83	470	136	334	0	28.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의 예산 실집행 실적이 낮은 세부적인 이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9년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 총 10건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계획 타당성조사’ 등 3건의 조사만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예산상 수요 예측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실제 조사내용 현황]

(단위: 건)

구분	예산상	실제	2019 실제 조사내용
건수	10	3	○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계획 타당성조사 ○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 2020 부산국제영화제 일몰연장평가 기본계획 평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의 연도별 예산 및 실제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예산과 수요가 7건으로 일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5개년도 동안 예산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예산상 8건 대비 실제 5건으로 3건의 차이가 나타났고, 2019에는 전체 10건 대비 실제 3건으로 7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예산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의 연도별 예산 및 실제 수요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실제	예산	실제	예산	실제	예산	실제	예산	실제
타당성조사	9	3	10	9	7	7	8	5	10	2
일몰연장평가	0	0	0	0	0	0	0	0	0	1
합계	9	3	10	9	7	7	8	5	10	3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의뢰의 대략적인 수요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2.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채용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정책개발회의의 사업은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부 유관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업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액 1억 6,7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정책개발회의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개발회의	100	100	67	0	167	160	7	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분석의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비에 속하는 동 사업을 기관 운영 용도인 채용 관련 세미나, 미국 KEI⁵⁾ 이사회 운영 등의 용도로 집행한 문제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고유사업은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며, 정책개발회의의 사업이 포함된 연구관련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5)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KEI)

[기관고유사업의 분류]

구분	내용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을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동 사업의 예산의 일부분은 연구인력의 채용을 위한 세미나, 미국 KEI 이사회 참석을 위한 경비 등의 기관 운영을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동 사업을 2017~2019년도 동안 채용을 위한 세미나, 미국 KEI 이사회 참석 용도로 집행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미국 KEI 이사회 참석 및 해외 전문가 면담 비용 용도로 4,054만원,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로 1,746만원 등 5,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2019년도에는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 지급, 항공료보조비 등 1,886만원, 미국 KEI 이사회 참석 관련 경비 2,893만원과 2019년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 3,62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비에 속하는 동 사업을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채용, 미국 KEI 이사회 참석 경비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채용, 미국 KEI 이사회 참석 등 용도로 집행한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2017	미국 KEI 이사회 참석 및 해외 전문가 면담 비용	40,537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	17,463
	소계	58,000
2018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 지급 항공료보조비 등	18,862
	미국 KEI 이사회 참석 관련 경비	28,931
	KEI 소장직 후보자 관련 인터뷰 경비	9,111
	소계	56,904
2019	2019년 신규 박사급 채용세미나 관련 경비	36,203
	소계	36,203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연구관련사업으로 연구사업비에 속하며, 사업목적이 정책토론회,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 사업을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용도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경상경비 용도에 속하는 채용 관련 경비, 이사회 참석 경비 등으로 집행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책개발회의 사업이 연구사업비에 속하며 사업목적이 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개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활용하여 채용 관련 경비나 이사회 참석 항공료 등의 경상경비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¹⁾ 사업은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181억 8,000만원 중 168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 개발원	17,697	17,697	486	0	18,183	16,814	307	1,06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4-1. 수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택 필요

가. 현 황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으로 승인한 예비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사업의 예산액 1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0-301

[2019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시연구사업	190	190	60	0	250	183	67	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개발원 수시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기존에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된 타국 교육에 관한 과제 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현안 정책수요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도 수시연구과제로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캄보디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방안: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이 캄보디아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6년도에 기본연구사업의 수시연구과제로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II)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도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캄보디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방안: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수탁사업, 기본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2015년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2016년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II’, 2017년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지원 및 확산: 교육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등의 캄보디아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타 출연연의 캄보디아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2015	기본연구사업 (수시)	○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 안 연구 :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사업 (기초)	○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 성과 평가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6	기본연구사업 (수시)	○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 안 연구(Ⅱ)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역량 강화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사업 (정책)	○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캄보디아 학습 성과 평가체제 구축 및 시행에 대한 컨설팅 Ⅱ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7	글로벌 교육지원 (ODA)	○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지 원 및 확산: 교육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9	기본연구사업 (수시)	○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캄보디아와 의 교육개발협력 방안: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2019년도 동안 다수의 캄보디아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와 2019년도에는 유사한 캄보디아 초등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국제개발협력(ODA)의 중점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해당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캄보디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가 기본연구사업 수시과제를 통하여 연례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도에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정책현안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수시연구를 통하여 캄보디아 연구를 재추진할 필요성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시연구과제는 「2019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제4조 제1항제2호2)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정의하고 있어,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된 타국의 교육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수시연구과제로 하기보다,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시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수시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기존에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된 타국 교육 개발협력에 관한 과제 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정책현안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제4조(기본연구사업 구분) ①기본연구사업은 연구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 관리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로 구분한다.

2. 수시연구과제는 기본연구사업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승인한 예비비(수시과제연구비)를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4-2.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하여 수탁사업 과제수와 비율의 과다 부적정

가. 현 황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체 수입 규모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 등을 위하여 교부받는 정부출연금과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출연·용역 등의 형태로 교부받는 수탁과제 수입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 등을 합하여 결정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금 176억 9,700만원, 자체수입 580억 5,400만원, 차입금 20억 9,300만원, 전기이월금 19억 7,100만원, 연구개발적립금 38억 1,500만원을 합한 83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입·지출 현황(2019년 예산)]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2019 예산	구분	2019 예산
합계	83,630	합계	83,630
정부출연금	17,697	인건비	18,147
자체수입	58,054	사업비	56,120
전기이월금	1,971	경상운영비	2,966
차입금	2,093	시설비	471
연구개발적립금	3,815	차입금 상환	2,093
		연구개발적립금	3,83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하여 수탁사업 과제수와 비중이 과도하여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기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2019년도 전체 수입 규모 중 수탁사업 규모의 연도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사업은 2015년 93개, 사업규모는 504

억 8,900만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56.3%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81개, 사업규모는 512억 6,200만원으로 전체 수입 772억 5,600만원 대비 66.4%로 2015년 대비 전체 수입 중 수탁사업 수입의 비중이 1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체 수입 중 수탁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체 수입 대비 수탁사업 비중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수탁사업 과제수 (이월과제 포함)	수탁사업 수입 (A)	전체 수입 (B)	전체 대비 수탁사업 비중 (A/B)
2015	93(171)	50,489	89,669	56.3
2016	95(161)	65,692	138,296	47.5
2017	96(172)	71,600	175,901	40.7
2018	89(165)	58,521	84,997	68.9
2019	81(144)	51,262	77,256	66.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는 2019년 기준으로 20개인 반면에, 수탁사업의 과제 수는 2015년 93개, 2016년 95개, 2017년 96개, 2018년 89개, 2019년 81개로 매우 과도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의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하여 수탁사업 과제수가 과도한 경우 외부 공모 등 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자가 확정되는 수탁사업의 특성상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인 연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수탁사업 관리에도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자 반납, 위·수탁 계약, 별도 예산계정 관리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2019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사업 과제 중에서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교육격차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2018년도 대학 특성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교수학습 평가 및 활용 연구’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유 업무 기능인 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나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기관운영출연금의 기본연구사업이나 일반사업의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사업 과제 중 연구·조사 기능과 관련성 깊은 과제 예시]
(단위: 백만원)

수탁사업 과제	2019년	
	예산 현액	집행액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361	361
2018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30	30
2018년도 대학 특성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교수학습 평가 및 활용 연구	26	26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71	71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교육격차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10	10
SDG4-교육 2030: 포용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40	4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사업 과제수와 비중이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해 과도하여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기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3.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원격지원 사업 등 수탁사업의 이월금 과다 발생 부적정

가. 현 황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 등 부처와 지자체 교부금으로부터 시범학교 위원회 운영, 교육콘텐츠 개발,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사업 등의 수탁사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과제 수는 81개(이월과제 포함의 경우 144개)이며 예산현액 610억 3,200만원 중 51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과제 집행 현황(2019년)]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과제수 (이월과제 포함)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9	81(144)	61,032	51,262	9,770	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원격지원 사업 등 수탁사업의 경우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도 수탁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스쿨포유 초등과정 구축 사업(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초등과정 구축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현액 133억 7,200만원 중에서 72억 3,700만원이 실집행되었으며 61억 3,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54.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지원 및 원격교육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스쿨포유 초등과정 구축 사업(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초등과정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6억 6,700만원 대비 1억 7,200만원이 연내에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5.8%에 불과하며, 교육콘텐츠 개발 육성 및 통합관리

사업(온라인수업 교과 콘텐츠 개발)은 예산현액 4억 4,0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4.3%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실집행률 70% 미만 수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도 집행				
	예산 현액 (A)	실집 행 (B)	이월	불용	실집 행률 (B/A)
2019년 스쿨포유 초등과정 구축 사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초등과정 구축사업)	667	172	495	0	25.8
2019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시범 운영 지원사업	2,886	1,956	930	0	67.8
교육콘텐츠 개발 육성 및 통합관리사업 (온라인수업 교과 콘텐츠 개발)	440	63	377	0	14.3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304	99	205	0	32.6
해방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방안	125	7	118	0	5.6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중고 학습콘텐츠 3차년 개발사업	3,380	1,761	1,619	0	52.1
2019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815	476	339	0	58.4
체육분야 나이스기능 개선(담당자 연수 및 매뉴얼 제작 보급) 사업	54	12	42	0	22.2
2019년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	1,425	712	713	0	50.0
2019년 교육 분권 및 지방교육 자치 발전 지원 사업	198	135	63	0	68.2
2019년 교원 존중 및 치유지원 사업	385	264	121	0	68.6
2019년 학생 안전 체험 교육시설 설립 운영 지원 사업	300	202	98	0	67.3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2019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센터 운영사업)	859	591	268	0	68.8
2019년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보화 지원사업	1,522	784	738	0	51.5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머신러닝 기반 고등교육 계열별 수요예측 모형 개발	12	3	9	0	25.0
합계	13,372	7,237	6,135	0	54.1

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조정액 등과 해당연도 예산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부 수탁사업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계약 등의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사업기간이 다음연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 예산을 1회에 교부받음에 따라 다음연도 집행 부분(잔금 등)의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부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회계기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월금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시범 운영 지원사업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중고 학습콘텐츠 3차년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9~2020년도 임에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위탁사업 금액을 2019년도에 교부받아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수탁과제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교부금 위탁사업에 해당하며,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조³⁾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에 따르면,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처 및 공공기관 단계에서 수탁사업별 연내 사업가능기간을 감안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편성·교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원격지원 사업 등 수탁사업의 경우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교부되거나, 한국교육개발원 집행과정에서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과제 예산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집행실적에 따라 예산이 교부되어, 수탁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이월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가. 현 황

상해연구센터운영¹⁾ 내역사업은 중국 경제 및 물류동향 자료수집·분석, 중국 물류 관련 연구과제 수행, 상해물류포럼 및 워크숍 개최, 중국 진출 우리나라 물류 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외 사무소인 상해연구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일반연구사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현액 3억 4,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상해연구센터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75	20,075	401	0	20,476	20,223	229	24
상해연구 센터운영	341	341	0	0	341	341	0	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상해연구센터 사무실 임차료 등은 유사한 국회 결산시 정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경상운영비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상해연구센터 운영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연구사업에 속하는 동 사업에 상해에 위치한 사무실 임차료를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51-300의 내역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상해연구센터 운영 예산 현황(2020년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금액
1. 사업인건비	○ 중국 현지 직원, 직원복지비 ○ 직원주택보조비(중국 현지직원)	33,500
2. 공공요금	○ 우편 및 통신요금 100,000원×12월 = 1,200 ○ 해외 특송요금 30,000×6회 = 180	1,38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 ○ 행사 자료집 발간비(CEO포럼 2회, 중국물류포럼 1회, 지역물류세미나 2회, SISI국제포럼 1회) ○ 보고서 발간비(일반연구과제 1회, 합본집 1회)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24,10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포럼·세미나 행사장 임차료(6회) ○ 사무실 임차료 ○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70,480
5. 여 비	○ 국내외 출장여비	19,429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 구입비 등	3,728
7.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 원고료(중국리포트 칼럼) ○ 전문가 원고료(연구 원고위탁) ○ 학술행사 발표자/토론자 사례비 등	26,240
8. 회의비	○ 학술행사 개최경비 등	19,140
합계		198,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해연구센터가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약 16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경상운영비로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사업에 속하는 동 사업에서 경상운영비 성격의 사무실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 적정 집행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공통	시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출연연구기관 중 15개의 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국토연구원(1533-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534-301) , 에너지경제연구원(1536-301),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한국교통연구원(1542-301), 한국법제연구원(1545-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46-3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49-3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550-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51-3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1552-301)		
	시정요구 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기관의 연구사업비 지출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 175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해서 해외사무소의 임차료를 경상운영비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국회시정요구사항이 있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²⁾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199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속 기관인 북경사무소 임차료, 파견수당 등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해연구센터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유사한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 pp. 131~133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사업성과 확대 필요 등

국토연구원¹⁾ 사업은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198억 8,600만원 중 18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토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토연구원	19,279	19,279	607	0	19,886	18,418	467	1,004

자료: 국토연구원

6-1.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정책연구 기능의 협업 필요

가. 현 황

국토연구원은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소속인 도로정책연구센터를 내부 조직으로 두고 있다.

2007년 출범한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주요 연구과제로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등의 도로정책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1

나. 분석의견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과 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은 도로 정책 관련 연구기능 수행에 있어서 협업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도로 정책 관련을 담당하는 부서로 각각 도로 정책연구센터와 도로교통연구본부가 있으며, 양 부서의 주요 기능을 비교하면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은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등을 추진하며, 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은 도로정책연구, 도로교통에 관한 투자 및 계획,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로 정책 연구라는 점에서 기능이 유사하다.

[도로정책연구센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 정책 연구 기능의 비교]

구분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기능	○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 투자사업 평가 ○ 법제도 개선 ○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등	○ 도로정책연구 ○ 도로교통에 관한 투자 및 계획, 운영에 관한 연구 ○ 자전거, 보행 등 무동력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교통연구·방재연구
사업방식	정부출연금, 수탁사업비	정부출연금, 수탁사업비

자료: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과 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이 수행한 도로 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방재도로에 있어서 국토연구원은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향 설정 연구(2018)’를 추진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재난 유형별 및 도로 위계별 방재도로 선정 기준 연구(2015)’를 추진하는 등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 정책 관련 연구과제 비교]

구분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국가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도로기능평가를 중심으로(2017)	-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2014) - 국가도로망의 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전략(2016)
방재도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향 설정 연구(2018)	재난 유형별 및 도로 위계별 방재도로 선정 기준 연구(2015)

자료: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처럼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 정책 연구기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통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정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²⁾에 따라 기관의 사업범위를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 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토연구원이 도로정책연구센터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관련 정책 연구기능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정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통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도로 교통과 관련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유사한 분야의 연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사업간 중복 가능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각 기관간 유사한 분야에 대한 협업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도로 정책 연구기능이 양 기관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연구 가능성을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교통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3.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6-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대 필요

가. 현 황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서 국토·지역·도시정책 관련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 사업에서 2019년 예산현액 105억 4,800만원 중 10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10,207	10,207	341	0	10,548	10,425	123	610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나. 분석의견

국토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를 감안하여, 도시정책 연구기능을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구분하고 협업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³⁾의 개정⁴⁾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에 기존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에서 분리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독립하고 명칭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9년 기준으로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제2항⁴⁾에 따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24. 건축공간연구원

4)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치 및 업무)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 도시정책의 공공성, 공간디자인 향상, 수립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도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5)에 따라 도시정책 관련 연구기능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키고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연구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와 도시설계·계획과 관련 있는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도시설계·계획과 관련하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연구원이 도시정책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국토·지역·도시정책 관련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한 연구
 2.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3.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
 5.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6.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지원 네트 워크 구축 및 교육
 7. 건축도시공간 및 건축문화에 대한 D/B 구축 및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업무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연구
2.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3.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분야 정책연구
4.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5.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6.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7. 지방자치단체·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8.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9.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10.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11. 제1호 부터 제10호 까지의 부대사업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연구원의 도시정책 관련 연구과제 비교]

기관	연도	연구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2016)
	도시설계·계획	○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2018)
		○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2019)
		○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2019)
		○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2019)
		○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2019)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2014)
		○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2017)
		○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2017)
		○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2019)
	도시설계·계획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8)

자료: 국가정책연구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0년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국토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다른 기관으로 분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도시 관련 연구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연구원은 현재까지 유사중복하여 추진하고 있던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관계 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노동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인 연구개발적립금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출 현황(2019)]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지출액(B)	증감(A-B)
가. 인건비	11,378	10,783	595
나. 연구사업비	12,276	12,036	240
다. 경상운영비	2,608	2,608	0
라. 시설비	0	0	0
마. 연구개발적립금	565	440	125
바. 수입대응지출	0	909	△909
합 계	26,827	26,776	5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019년 기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예산액은 5억 6,500만원이며 이 중 4억 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연구개발적립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한국노동연구원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 개원 기념식에 관련된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매년 개원 기념일인 9월 26일에 기념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관비, 홍보비, 행사대행비 등을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개원 기념식 관련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연구개발 적립금	2018	개원 30주년 세미나(자료집제작비)	3,443
		개원 30주년 세미나(영상제작비)	16,500
		개원 30주년 세미나(예비비)	225
		개원 30주년 세미나(오찬비)	1,320
		개원 30주년 세미나(행사대행비)	18,700
		개원 30주년 세미나(초청장발송비)	409
		개원 30주년 세미나(대관비)	1,848
		개원 30주년 세미나(토론비)	800
		소계	44,175
	2019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행사대행비)	17,556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행사오찬, 행사만찬, 예비비)	7,314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자료집제작비)	3,926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대관비)	3,267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광고비)	1,815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광고비)	1,000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토론비)	600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사진촬영비, 사회비 등)	1,800
		소계	37,32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2019년도 동안 개원 기념 행사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행사대행비 1,870만원, 영상제작비 1,650만원, 오찬비 132만원 등 총 4,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행사대행비 1,756만원, 오·만찬비 731만원, 광고비 282만원 등 총 3,733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2019년 동안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하여 개원 기념식 행사 비용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의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개원 기념식은 매년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이에 관련된 행사대행비, 오찬비, 광고비 등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상운영비를 활용한 개원 기념식 관련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경상 운영비	2017	개원 29주년 기념 리셉션 경비(예비비)	100
		개원 29주년 기념 리셉션 경비(만찬비)	6,900
		개원 29주년 기념 리셉션 경비(행사대행비)	8,91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99

-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경상운영비를 활용하여 개원 29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만찬비 690만원, 행사대행비 891만원 등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기념 행사 관련 비용이 경상적 경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해 경상적 성격의 경비인 개원 기념식과 관련된 행사대행비, 홍보비 등을 집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¹⁾ 사업은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수단 농림부문의 단 기정책, 농어촌민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사회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추 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168억 7,700만원 중 15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4,200만원을 불용 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6,537	16,537	340	0	16,877	15,680	455	7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에 속하는 수시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연 구과제가 아닌 학술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2)에 따라, 기본연구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정책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4-301

2)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기본연구사업의 구분) ①기본연구사업은 연구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 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기본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로 구분한다.

2. 수시연구과제는 기본연구사업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

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승인한 예비비(수시과제연구비)를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인 수시연구사업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수시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정책전환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추진하였다,

해당 행사는 2019년 11월 26일에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에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제심포지엄에 해당한다.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정책전환 국제심포지엄 행사 내용]

구분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정책전환 국제심포지엄
목적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 하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3:00~18:0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최·주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용	○ 제1부: 농수산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전환 ○ 제2부: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 ○ 제3부: 지속가능한 수산·어촌의 미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시연구사업비를 통한 동 행사 집행 내역을 살펴 보면, 국제심포지엄 행사대금 4,950만원, 국제심포지엄 행사장 대관료 500만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제본비용 202만원 등 주로 국제심포지엄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승인한 예비비(수시과제연구비)를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시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국제심포지엄 행사 관련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수시연구 사업비	2019	국제심포지엄 행사대금	49,500
		국제심포지엄 행사장 대관료	5,000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제본비용	2,024
		국제심포지엄 토론 및 통역수당	1,450
		국제심포지엄 행사지원인력 중식대 및 만찬비용	862
		국제심포지엄 행사지원 및 참석	388
		농특위 심포지엄 준비 협의회 및 경영목표 심의 관련 이사회 참석	312
		국제심포지엄 행사물품 구입비용	300
		합 계	59,83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시연구사업이 포함된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는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사업인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관련사업비를 통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고유사업의 개념]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자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수시연구사업은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의 요청 등에 의한 연구과제비로, 학술회의 비용의 집행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침상 규정된 수시연구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수시연구사업비를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비용이 아닌 학술회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교통연구원¹⁾ 사업은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교통부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현액인 165억 1,800만원 중 15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통 연구원	16,057	16,057	461	0	16,518	15,509	292	71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교통연구원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위탁용역의 대가를 청구일자에 비해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동 사업의 정부출연금과 외부 수탁 사업의 자료조사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외부에 위탁용역(한국교통연구원→외부 기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위탁용역을 수행한 연구소, 대학 등에 지급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2-310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²⁾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위탁용역의 대가의 지급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³⁾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계약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내부규정인 「연구사업위탁에관한규칙」 제16조제3항⁴⁾에 따라 계약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은 계약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의 청구일자로부터 5일(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을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계약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용역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를 살펴보면, '2017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 중화물 운송시장 실태조사 위탁용역'(계약금액 2억 6,493만원)은 2018년 1월 19일에 계약대금의 지급이 청구되었으나, 실제 지급일은 2018년 1월 30일으로 11일 경과하여 지급되어, 한국교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4) 「연구사업위탁에관한규칙」

제16조(준공처리 및 대금지급) ③계약부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통연구원의 경우 계약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위탁용역 대가의 지연한 지급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 법령을 위반해 위탁용역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단위: 일, 천원)

계약명	청구일자	지급일자	청구일로부터 경과일	계약금액
2017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 중 화물 운송시장 실태조사 위탁용역	2018. 1. 19	2018. 1. 30	11	264,930
지식콘텐츠 아카이빙 기반 구축 사업	2018. 5. 28	2018. 6. 11	14	580,00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위탁용역의 계약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¹⁾ 사업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243억 500만원 중 22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3,346	23,346	959	0	24,305	22,833	852	6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1. 연구관련사업비 외의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현 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보건 및 복지 관련 민간 학회에서 추진하는 학술대회(춘계, 추계 학술대회)에 대해 공동개최 시 발표·토론자로 내부 연구원이 참석하고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6-301

나. 분석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비 외에서 민간 학술대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민간학술대회 지원 사업의 사업구분에 따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2019년도 동안 기본연구사업에서 5,100만원, 연구지원사업 6,900만원, 일반사업 7,500만원, 연구개발적립금에서 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관련사업을 통해서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민간학술대회 지원 현황]

(단위: 회, 백만원)

연도	구분	기본연구 사업	연구관련 사업	연구지원 사업	일반사업	연구개발 적립금	합계
2017	횟수	8	0	6	2	1	17
	금액	38	0	31	8	3	80
2018	횟수	3	0	4	7	1	15
	금액	9	0	17	33	1	59
2019	횟수	1	0	4	8	1	13
	금액	4	0	22	34	5	64
합계	횟수	12	0	14	17	3	33
	금액	51	0	69	75	9	2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을 연구관련사업비 외에서 추진하는 것은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관련사업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학술행사를 타 연구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연구관련사업의 개념]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자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구관련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으로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에 편성·집행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민간학술대회 사업의 경우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구관련사업을 통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행사의 경우 기본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등의 연구사업 등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10-2.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일반사업비 비중 과다

가. 현 황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고유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과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인 연구관련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의 연구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성 사업,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구성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 개념]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2)에 따라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관고유사업비를 통하여 보건사회 분야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요구되는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등의 운영 사업과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등의 연구사업 등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관 고유사업 기능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정부대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일반사업비 규모의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20년도 동안의 일반사업비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합계 대비 일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74.1%, 2016년 70.9%, 2017년 71.1%, 2018년 73.6%, 2019년은 72.3%로 매년 7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보다 정부대행, 한시성 사업 성격의 일반사업비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2.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3.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반사업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관고유사업(A)	2,773	2,789	2,706	2,718	2,357	2,357
일반사업(B)	7,941	6,783	6,656	7,567	6,148	6,030
일반사업 비중 [B/(A+B)]	74.1	70.9	71.1	73.6	72.3	7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사업비 비율을 2019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의 합계 대비 일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개발연구원 4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5%, 한국노동연구원 51.4%, 산업연구원 38.2%, 에너지경제연구원 42.0%인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2.3%로 나타나고 있어,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하여 기관고유사업비보다 정부 대행, 한시성 사업 성격의 일반사업비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사업비 비율 비교(201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노동 연구원	산업 연구원	에너지 경제 연구원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기관고유사업(A)	5,044	3,199	2,050	3,814	2,031	2,357
일반사업(B)	4,252	2,180	2,168	2,359	1,471	6,148
일반사업 비중 [B/(A+B)]	45.7	40.5	51.4	38.2	42.0	7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일반사업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정관상 설립목적을 위하여 추진되는 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인 기관고유사업보다 일반사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반사업은 기관의 고유 연구기능과 연관성이 크고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일반사업의 개념인 정부 대행 및 한시성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사회복지 분야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부터 15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정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며, 2007년부터 14년간 사업이 추진되어, 정부 대행 및 한시성 성격의 사업인 일반사업보다 기관고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사업 중 기관고유기능과 연관성이 강하고 10년 이상 추진된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정관상 고유기능과의 연관성	2019년 예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2006년~계속	○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제2조제1호) ○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제2조제3호) 등	1,468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2006년~계속	○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제2조제5호)	1,287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2007년~계속	○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제2조제5호)	1,09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2009년~계속	○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 자료의 생산(제2조제4호)	1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정부대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일반사업비 규모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반사업의 기관고유사업 전환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¹⁾ 사업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보급과 그 전산망 사업, 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현액 131억 9,9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법제 연구원	12,536	12,536	663	0	13,199	12,162	776	261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11-1. 연구사업비를 통한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부적정

가. 현 황

한국법제연구원은 내부 규정인 「직원교육연수규칙」 제36조 및 제37조²⁾에 따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5-301

2) 「직원교육연수규칙」

제36조(해외체류연구) 해외체류연구는 연구사업수행상 해외자료 및 전문가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자격 및 선발) 해외체류연구 대상자는 당해연도 연구사업수행자 중 다음 각 호의 적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연구년 중 해외체류연구과제 수행을 신청한 자
2. 최근 근무평정결과 우수자
3.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된 자

라, 연구사업수행 상 해외자료 및 전문가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외체류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체류연구자를 연구년 중 해외체류연구과제 수행을 신청한 자, 최근 근무평정결과 우수자,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였다.

나. 분석의견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단기간이며, 사실상 포상 성격이 강한 해외연수 사업인 해외체류연구사업을 연구사업비로 추진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해외체류연구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2019년 기준으로 4명을 대상으로 체제비 등으로 2,37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연도	인원	집행액		
			체제비	기타	합계
연구사업비	2015	0	0	0	0
	2016	1	5,134	0	5,134
	2017	0	0	0	0
	2018	3	13,695	193	13,888
	2019	4	21,261	2,469	23,370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의 해외체류연구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4. 연구과제 특성상 해외체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연구자
5. 기타 연구원발전에 기여한 자

첫째, 해외체류연구사업의 경우 체류기간이 약 1개월 내외의 단기간으로 실제 연구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해외체류연구자의 2018~2019년도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2018년 A 연구자는 영국에 2018. 7. 16 ~ 8. 16까지 체류하였으며, 2019년 D 연구자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그 기간이 2019. 5. 3 ~ 6. 2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체류연구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의 단기간임을 알 수 있다.

[해외체류연구자의 체류기간 현황(예시)]

연도	연구자	체류국가	체류기간
2018	A	영국	2018. 7. 16 ~ 8. 16
	B	독일	2018. 9. 6 ~ 9. 18
	C	프랑스	2018. 9. 16 ~ 10. 1
2019	D	미국	2019. 5. 3 ~ 6. 2
	E	영국	2019. 6. 7 ~ 6. 28
	F	미국	2019. 7. 10 ~ 7. 31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체류연구기간이 단기간인 관계로 직접적인 연구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연구성과를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은 법제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경험도 풍부하여 1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연구경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체류의 목적이 해외자료 수집이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외출장이나 초청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므로 한국법제연구원이 해외체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선정기준을 보면, 연구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외출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근무평정 우수자, 우수 연구과제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에 해당하므로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근거가 연구사업 관련 관리 규정이 아닌 직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인 「직원교육연수규칙」에 마련되어 있으며, 연구조정위원회에 제출되는 단기해외체류연구자(연구년인 경우를 제외)의 대상자 명부를 살펴보면, 해당 연구사업에서 필요한 국외출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3순위까지의 근무평정 우수자,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된 자, 기관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이 아닌 연구원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체류연구사업은 연구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요구되기 보다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포상인 해외연수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단기해외체류연구자 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구분	성명(순위)	작성기준	작성내용
단기해외체류 연구자	근무평정우수	3순위까지	성명, 대상기간, 총사업비, 소요예산
	우수연구과제	전원	
	기관발전기여	해당자	
	해외체류연구가 필요한 경우	-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사업비에서 해당 연구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외출장 등에 대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연구원 대상 포상 성격의 단기 해외체류를 위한 경비를 경상운영비가 아닌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셋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타 출연연구기관에서 단기간의 해외체류연구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도 추진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4항제4호³⁾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구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기간 해외체류하여 연구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모두 연구년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체류연구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년과 해외체류연구를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해외체류연구사업의 비교]

구분	한국개발 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년 (자율연구, 연구연가 등)	○	○	○	○
해외체류연구	×	×	×	○

자료: 각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체류연구사업의 경우 체류기간이 약 1개월 내외의 단기간으로 실제 연구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우수 연구원의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구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11-2. 기관고유사업 수용비의 연례적 조정 증액 과다 부정적

가. 현 황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사업비 중에서 일반적 사업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연구사업비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과목에 계상되지 않은 용도로 수용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주로 복사 및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해당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수용비의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은 8억 4,400만원, 2019년은 7억 3,300만원이 수용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수용비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1,301	1,350	873	844	733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분석의견

한국법제연구원은 기관고유사업에 포함된 수용비의 연례적 조정 증액이 과다하여, 향후 수용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7~2019년도 기관고유사업에 포함된 수용비의 연도별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예산액 8억 7,300만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대비 조정비율이 54.3%이며, 2019년 기준으로 예산액 7억 3,3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이 조정되어 예산액 대비 조정비율이 64.7%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법제연구원은 연례적으로 기관고유사업에 포함된 수용비를 조정을 통하여 증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에 포함된 수용비의 연도별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 이월 (B)	조정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대비 조정 비율 (C/A)
2017	873	126	474	1,472	1,388	84	0	54.3
2018	844	△44	439	1,239	1,187	52	0	52.0
2019	733	0	474	1,207	1,103	104	0	64.7

주: 전년 이월 부분은 전년도 수용비 예산에서 이월된 부분에서 타 비목(공공요금 등)으로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금액임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일반사업비 수용비의 2017~2019년도 예산액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예산액 3억 4,100만원 대비 2억 200만원을 조정하여 예산 대비 59.2%의 조정·증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는 예산 대비 76.3%가 조정되었고, 2019년도는 예산액 2억 8,400만원 대비 조정으로 발생한 증액이 3억 3,300만원으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인 117.3%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사업비 수용비는 조정 증액의 연례적인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일반사업비 수용비의 연도별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조정액	예산 대비 조정비율
일반사업비	2017	341	202	59.2
	2018	329	251	76.3
	2019	284	333	117.3
	합계	954	786	82.4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법제연구원의 수용비가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예산 조정되는 이유는 최초 예산 편성시 실제 수요에 비하여 수용비 예산 예측이 매년 과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연도 말에 복사, 제본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연례적으로 예산 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용비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수용비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¹⁾ 사업은 행정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평가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현액 132억 4,400만원 중 12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행정 연구원	12,852	12,852	392	0	13,244	12,591	293	36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12-1.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포상 부적정

가. 현 황

한국행정연구원은 내부 규정인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²⁾에 따라, 직원의 업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52-301

2)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IPA 공로상 : 경영목표의 실현과 조직 발전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성과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포상
 - 1) 지식·성과 부문: 지식발전, 성과확산 및 영향력 있는 업무 결과 등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
 - 2) 조직·협동 부문: 조직 활동 및 구성원 간의 협동 등을 통해 연구원 발전에 기여
2. 우수직원 포상: 업무성적이 높은 직원에 대한 포상
3. 우수부서 포상: 업무성적이 높은 부서에 대한 포상

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KIPA 공로자, 우수직원, 우수부서, 우수보고서 작성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에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하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정년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 대상 포상요건을 살펴보면, 수행한 업무 중 성과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KIPA 공로상,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한 포상하는 우수직원 포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포상하는 퇴직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 대상 포상요건]

구분	포상 요건
KIPA 공로상	○ 경영목표의 실현과 조직 발전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성과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포상
우수직원 포상	○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한 포상
우수부서 포상	○ 업무성과가 높은 부서에 대한 포상
우수보고서 포상	○ 당해 연도의 우수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포상
우수TFT 포상	○ 당해 연도에 성과가 우수한 TF팀에 대한 포상
퇴직 포상	○ 정년퇴직자에 대한 포상
기타 포상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포상

한국행정연구원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자 대상으로 2017~2019년도 동안 포상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1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에도 1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개년도 동안 총 5명의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포상금을 경상운영비를 통하여 집행하였다.

4. 우수보고서 포상: 당해 연도의 우수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포상
5. 우수TFT 포상: 당해 연도에 성과가 우수한 TF팀에 대한 포상
6. 퇴직 포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포상
7. 기타 포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포상

[한국행정연구원의 연도별 정년퇴직자 대상 포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합계
인원	1	3	1	5
지급금액	2	6	2	10
비목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행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³⁾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장기근속자인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포상이 아닌 과도한 수준이 아닌 기념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를 위반하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과도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정년퇴직자에 포상 지침을 변경하고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도한 포상을 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2.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 지원금 지급 지양 등

가. 현 황

한국행정연구원은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등 유관 민간 학회에서 추진하는 춘·추계학술대회, 학술토론회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에서 한국정부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선거학회 등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기본연구사업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등을 지원하여, 총 16개의 학회에 4,616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도 기준 학술대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구사업명	학회명	학술대회	집행금액
연구관련사업	한국정책과학학회	춘계학술대회	2,935
	한국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3,000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3,000
	한국선거학회	하계학술대회	2,860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3,00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3,000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3,000
	한국국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3,000
	한국NGO학회	동계학술대회	1,700
공공리더십 연구사업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5,000
국제행정협력 모듈화사업	한국지역개발학회	국제학술대회	3,000
사회갈등해소 및 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4,000
기본연구사업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1,669
규제영향분석 지원사업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	3,000
합 계			46,16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행정연구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공동개최하는 등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2018년도 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이 지원한 참여하지 않는 학술대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기획세미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등과 2018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등의 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지 않는 학술대회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지 않는 학술대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학회	학술대회	집행금액	참여여부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기획세미나	3,000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3,000	×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3,000	×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3,000	×
201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하계학술대회	3,000	×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3,000	×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3,000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3,00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관련사업비 등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민간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의 학술대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민간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거나 최소한 내부 연구원의 발표 등이 있는 민간 학술대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추진에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은 내부 연구자 등이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에 대해 연구사업비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⁴⁾.

4) 한국행정연구원은 2019년도부터 학회와의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지원하는 모든 학술대회에 대해 연구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산업연구원¹⁾ 사업은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경영, 기술혁신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현액 239억 8,300만원 중 20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산업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0,713	20,713	3,270	0	23,983	20,552	3,015	414

자료: 산업연구원

나. 분석의견

산업연구원은 지침을 위반하여 인건비성 수당인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연구정보활동비로 편성·집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²⁾에 따르면, 연구정보활동비는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등 자료 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국내외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으로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35-301

2)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66

218 회의비

○ 연구수행에 특별히 소요되는 각종 회의, 연회비 및 기타 제 잡비(회의록 비치)

- 연구 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연구원도 해당 지침에 따라 연구정보활동비를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정보활동비의 사용용도]

구분	용도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정보활동경비 -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국내외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연구자료구입비 -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등 자료 구입비 ○ 특근매식비 -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자료: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65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사업비 성격의 인건비적 성격의 파견 수당인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연구정보활동비로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 제27조³⁾에 따라, 산업연구원의 해외 지원인 중국 북경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특수근무지수당)을 연구정보활동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0년도 동안 해외 파견 직원 1명을 대상으로 4,750~4,800만원의 재외근무수당(특수근무지수당)을 연구정보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개년도 동안 연구정보활동비로 편성한 재외근무수당 지급액은 1억 4,350만원이다.

3) 「보수규정」

제27조(특수근무지수당) ① 해외지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채용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파견된 직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연구원의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연도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합계
인원	1	1	1	3
연간 수당 지급액	48.0	48.0	47.5	143.5
예산액	48.0	48.0	47.5	143.5
구분	연구정보활동비			

주: 2020년도는 국회 의결 기준의 예산임

자료: 산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연구원은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2019년 북경지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과 자료조사비 등을 2019년 1월 470만원, 2019년 2월 480만원, 2019년 3월 480만원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정보활동비를 통한 재외근무수당 집행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세부내역	2019 집행액
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2019년 1월 북경지원 제경비	4.7
		2019년 2월 북경지원 제경비	4.8
		2019년 3월 북경지원 제경비	4.8
		2019년 4월 북경지원 제경비	4.8

자료: 산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연구원의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은 본원이 위치한 국내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해외 지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체재 등을 위한 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등 자료 구입비, 국내외교육훈련, 정보수집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연구정보활동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산업연구원은 사업비 내 편성된 해외근무수당을 2020년도 실행예산 편성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인건비로 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인건비성 수당인 재외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연구정보활동비에서 집행하여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가. 현 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¹⁾은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화정책 연구,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통신·방송 및 전파관련 정책 연구, 정보화 및 정보통신 국제협력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자체 수입(정보통신연구적립금)을 통하여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기준 수입·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자체 수입 267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인건비 154억 8,500만원, 사업비 88억 8,400만원, 경상운영비 2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분	2019예산	2020예산	구분	2019예산	2020예산
합계	25,548	26,719	합계	25,548	26,719
정부출연금	0	0	인건비	15,027	15,485
자체수입	25,548	26,719	사업비	8,001	8,884
전기이월금	0	0	경상운영비	2,120	2,350
차입금	0	0	기타	400	0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포상금과 연구연가자 경비 지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첫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포상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해당 지침을 위반하여 내부 포상 기준을 통해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내부 포상 기준을 살펴보면, 연구기관평가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획득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연구보고서 포상을 하며, 정년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의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내부 직원 포상 기준]

구분	포상기준	포상내역
우수연구보고서 포상	연구기관평가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획득한 연구보고서	최우수 300만원/우수 200만원/장려 100만원
우수직원 포상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원 발전에 공이 있는 직원	상금 50만원
특별 포상	정년 퇴직직원	온누리상품권(100만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연도별로 연구원에 장기근속하고 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명을 대상으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2018년 4명을 대상으로 40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2019년도 동안 총 700만원의 정년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침을 위반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도별 정년 퇴직직원 대상 포상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7	2018	2019	합계
인원	2	4	1	7
지급금액	2,000	4,000	1,000	7,000
지급방식	온누리상품권(100만원/명)			
비목	경상운영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지침을 준수하여 포상금이 아닌 과도한 수준이 아닌 기념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침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정년 퇴직자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과도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연구연가자의 생활준비금 등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³⁾에 따르면,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한다. 즉, 연구사업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조직에서 연구의 추진을 위해 편성·집행한 경비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⁴⁾에

3)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15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말한다. 즉, 연구사업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조직에서 연구의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한 경비로 한정한다.

따르면,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사업비로 연구연가자의 생활준비금 등 경비를 집행한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내부 지침인 「인사관리규정」 제31조⁵⁾에 따라 연구직 연구위원 이상으로서 국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 연구원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연구연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연가자의 인건비, 해외근무수당, 생활준비금, 항공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2019년도 연구연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인건비로 지급한 1억 3,900만원을 제외하고는 해외근무수당, 생활준비금, 항공료 등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연가자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인건비 외에 연구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⁶⁾되어 있으나, 생활준비금과 왕복항공료는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연가자의 해외 체재를 위한 경비로 연구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에서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침을 위반하여 편성·집행하였다.

이처럼 지침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5~2019년도 동안 연구사업비를 통하여 집행한 생활준비금이 3,444만원이며, 왕복항공료가 1,302만원으로 나타났다.

4)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16

○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경상경비는 각 연구기관의 행정조직에서 예산편성, 집행된 운영비이며 연구 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하수도비, 가스비, 난방비, 전기료, 차량보험료와 같이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등을 말한다.

5)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연구연가) ① 연구직 연구위원 이상으로서 국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 원장은 6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유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2019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p. 9

○ 인건비 내 편성 예외항목(협동연구사업 인센티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위험 및 격리보상비,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연구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수당)는 편성할 수 없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연가자 경비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	구분	연구연가자 경비				
			인건비	해외 근무 수당	생활 준비금	왕복 항공료	합계
2015	2	인건비	122,187	0	0	0	122,187
		연구사업비	0	82,119	6,609	3,480	92,208
2016	2	인건비	111,858	0	0	0	111,858
		연구사업비	0	85,466	7,513	2,664	95,643
2017	2	인건비	123,540	0	0	0	123,540
		연구사업비	0	80,897	6,911	3,854	91,662
2018	2	인건비	125,942	0	0	0	125,942
		연구사업비	0	74,740	6,538	1,751	83,029
2019	2	인건비	134,916	0	0	0	134,916
		연구사업비	0	84,521	6,872	1,269	92,662
합계	2	인건비	618,443	0	0	0	618,443
		연구사업비	0	407,743	34,443	13,018	1,073,647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는 경상운영비에서 해당 부분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기관을 휴직한 후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연가자의 생활준비금, 왕복항공료 등의 경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국가보훈처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진료 사업¹⁾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30~90%를 감면하는 것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4,095억 9,700만원에서 90억 500만원을 이·전용 감액한 예산현액 4,005억 9,200만원 중 3,879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었으며, 126억 4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① 고령으로 인한 보훈병원 원거리 거주자 이용 불편 등으로 진료인원이 계획대비 96.2%로 감소(계획 449만명 → 실적 432만명)하였고, ② 2018년 11월, 인천보훈병원 개원으로 인해 인천, 경기 서북부지역 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천보훈병원의 실 진료인원이 계획대비 60.8% 수준(계획 23만명 → 실적 14만명)인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보훈병원진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병원진료	409,597	409,597	0	△9,005	400,592	387,988	96.9	0	12,604

자료: 국가보훈처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204억 4,000만원에서 2019년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150-365

4억 8,500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199억 5,500만원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보훈병원 의료사업에서 재료비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동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161억 900만원 감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8년 11월 개원한 인천보훈병원에서 2018년 69억 500만원, 2019년에 85억 3,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체의 2019년 당기순이익이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사업부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보훈병원 의료사업	36,641	53,394	38,767	30,265	20,532	△16,109
중앙보훈병원	24,037	38,145	33,115	26,419	21,003	△3,034
보훈요양병원	△145	△803	△426	△245	△1,109	△964
부산보훈병원	3,736	7,602	3,662	5,475	3,716	△20
광주보훈병원	3,643	2,755	1,772	3,132	389	△3,254
대구보훈병원	2,327	3,366	1,647	261	308	△2,020
대전보훈병원	3,042	2,329	△1,002	2,127	4,764	1,722
인천보훈병원	-	-	-	△6,905	△8,539	△8,539
요양원	△493	△1	211	624	△896	△403
보훈원(휴양원, 체육센터 포함)	78	128	△200	△360	△305	△384
연구원	△1,989	△1,596	△1,526	△1,594	△1,644	345
기타	2,010	0	0	0	0	△2,010
본사	△16,038	△16,474	△17,958	△16,662	△16,858	△820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계 (A)	20,208	35,451	19,295	12,272	829	△19,379
법인세비용 (B)	△232	12,044	9,755	3,255	344	576
당기순이익 (A-B)	20,440	23,407	9,540	9,017	485	△19,955

주: 본사의 경우 주로 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의 발생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은 인천, 경기서북부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1월 개원하였다. 441억원의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건립되었으며, 총 병상은 137병상이다.

[인천보훈병원 현황]

• 개원 : 2018년 11월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규모 : 지하 1층~지상 7층
• 부지면적 : 28,680㎡ / 연면적 : 10,979.59㎡
• 진료과 : 15개 진료과 / 137병상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
• 사업비 : 44,116백만 원 (전액 국고지원)
• 운용방향 및 목적 :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외래중심 병원으로 운영
인천·경기 서북부지역 거주 25만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런데, 상기 인천보훈병원은 2006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과거 서울 중앙보훈병원과의 인접 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건립이 무산되었었다. 2013년에 국정과제 선정 등으로 인해 다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이때에도 사업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수준²⁾으로 사업규모를 축소(130병상, 사업비 437억원)하여 2016년 10월 착공하였고, 2018년 11월 개원하였다.³⁾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원,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2017.4.17.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 경과]

(단위: 병상, 억원)

일자	병상(수) 규모 계획	사업비 계획	내용
2006.8	500	1,125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2007.8	350	785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하였으나, 서울의 중앙보훈병원과 인접하여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B/C비율 0.25로, 경제성 없는 것으로 조사됨
2013.7	300	1,013	2013.4.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타당성 낮을 것으로 예상
2013.10	200	571	사업계획 변경 제출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소규모 전문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2014.5	130	437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하였으며, 2016.10 착공

자료: 감사원,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2017.4.17. 및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인천보훈병원은 13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설립하고 개원한 이후에도 환자 수가 130병상을 기준으로 한 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즉, 2018년 개원 후 연간 환자수가 2018년의 경우 입원은 계획 대비 11.2%, 외래는 계획 대비 40.0%에 불과하며, 2019년에도 입원의 경우 53.1%, 외래의 경우 6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천보훈병원 건립 시 계획 및 실제 연간 환자 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계획 (a)	실적 (b)	차이 (b-a)	비율 (b/a)	계획	실적	차이	비율 (b/a)
입원	13,444	1,508	△11,936	(11.2)	45,078	23,930	△21,148	(53.1)
외래	54,649	21,865	△32,784	(40.0)	186,462	128,107	△58,355	(68.7)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같은 실제 진료 인원의 계획 대비 미달 등으로 인해 인천보훈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훈병원진료 사업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의 계획 대비 실 진료 인원 미달로 인해 정부 보훈병원진료 사업에서는 2018년에는 43억 9,200만원, 2019년에는 83억 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인천보훈병원의 예·결산 차이로 인한 불용액 현황 (2018, 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A)			결산 (B)			불용액 (B-A)		
	국비 진료	감면 진료	합계	국비 진료	감면 진료	합계	국비 진료	감면 진료	합계
2018	4,340	983	5,323	460	471	931	△3,880	△512	△4,392
2019	14,016	3,861	17,877	4,190	5,313	9,503	△9,826	1,452	△8,374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따라서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인천보훈병원의 당기순손실 개선을 위해 인천보훈병원의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의존도 심화

가. 현 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건복지부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제2019-331호, 2019.12.3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⁴⁾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감 장려금⁵⁾을 수령하고 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해당 병원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약품비 대비 당해 연도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제 등제 시 보험약가 대비 실제 구입가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사용량감소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약품비 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저가구매 장려금은 입찰 등을 통해 보험약가 대비 저가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6개 보훈병원(중앙병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병원)이 2014년 이후 수령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총 567억 4,800만원규모이며, 이 중 대부분인 94.8%(537억 8,400만원)는 저가구매 장려금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저가구매장려금을 중심으로 2017년 하반기 55억 2,400만원 이후 2019년 상반기 72억 2,700만원까지 동 기간 동안 17억 3백만원 증가하는 등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5) 해당 사업의 목적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를 적정관리하기 위함이라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14~2019년간 병원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중앙보훈병원의 장려금이 242억 5,500만원으로 전체 수령 금액의 42.7%를 차지하며,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동 기간 동안 9,800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병원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령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산출기간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2014. 9. 1.~2014.12.31.	3,466	1,594	654	445	413	360	0
2015. 1. 1.~2015. 6.30.	7,339	2,973	1,459	1,212	760	935	0
2015. 7. 1.~2015.12.31.	4,630	1,954	844	640	622	570	0
2016. 1. 1.~2016. 6.30.	5,313	2,331	916	714	703	649	0
2016. 7. 1.~2016.12.31.	5,692	2,479	961	781	800	671	0
2017. 1. 1.~2017. 6.30.	5,579	2,408	966	816	745	644	0
2017. 7. 1.~2017.12.31.(A)	5,524	2,397	995	772	762	598	0
2018. 1. 1.~2018. 6.30.	5,726	2,462	1,074	798	773	619	0
2018. 7. 1.~2018.12.31	6,252	2,649	1,136	905	820	721	21
2019. 1. 1.~2019. 6.30.(B)	7,227	3,008	1,367	1,035	902	838	77
증 감 (B-A)	1,703	611	372	263	140	240	77
합 계	56,748	24,255	10,372	8,118	7,300	6,605	98
(비 중)	(100.0)	(42.7)	(18.3)	(14.3)	(12.9)	(11.6)	(0.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14~2020년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령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장려금 산출기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월
	사용량감소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	계	
2014. 9. 1.~2014.12.31.	410	3,056	3,466	2015. 6
2015. 1. 1.~2015. 6.30.	1,748	5,591	7,339	2015.12.
2015. 7. 1.~2015.12.31.	0	4,630	4,630	2016. 6.
2016. 1. 1.~2016. 6.30.	0	5,313	5,313	2016.12.
2016. 7. 1.~2016.12.31.	172	5,520	5,692	2017. 6.
2017. 1. 1.~2017. 6.30.	16	5,563	5,579	2017.12.
2017. 7. 1.~2017.12.31.(A)	0	5,524	5,524	2018. 6
2018. 1. 1.~2018. 6.30.	30	5,696	5,726	2019. 1.
2018. 7. 1.~2018.12.31	164	6,088	6,252	2019. 7.
2019. 1. 1.~2019. 6.30.(B)	424	6,803	7,227	2020. 1.
차이 (B-A)	424	1,279	1,703	
합계	2,964	53,784	56,748	
(비중)	(5.2)	(94.8)	(100.0)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 분석의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의료사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수령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영업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5~2019년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영업손실이 1억 2,000만원 발생하였으나, 해당 영업손실은 2017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194억 6,800만원 감소한 195억 8,700만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영업이익 감소는 주로 보훈병원 의료사업에서 동 기간 동안 190억 5,600만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연도별로 2015년 111억 2,300만원에서 2019년 119억 7,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에서 수령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인해 각 연도별 영업손실이 2015년 204억 4,000만원에서 2019년 4억 8,5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사업부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영업이익						
보훈병원 의료사업	22,149	37,248	20,553	15,786	3,093	△19,056
요양원	△661	△118	△265	22	173	834
보훈원(휴양원, 체육센터 포함)	△328	△188	△341	△463	△430	△102
연구원	△2,000	△1,584	△1,531	△1,596	△1,644	356
기타	△551	0	0	0	0	551
본사	△18,729	△18,771	△20,446	△20,149	△20,779	△2,050
영업이익(손실) 합계	△120	16,587	△2,030	△6,400	△19,587	△19,467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영업외수익)¹⁾	11,123	9,946	11,271	5,524²⁾	11,978	8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당기순이익	20,440	23,407	9,540	9,017	485	△19,955

주: 1) 회계 결산 상 기록된 실제 장려금 금액 입금 기준임

2)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까지 2018년에 지급되던 2018년 상반기 진료분이 2019년에 지급됨으로 인해 타년도 대비 금액이 50% 수준임

1. 본사의 경우 주로 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의 발생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영업이익에서 상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외에 기부금수익, 임대료수익 등의 기타수익을 가산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기타 비용 및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함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 표에서와 같이 건강보험재정에서는 2014년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총 4,332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⁷⁾

이 중 동 기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5개 보훈병원에 지급된 장려금 567억원의 비중은 13.1%를 차지하며, 5개 보훈병원이 속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장려금 1,324억원 중에서는 42.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실제 2019년 상반기 진료분과 관련한 장려금은 2020년 1월에 지급되었으나, 아래 표에서는 기간 간 비교를 위해 각 연도별로 장려금 산출액 대상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였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시행 후 연도별 건강보험 총 장려금 지급액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려금 수령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개 보훈병원) (a)	108	99	113	113	134	567
의료기관 전체 대비 비중(a/b)	(14.9)	(12.8)	(12.7)	(12.3)	(13.1)	(13.1)
종합병원 대비 비중(a/c)	(47.0)	(41.4)	(40.7)	(39.9)	(45.4)	(42.8)
의료기관 전체						
상급종합병원	255	292	330	358	424	1,659
종합병원 (c)	230	240	277	282	295	1,324
병원	59	70	69	74	77	349
의원	183	173	210	203	228	997
약국	0	0	0	0	0	1
합계 (b)	727	775	887	918	1,024	4,332

주: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11월 개원하였음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제4호⁸⁾에 따라 5개 보훈병원에서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가능하므로, 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약사법」 제23조⁹⁾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조

8)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2.(생략)

3.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를 할 수 없으며, 주사제,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병원 내에서의 의약품 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의 경우 병원 원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치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이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외래환자에 대하여도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의약품의 대량 구매로 인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 간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약품 구매시 낙찰율은 2013년 51.21%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37.88% 까지 낮아졌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약품 낙찰현황 (2013~2019)]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종 수	보험가(a)	낙찰액(b)	비율(b/a)
2013	1,292	129,543	66,337	51.21
2014	1,326	150,422	47,013	31.25
2015	1,402	157,781	63,913	40.51
2016	1,479	167,367	69,446	41.49
2017	1,489	161,655	70,658	43.70
2018	1,525	181,828	66,465	36.55
2019	1,576	217,743	82,474	37.88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기와 같이 낙찰률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령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6년 99억 4,600만원에서 2019년 11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533억 9,400만원에서 2019년 205억 3,200만원으로 점차 감소¹⁰⁾하고 있어 이에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이 보훈병원 당기순이익에서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13.(생략)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보훈병원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진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증가에 기인한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위탁진료를 제외(진료수익과 진료원가 동일)한 6개 보훈병원 전체의 본원 진료수익 원가율(매출원가/진료수익)은 2015년 95.6%에서 2019년 99.4%로 동 기간 동안 3.8%p 증가하였다. 원가율 증가의 주 원인은 인건비 비율 증가로, 연도별 의료사업 인건비의 본원 진료수익 대비 비율은 2015년 48.8%에서 2019년 56.5%로 7.8%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진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증가와 이에 따른 원가율 증가는 7개 병원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2015년 30.4%에서 2019년 58.3%로 증가하고 있다.

병원별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가장 큰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에서 2019년간 해당 비중이 4.9%p 증가하였으며,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의 경우에도 해당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별 당기순이익에서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중앙보훈병원 당기순이익	24,037	38,145	33,115	26,419	21,003	△3,03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4,671	4,285	4,887	2,397	5,111	440
(비중)	(19.4)	(11.2)	(14.8)	(9.1)	(24.3)	(4.9)
보훈요양병원 당기순이익	△145	△803	△426	△245	△1,109	△96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0	0	0	0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부산보훈병원 당기순이익	3,736	7,602	3,662	5,475	3,716	△20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2,294	1,760	1,927	995	2,210	△84
(비중)	(61.4)	(23.2)	(52.6)	(18.2)	(59.5)	(△1.9)
광주보훈병원 당기순이익	3,643	2,755	1,772	3,132	389	△3,25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1,659	1,357	1,597	772	1,703	44
(비중)	(45.5)	(49.3)	(90.1)	(24.6)	(437.7)	(392.2)
대구보훈병원 당기순이익	2,327	3,366	1,647	261	308	△2,020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1,205	1,325	1,546	762	1,593	388

[본원 진료수익의 연도별 원가율]

(단위: %, %p)

구분		합계	중앙병원	요양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인천병원
본원 진료수익 원가율 (재료비, 인건비, 경비)	2015(a)	95.6	91.7	101.0	99.0	98.0	99.5	97.3	-
	2016	93.4	88.1	106.0	93.9	98.7	98.2	98.3	-
	2017	96.4	90.5	103.1	99.2	100.9	101.5	104.9	-
	2018	97.3	92.2	101.7	99.0	97.8	101.9	98.2	595.6
	2019(b)	99.4	94.9	107.4	99.5	101.8	103.0	95.8	158.2
	차이(b-a)	3.8	3.2	6.4	0.5	3.8	3.4	△1.5	-
본원 진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2015(c)	48.8	44.7	59.8	49.7	50.4	54.6	52.0	-
	2016	48.2	43.5	60.2	47.1	52.3	55.1	53.1	-
	2017	50.0	45.0	57.1	50.4	52.8	56.8	57.6	-
	2018	53.2	48.1	61.6	53.4	54.6	59.5	55.3	402.2
	2019(d)	56.5	51.6	71.0	55.1	58.4	61.1	57.1	103.4
	차이(d-c)	7.8	6.9	11.3	5.4	7.9	6.5	5.0	-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비중)	(51.8)	(39.4)	(93.9)	(292.5)	(518.1)	(466.3)
대전보훈병원 당기순이익	3,042	2,329	△1,002	2,127	4,764	1,722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1,294	1,219	1,314	598	1,340	46
(비중)	(42.5)	(52.3)	131.2	(28.1)	(28.1)	(△14.4)
인천보훈병원 당기순이익	0	0	0	△6,905	△8,539	△8,539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0	0	0	0	21	21
(비중)	-	-	-	0.0	0.2	-
당기순이익 합계	36,641	53,394	38,767	30,265	20,532	△16,109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수익	11,123	9,946	11,271	5,524 ¹⁾	11,978	855
(비중)	(30.4)	(18.6)	(29.1)	(18.3)	(58.3)	(27.9)

주: 1)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까지 2018년에 지급되던 2018년 상반기 진료분이 2019년에 지급됨으로
인해 타년도 대비 금액이 50% 수준임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당기순이익 감소와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1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있다.¹⁾

상기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8,486억원에서 최근의 주택경기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²⁾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5,416억원 증가한 1조 3,902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잔액]

(단위: 억원)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b)	증감 (b-a)
대출잔액	8,486	8,658	12,898	13,902	5,416

자료: 한국산업은행

나. 분석의견

한국산업은행의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증 공공기관의 100% 보증을 받고 있어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당 대출이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은 2016년³⁾ 8,486억원에서 2019년 1조 3,90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업무가 노후 도시 재생, 낙후지역 재정비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3호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업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수요자의 주택 건축·구입·임차 및 주택 사업자의 주택 건설·매입 관련 대출금은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타 은행 등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를 납부하고 있다.
- 2)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는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배경으로 서민 임대주택 보급,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대출 증가의 영향이라 설명하고 있다.
- 3) 한국산업은행은 2016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정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의 대출과 그 외의 법인 등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로 나뉘어지는데, 2019년 말 현재로 전체 잔액 1조 3,902억원의 53.5%인 7,443억원은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이고, 나머지 46.5%인 6,459억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대출이다.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세부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b)	증감 (b-a)
대출 잔액	8,486	8,658	12,898	13,902	5,416
일반	5,454	4,028	7,389	7,443	1,989
(비중)	(64.3)	(46.5)	(57.3)	(53.5)	-
재개발·재건축	3,032	4,630	5,509	6,459	3,427
(비중)	(35.7)	(53.5)	(42.7)	(46.5)	-

자료: 한국산업은행

그런데, 상기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중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 금액 7,443억원을 한국산업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PF’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⁴⁾에 따르면, ‘민간 IB의 성장으로 시장마찰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PF업무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대출 잔액은 2016년 5,454억원에서 2019년 7,443억원으로 1,989억원 증가하는 등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한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교방1구역재개발과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등 일부 한국산업은행이 해당 사업 총 대출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등의 민간 금융사와 동일 조건에서 동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한국산업은행은 2019년 말 현재 19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대출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 금융사와 함께 동일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으며, 총 사업 대출금액 2조 9,802억원 기준으로는 27.8%인 8,274억원의 대출을 약정하였다. 또한, 해당 대출은 모두

4) 금융위원회, “참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보도자료, 2015.10.30

선순위 대출로, 민간 금융사와 동일한 이자율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2016년 이후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한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주택자금시설자금 대출 세부 내역
(2019.12.현재)]

(단위: 억원, %, 개월)

	프로젝트 명	총 대출 금액 (a)	산업은행		산업은행 대출 완료 금액 (2019.12.)		
			대출 (예정) 금액(b)	비율 (b/a)	대출 잔액	이자율 (선순위)	대출 기간
1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1,750	200	(11.4)	146	CD(3M)+2.31%	60
2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재개발	4,100	500	(12.2)	392	3.98%, 4.9%	48
3	권선113의6구역주택재개발	2,700	410	(15.2)	272	5.11%	48
4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2,100	350	(16.7)	155	CD(3M)+2.97%	53
5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2,400	500	(20.8)	473	CD(3M)+2.13%	45
6	곡반정동명당2단지지역주택조합	2,000	430	(21.5)	430	4.30%	30
7	곡반정동명당1단지지역주택조합	1,700	370	(21.8)	370	4.30%	30
8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1,300	300	(23.1)	181	CD(3M)+2.50%	48
9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2,000	500	(25.0)	461	CD(3M)+1.47%	52
10	오전나구역주택재개발	950	250	(26.3)	141	CD(3M)+1.44%	54
11	신암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915	300	(32.8)	132	CD(3M)+1.54%	48
12	길동신동아1차2차아파트주택재건축	1,062	425	(40.0)	172	CD(3M)+1.75%	45
13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	1,364	546	(40.0)	489	CD(3M)+1.60%	45
1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900	400	(44.4)	400	CD(3M)+2.52%	45
15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1,861	893	(48.0)	701	CD(3M)+1.60%	6
16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	800	400	(50.0)	364	CD(3M)+1.39%	51
17	거제2구역주택재개발	900	500	(55.6)	325	3.50%	48
18	교방1구역재개발	500	500	(100.0)	499	CD(3M)+1.75%	40
19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500	500	(100.0)	356	CD(3M)+1.60%	42
합 계		29,802	8,274	(27.8)	6,459	-	-

자료: 한국산업은행

또한, 상기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일부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고 있다. 2019년 말 현재로 총 대출잔

액 1조 3,902억원의 43.3%인 6,014억원은 상기 기관의 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5,514억원은 100%의 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 해당 대출에 대하여는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은 2016년 28.2%에서 2019년 43.3%로 상승하였다.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도별 보증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A)	8,486	8,658	12,898	13,902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B)	2,394	4,088	5,693	6,014
(비율 (B/A))	(28.2)	(47.2)	(44.1)	(43.3)
100% 보증	2,219	3,988	5,693	5,514
90% 보증	175	100	0	500

자료: 한국산업은행

상기와 같은 보증기관 보증 등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서는 2016~2019년간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연도별 손실 발생액(2016~2019)]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손실 발생액	0	0	0	0

자료: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상의 정부의 손실보전조항⁵⁾ 등을 바탕으로 저리로 해외 외화채권 및 국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과 은행채(AAA)의 금리차이는 2013년 2bp⁶⁾에서 2019년 4bp 수준으로, 산업금융채 금리는 은행채(AAA) 금리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5)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6) bp(basis point)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1bp = 0.01% 이다.

[연도별 산업금융채 및 은행채(AAA) 금리 차이]

(단위: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금융채 (a)	2.93	2.17	1.77	1.74	2.21	1.96	1.47
은행채 AAA (b)	2.95	2.19	1.78	1.75	2.25	2.01	1.51
차이 (a-b)	△0.02	△0.03	△0.01	△0.01	△0.03	△0.05	△0.04

주: 상기 산업금융채와 은행채 금리는 만기 2년물의 각 연도 말 기준임

자료: 3개 채권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평균 자료

한국산업은행은 금융 공공기관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며, 정책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상업적 활동에 따른 이익 발생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상업적 업무로의 지속적인 확장은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바,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 자금 지원의 증가와 관련하여 서민임대 주택보급, 낙후 지역 개발 등의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세부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타 금융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대출이 정부보증을 바탕으로 한 저리의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산업은행은 기업에 대출, 보증 등을 제공하며, 이에 부실 발생 시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¹⁾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이하 '워크아웃²⁾') 등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과거부터 주채권은행³⁾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주채권은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워크아웃 진행 시 의결권의 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기업 중 2010~2019년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최근 10년간 총 38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개시하였다.

[각 연도별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개시 기업 수]
(단위: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기업수	9	2	4	2	2	7	1	4	5	2	38

자료: 한국산업은행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6. 기업구조조정

2)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기 법률은 은행 등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3)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금융감독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나. 분석의견

한국산업은행은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시 관대화 경향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절차상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협약」(이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시작된다.⁴⁾ 상기 협약은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은행 간 협약이다.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르면, 각 채권은행은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본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부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채권은행은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 각 부문별 평가 기준⁵⁾에 의해 결정된 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각 평가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부터 ‘4.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까지 4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일반적으로 5개 평가부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 분	정 의	세부 평가지표 예시
산업위험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업종별 성장 전망 등
영업위험	해당 기업이 소속 산업에서 우위 또는 열위의 실적 실현 여부 및 그 정도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	경영권의 안정성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소 및 경영진의 관리성향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여부 등
재무위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용 통성 등
현금흐름	채무상환능력의 불확실한 정도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 등

자료: 금융위원회,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8.1.26.

「상시평가 운영협약」 상의 평가기업 분류

제14조(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① 채권은행은 각 부문별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고 동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내부 신용등급 조정 및 조정된 신용등급에 따른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2.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3.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4.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자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상시평가 운영협약」에서도 상기 제14조제1항의 3,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워크아웃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진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⁶⁾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의 2015~2019년간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부 평가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 C, D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5년 9.1%에서 2018년 4.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에 6.9%로 일부 증가하였다. 반면, ‘정상’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된 경우는 2015년 50.6%에서 2018년 62.9%까지 점차 높아졌으며, 2019년에 62.1%로 소폭 낮아졌다.

6)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4조(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법 및 협약 등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여신(대환 포함) 중지, 만기도래 여신 회수, 담보 보강, 여신한도 및 금리 변경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통해 여신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2015~2019)]

(단위: 개, %)

		기업 수					비율				
		세부 평가 기업 수	평가결과				세부 평가 기업 수	평가결과			
			A	B	C	D		A	B	C	D (C+D)
2015	대기업	338	181	139	10	8	100.0	53.6	41.1	3.0	2.4 5.3
	중소기업	203	93	79	4	27	100.0	45.8	38.9	2.0	13.3 15.3
	합계	541	274	218	14	35	100.0	50.6	40.3	2.6	6.5 9.1
2016	대기업	205	118	77	6	4	100.0	57.6	37.6	2.9	2.0 4.9
	중소기업	207	66	116	2	23	100.0	31.9	56.0	1.0	11.1 12.1
	합계	412	184	193	8	27	100.0	44.7	46.8	1.9	6.6 8.5
2017	대기업	248	180	63	3	2	100.0	72.6	25.4	1.2	0.8 2.0
	중소기업	214	102	91	5	16	100.0	47.7	42.5	2.3	7.5 9.8
	합계	462	282	154	8	18	100.0	61.0	33.3	1.7	3.9 5.6
2018	대기업	200	157	38	3	2	100.0	78.5	19.0	1.5	1.0 2.5
	중소기업	239	119	106	8	6	100.0	49.8	44.4	3.3	2.5 5.9
	합계	439	276	144	11	8	100.0	62.9	32.8	2.5	1.8 4.3
2019	대기업	220	177	35	3	5	100.0	80.5	15.9	1.4	2.3 3.6
	중소기업	284	136	121	4	23	100.0	47.9	42.6	1.4	8.1 9.5
	합계	504	313	156	7	28	100.0	62.1	31.0	1.4	5.6 6.9

주: 1. 상기 평가결과 “A”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는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나타냄

2. ‘대기업’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산업은행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기본평가 실시 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상기 세부 평가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등 이미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시평가 운영협약」 상 세부평가 대상 기업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예시)]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 기업**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자본총계가 부(-)인 기업
4.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분류 기업
5.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
6. 채권은행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7. 채권은행이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8.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적정인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기업
9. 사업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
10. 일정 기간 부분자본잠식기업
11. 단기채무 상환 부담이 큰 기업
12.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자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그런데, 채권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 경영실적 악화 및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있어 상기 세부평가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평가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될 경우 향후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도 자체 평가를 통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 대하여 평가기준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온정적 평가 관행이 여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⁷⁾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 보고서(2020.3)’에서도 아래와 같이 일부 기업의 경우 B등급 분류 후 단기간에

7) 금융위원회,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8.1.26.

- 평가기준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온정적 평가 관행 여전
 - (중심화) 5대 평가부문 중 4개 부문에서 중간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등 변별력이 매우 미흡
 - (상향평가) 중심화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위험 부문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최고등급(평가기업의 31.4%) 부여
 - (연계성 부족) 최종등급 산정 시 세부등급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상향조정하는 사례 다수

부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⁸⁾,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평가등급 관대화 경향이 존재한다고 자체 평가한 바 있다.

[기업평가 관대화 경향 관련 기업]

기업명	기업평가등급(완료일)	부도 발생일	부도사유
A사	B(2019.09.20.)	2020.01.10.	개별평가충당금 20% 이상
B사	B(2019.01.04.)	2019.01.29.	자산건전성 회수의문 이하
C사	B(2019.04.05.)	2019.09.24.	연체 90일 이상

자료: 한국산업은행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시 관대화 경향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8)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전체 504건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건이 B등급 분류 후 단기간 내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3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마련 검토 필요

가. 현황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1954년 설립 이후 총 17조 9,316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 이 중 29.9%인 5조 3,664억원은 현금출자이며, 70.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조 5,652억원은 한국전력공사(주)의 주식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주식으로 현물출자 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연도별 출자 세부내역]

(단위: 억원, %)

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합계	현물출자 내역
54~'89	3,782	4,492	8,274	대한중석, 주택공사, 관광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주식 등
90~'99	21,350	53,660	75,010	한국전력 5,275억원, 담배인삼공사 1,600억원, 종합화학 115억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4조 670억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6,000억원
00~'09	11,300	45,000	56,300	한국전력 3조원, 수자원공사 1조원, 도로공사 5,000억원
2010	100	0	100	-
2013	100	0	100	-
2014	200	0	200	-
2015	550	20,000	20,550	한국전력공사 8,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조 2,000억원
2016	3,077	0	3,077	
2017	1,450	2,500	3,950	인천항만공사 1,250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1,250억원
2018	1,700	0	1,700	-
2019	5,550	0	5,550	-
2020	4,505	0	4,505	-
합계	53,664	125,652	179,316	-
(비중)	(29.9)	(70.1)	(100.0)	-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현재 현물출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자 중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⁹⁾으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¹⁰⁾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물 출자시에는 별도의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 시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BIS비율이 기본적으로 고려되며, 출자는 자기자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BIS비율을 상승시킨다. 이에 금융위기,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투자 촉진 등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 등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자본 확충 필요 시, 정부는 예산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물출자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출자의 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외에 현금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출자와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낮다. 그리고 한 번 출자하면,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는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한 이후에도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 규모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이다.¹¹⁾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 등의 자본 확충을 통한 추가 채권 발행으로 신규 정책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여신이 확대되고, 이는 추가적인 부

9)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5, 426쪽 참조

실로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 등 현물출자와 관련한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²⁾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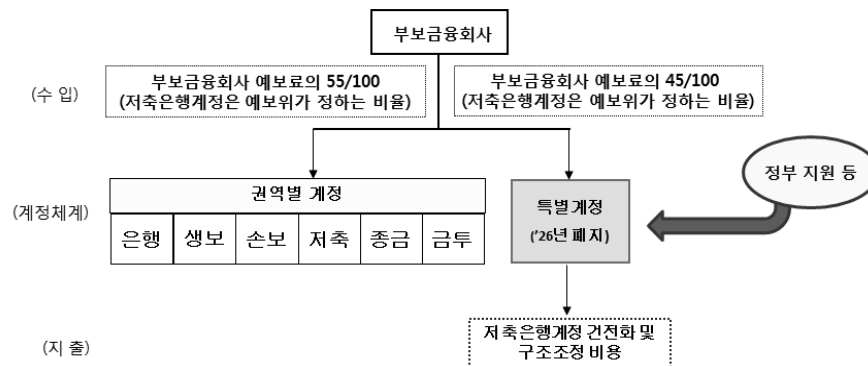
12)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의안번호 1900666,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2.7)와 20대 국회(의안번호 2000650,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16.7)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는 재정의 세입세출에 영향이 없고, 정책자금의 추가부실 방지는 개별사업의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 리스크관리 시스템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4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2026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¹⁾.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²⁾에 따른 것으로,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의 은행계정 등 타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계정의 주요 재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중 일부³⁾,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구조]



자료: 예금보험공사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 1) 「예금자보호법」 부칙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부보회사의 경우 각 계정별 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의 납부비율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예금보험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납부하고 있다.

특별계정에서는 2011년 설치 이후 2019년 말 까지 31개 부실저축은행에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⁴⁾ 등의 형태로 27조 1,7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47.3%인 12조 8,508억원이 회수되었다.

[특별계정 지원 방식별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2011~2019)]

(단위: 억원, %)

지원 저축 은행	출 자		출 연		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지급 ¹⁾		합 계	
	지원	회수 (회수율)	지원	회수 (회수율)	지원	회수 (회수율)	지원	회수 (회수율)	지원	회수 (회수율)	지원 (a)	회수(b) (회수율 (b/a))
31개	3,655	3,120 (85.4)	229,873	107,272 (46.7)	36,278	16,263 (44.8)	1,136	1,077 (94.8)	775	775 (100.0)	271,717	128,508 (47.3)

주: 1) 개산지급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하여 해당 저축은행 정리 절차 완료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채권의 가치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2020.3.

상기 자금 회수는 부실저축은행을 계약 이전 받은 가교저축은행⁵⁾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가교저축은행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출연이나 보험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자금의 경우에는, 이는 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 등으로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분석의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기

4)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는 부실저축은행 관련 자산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출연은 주로 부실금융회사를 계약이전하여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보험금지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었다.

5)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채무가 과다하거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매각이나 합병 또는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예금 등 채무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기타 여러 가지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고 있다.

한인 2026년 말까지의 특별계정 자금 수지 및 이와 관련하여 상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금액 등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4월,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 신설 당시 2026년까지 해당 계정에서 15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관련 이자비용 6.6조원을 합한 21.6조원의 상환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타 계정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이전 등을 법률화⁶⁾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까지 16.9조원의 보험료 수입과 5.1조원의 지원회수를 가정하였으며, 2026년 말 해당 계정의 기말자금은 0.4조원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였다.

[2011년 설치 시 2026년까지의 특별계정 자금 수지 추정액]

(단위: 조원)

구분		금액	추정 근거
수입	보험료 수입	16.9	· ‘11년~’15년 : 과거 연평균(’06~’10) 부보예금 증가율 적용 · ‘16년~ : 공적자금재계산 방식 적용
	지원 회수액	5.1	회수율 : 34% 적용 (‘13년~’17년 동안 매년 1.02조원씩 회수 가정)
	합계(A)	22.0	-
	지출액	15.0	15조원 지원 추정
지출	이자비용	6.6	조달금리 5.0%
	합계(B)	21.6	-
기말자금 (A-B)		0.4	2026년 말 기말자금

자료: 예금보험공사

그런데, 2011년 특별계정 설치 이후 2019년까지의 2011년 당시 자금수지 추정액과 실제 자금수지 발생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1년 추정 시에는 2019년까지 12.1조원의 수입과 20.2조원의 지출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8.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실제 발생액은 보험료

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즉,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고유계정과 특별계정으로의 납부비율은 예금보험위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예금보험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납부하고 있다.

수입과 지원 회수액을 합하여 19.0조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7.2조원의 지원액과 4.4조원의 이자비용을 합하여 총 31.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 바, 이에 2019년까지 실제 수입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은 △12.6조원의 손실로, 2011년 추정치 대비 손실규모가 △4.5조원 확대되었다. 이는 2019년까지 실제 지원액에 대한 회수액이 추정치에 비해 7.8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금액이 27.2조원으로, 2011년 추정당시 예상했던 15조원에 비해 12.2조원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⁷⁾

[2011년 설치 시의 특별계정 자금수지 추정액 및 실적 비교(2011~2019)]

(단위: 조원)

구분		금액			차이 발생 주요 원인
		설치 시 추정(a)	실적 (b)	차이 (b-a)	
수입	보험료 수입	7.0	6.1	△0.9	보험료수입증가율 : 5.99%(추정) → 5.27%(실적)
	지원 회수액	5.1	12.9	7.8	회수율 : 34%(추정) → 47 ¹⁾ %(실적)
	합계(A)	12.1	19.0	6.9	-
지출	지원액	15.0	27.2	12.2	지원액 : 15조원(추정) → 27.2조원(실적)
	이자 비용	5.2	4.4	△0.8	조달금리 : 5.0%(추정) → 3.04%(실적)
	합계(B)	20.2	31.6	11.4	-
기말자금 (A-B)		△8.1	△12.6	△4.5	-

주: 1) '19년말 기준 누적 회수율

자료: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9년 12월 말 현재로 10조 500억원의 사채와 1조 9,907억원의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계정 등 타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2,500억원의 재정융자 금액 등 총 12조 3,52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2019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2조 452억원(1조 3,793억원의 구상채권 및 6,533억원의 미수수익 등으로 구성)에 불과하여, 따라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특별계정의 자본 총계는 △10조 3,068억원의 결손을 나타내고 있다.

7) 이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유효기간인 2026년 말까지 해당 계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까지 해당 특별계정의 12조 3,520억원의 부채 상황은 구상채권 등으로 부터의 회수 또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 공사는 특별계정의 설치 기한인 2026년까지의 보험료수입액과 지원자금 회수액 등 자금수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 상황이 불가능한 부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분회계 재무상태표(2019.12)]

(단위: 억원)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자산총계 (A)	20,452	부채총계 (B)	123,52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	사채(채권발행)	100,500
단기대여금	120	계정간 차입(예금보험기금 내)	19,907
단기미수수익	6,533	재정융자	2,500
장기구상채권 ¹⁾	13,793	미지급이자 등	613
		자본총계 (A-B)	△103,068

주: 1) 장기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

둘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관련하여 설치 기한인 2026년 말까지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금액에 대하여 상황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법률 제10476호>에 따르면, 2026년 특별계정 유효기간 경과 시 남는 자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는 정부 출연금 범위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잔여 자산은 상호저축은행 계정을 제외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상의 특별계정 잔여자산 처리 규정]

「예금자보호법」 부칙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은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반면, 설치 기한인 2026년 말 잔여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계정의 적자발생으로 인해 상황이 불가능한 부채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 규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향후 자금수지의 적정 추정을 통해, 설치 기한인 2026년 말까지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계정 부채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와 관련한 상환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¹⁾ 및 동법 제59조의3²⁾에 따라 금융기관에 출연료를 부과하고, 이를 주택신용보증계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기 출연금은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자금 대출금 및 주택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에 출연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이와 관련한 2019회계연도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정부담금 계획현액은 7,071억 7,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1,067억 2,900만원 증가한 8,139억 800만원이며, 100% 수납 완료되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임차(전세), 구입, 건설 자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과 주택연금³⁾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9년 법정부담금 수입의 대부분(97.2%)은 주신보계정에서 발생하였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금
-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금
- 3)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2019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법정부담금	707,179	707,179	707,179	813,908	813,908	0	0	100.0
주택신용보증계정	699,499	699,499	699,499	791,101	791,101	0	0	100.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7,680	7,680	7,680	22,807	22,807	0	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의 2015~2019년간 자체수입과 사업비, 기금 운영비 등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⁴⁾,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 이후로는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을 제외하고도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출연금 수입 7,911억원은 자체수입의 6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료 수입 1,361억원, 구상채권 회수금 수입 1,207억원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 총액은 1조 1,745억원이다. 또한 2019년 기준 대위변제 금액, 보증료 환급액 등의 지출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2,158억원이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는 474억원으로, 총 지출 금액은 2,632억원이다.

따라서 2019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9,11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 금액은 2015년 6,979억원에서 2019년 9,113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016년 6,456억원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16~2019년간 각 연도별로 금융기관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에서 지출 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각각 306억원에서 1,202억원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은 현금기준으로 각 연도별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4) 상기 자체수입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자금의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기금예탁원금회수, 예탁이자 수입 등이 있으며, 상기 지출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자금, 일반회계 전출 등의 지출이 있다.

[연도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수입, 지출 세부내역 (2015~2019)]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수 입	자체수입						
	- 금융기관출연금(a)	7,067	6,150	5,726	7,236	7,911	(67.4)
	- 신용보증료 등	1,120	1,338	1,149	1,194	1,361	(11.6)
	- 구상채권 회수금	1,969	1,908	1,405	1,179	1,207	(10.3)
	- 이자수입	806	719	949	680	1,166	(9.9)
	- 기타수입	210	268	252	207	100	(0.8)
	합계 (A)	11,172	10,383	9,481	10,496	11,745	(100.0)
지 출	사업비	3,706	3,383	2,511	2,249	2,158	(82.0)
	- 대위변제	3,241	2,989	2,150	1,870	1,784	(67.8)
	- 보증료환급	206	232	235	236	242	(9.2)
	- 구상권관리	231	137	102	113	106	(4.0)
	- IT운영	27	25	24	29	26	(1.0)
	기금운영비	488	544	481	485	474	(18.0)
	- 인건비	233	250	225	241	250	(9.5)
	- 기금관리비	98	96	110	106	105	(4.0)
	- 위탁수수료	85	83	81	84	77	(2.9)
	- 선급법인세	72	116	65	55	43	(1.6)
	합계 (B)	4,193	3,927	2,993	2,734	2,632	(100.0)
수입 - 지출 (C=A-B)		6,979	6,456	6,489	7,761	9,113	-
금융기관출연금 제외 수입 - 지출 (C-a)		△88	306	762	525	1,202	-

자료: 연도별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여유재원의 적정 사용 방안 마련 또는 금융기관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신보계정은 상기와 같이 2016년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금기준으로 각 연도별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출액을 초과하는 수입액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각 연도 말 여유자금⁵⁾ 규모는 2013년 3조 6,250억원에서 2019년 7조

5) 상기 기금의 각 연도말 여유자금 규모는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유자금이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7,847억원으로 4조 1,597억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연도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의 여유자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여유자금 규모	36,250	41,682	48,982	53,475	54,168	62,215	77,847	41,597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은 「국가재정법」 제13조⁷⁾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목적으로 여유자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즉, 주신보계정에서는 2016년 2,000억원, 2017년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상 8,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을 계획하는 등 최근 5년간 1조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계획) 하고 있다.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6)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6년 이후 주신보 여유자금 증가는 대위변제를 하락 때문이며, 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발생했던 2013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2010년에는 대위변제율이 1.1%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향후 대위변제율의 상승도 가능한 만큼,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7)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같은 일반회계 전출은 금융기관이 납입한 출연료가 아닌 2007년까지 정부가 주신보계정에 납입한 정부출연금(1조 4,820억원)을 회수하는 차

[연도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일반회계 전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합계
일반회계전출액	0	2,000	500	0	0	8,000	10,500

자료: 연도별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⁹⁾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¹⁰⁾에 따른 주신보계정의 법정 운용배수는 30배이며, 상기 법정 지급보증배수와는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3월 자체용역을 통해 산정한 주신보계정의 적정 운용배수는 11.1~16.3배¹¹⁾ 수준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주신보계정의 2015~2019년간의 실제 연도별 운용배수는 10.6~11.7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연도별 운용배수]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잔액(a)	542,867	669,559	716,207	775,180	898,511
기본재산(b)	51,028	56,974	61,140	71,125	81,695
운용배수(a/b)	10.6	11.8	11.7	10.9	11.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기와 같은 지속적으로 지출규모를 초과하는 수입발생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 및 적정운용배수 이하로의 기금 운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원의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11) 2013년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연구보고서(「주신보 적정 운용배수 산출 및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2013.)에 따르면, 적정 운용배수 범위는 11~1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5조¹²⁾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신보계정 재원의 일반회계로의 지속적인 전출은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라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특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 재원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여유재원의 적정 사용 방안 마련¹³⁾ 또는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출연금 규모 및 해당 금융기관출연료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기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차원에서 신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7월 6일자로 출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상기 상품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세입자의 손실위험 예방)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유사한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는 보증료를 경감하는 등 서민 세입자 지원 강화 목적의 상품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유재원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신규상품의 보증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 주택신용보증계정 금융기관출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의 이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동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의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체의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은 2015년 7,093억 3,600만원에서 2019년 8,139억 800만원으로 1,045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해당 증가 금액은 주신보계정에서 843억 8,400만원, 주연보계정에서 201억 8,800만원 발생하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계정별 금융기관출연금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차이 (b-a)
주택신용보증계정	706,717	614,986	572,636	723,624	791,101	84,38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619	3,448	4,574	5,866	22,807	20,188
합계	709,336	618,434	577,210	729,490	813,908	104,572

자료: 각 연도별 금융위원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은 상기 표에서와 같이 2015년 7,093억 3,600만원에서 2016년 6,184억 3,400만원, 2017년 5,772억 1,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 주택자금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2018년 7,294억 9,000만원, 2019년 8,139억 8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 2017년까지의 수입 감소는 아래와 같은 2015년 12월 및 2017년 2월의 출연요율 체계 변경에 주로 기인한다.

즉,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출연금요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 우대요율의 합¹⁴⁾으로 결정되는데, 2015년 12월에는 우대요율이 신설되었고, 2017년 2월에는 우대요율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이 감

14) 차등요율은 직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결정되며, 우대요율은 비거치식 분할, 고정금리대출 등으로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기관출연금요율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아래 “3. 금융기관출연금요율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한 금융기관 출연료율 조정 검토 필요” 참조

소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기존에 주신보계정에 출연되던 주택수요자의 건축·구입용도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출연금 중 20%를 주연보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¹⁵⁾이 개정되면서, 주연보계정의 금융기관출연료 수입이 228억원으로 2018년 59억원 대비 급증하였다.

[2015년 이후 금융기관출연료율 변경 내역]

(단위: %, %p)

개정시기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
2015.12 이전	0.05 ~ 0.30	±0.04	없음
2015.12.31. ¹⁾	0.05 ~ 0.30	±0.04	신설 (△0.01 ~ △0.06)
2017.02.02.	동일	동일	우대요율 대상 확대 등 ²⁾
2019.07.19.	기존에 주신보계정에 출연되던 주택의 건축·구입 자금 대출 관련 출연금 중 20%를 주연보계정으로 이전		

주: 1) 기준요율은 기존에 비해 적용구간이 단순화 되었으며, 차등요율은 가산, 감면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함. 이에 추가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목표-실적 비교)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을 신설함

2)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우대요율 적용기준 완화 및 전년대비 구조개선 실적 증가 우대요율 적용 신설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기존에 주택신용보증계정으로 출연되던 주택수요자의 건축·구입용도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출연금 중 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이전하였는 바, 해당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주신보계정에서는 주택수요자(개인)의 주택 구입자금, 중도금, 임차(전세)자금 및 기타 개량자금과 관련한 대출과 주택사업자 건설자금 관련 대출 등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의 일정 요율¹⁶⁾을 출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또한, 주연보계정은 기존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대출금에 대하여만 출연료를 수령¹⁷⁾하였으나, 2019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이다.

16) 주신보계정 출연료의 기준요율은 연간 해당 대출금의 0.05~0.30% 수준이다.

1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에 대한 주연보계정 출연료의 기준요율은 연 0.20% 수준이다.

존에 주신보계정이 수령하던 주택수요자의 건축·구입 용도¹⁸⁾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출연금 중 20%인 153억 5,7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금융기관출연금 수입 현황 (2015~2019)]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택 금융 신용 보증 계정	개인	구입자금	382,314	299,055	269,892	303,848	307,138
		중도금	109,801	94,106	117,093	122,048	109,063
		임차자금	104,455	98,795	115,156	164,546	221,173
		기타 (개량자금 등)	36,608	48,681	44,617	57,453	66,616
	사업자	건설자금	73,880	73,980	70,869	76,267	87,088
소 계			707,058	614,617	617,626	724,161	791,079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¹⁾		2,619	3,448	4,574	5,866	7,451
	개인 주택자금대출로 분류된 대출금 중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²⁾		-	-	-	-	15,357
	소 계		2,619	3,448	4,574	5,866	22,807
	합 계		709,677	618,065	622,200	730,027	813,886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출연금으로 2019.10월~12월까지의 수납분 (2019.9.1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2019.10월부터 출연금 수납)

1. 금융기관 제출 출연금계산서상 금액으로, 각 연도별로 과오납 등으로 앞의 현황 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계정별 금융기관출연금 수입 내역] 상의 연도별 실제 결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2017년도에는 과오납으로 인한 정산액 500억원 반영으로, 2017년 결산 금액 5,726억원과 차이가 발생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기와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부담금 조정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¹⁹⁾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

18) 아래 표에서 주신보계정의 ‘구입자금’ 및 ‘중도금’ 대출 관련 출연금의 20%를 수령하게 된다.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에 의결된 상기 심의위원회 안건에서는, 출연금 조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주신보계정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 등 보증부 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 비보증부 대출까지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주연보계정에서는 보증대상 대출인 주택연금대출만을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운용하여 대상 대출금의 범위가 협소²⁰⁾하며, 양 계정 간 출연료의 불균형이 큰 상황으로, ② 한쪽 계정이 지나치게 부실화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③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체 및 대손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장기고객을 확보하는 이익이 있으며, ④ 출연금 조정 후에도 주신보계정은 적정 보증배수를 유지하는 등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고, 추가적인 국민·금융기관 부담 증가도 없으므로 건축·구입 용도 주택자금 대출 취급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의 일부²¹⁾를 주연보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신보 및 주연보 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 및 조정사유]

현 행		조정안	조정사유
주신보 기금 100%	⇒	주신보기금 80%	금융기관 출연금 부담 감축을 위해 출연금 부과요율 인하 (100 → 80%)
		주연보계정 20%	주담대 이용자 중 60세 이상 비중 및 고령화추세를 반영(2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 2018.12.14.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부담금운용심의회 안건에서는 유사대출금까지 출연기준대출금으로 운영하는 타 금융성기금(주택신용보증계정,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비해 주연보계정의 출연금 범위가 협소한 편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2018년 6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비중인 20%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의 양 계정 간 출연료 범위가 상이하여, 계정 간 출연료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쪽 계정이 지나치게 부실화 되거나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연료 이전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회 설명을 고려할 때, 주연보계정의 과거 보증배수나, 향후 보증배수 추정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주연보 계정으로의 출연금 이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9²²⁾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8²³⁾에 따른 주신보계정의 법정 운용배수는 30배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기 법정 지급보증배수와는 별도로 2019년 3월 자체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 운용배수는 13.2~15.4배 수준이다. 주연보계정의 2015~2019년간의 실제 연도별 운용배수는 2015년 12.8배에서 2019년 15.0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²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연보계정 연도별 운용배수]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금지급 잔액 (a)	15,187	20,561	26,969	34,286	43,407
기본재산 (b)	1,185	1,564	1,785	2,312	2,889
운용배수 (a/b)	12.8	13.1	15.1	14.8	15.0

주: 2016년 운용배수(13.1배) 대비 2017년 운용배수(15.1배)의 급증은 주로 보증충당부채 산출에 대한 회계규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월지급금 지급유형별로 산출하여 합산하던 것을 보증계약 건별로 산출하여 합산하여, 지급유형 내의 상쇄 효과가 없어져 보증충당부채가 증가(200억원)한 것에 기인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9. 9.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된 출연금 수납액 153억 5,700만원의 영향으로 2019년 운용배수가 15.9배에서 15.0배로 낮아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상기 2019년 7월 출연료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한 주연보계정 보증배수²⁵⁾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20년 12.8배에서 점차 낮아져 2023년에는 자체 적정운용배수인 13.2~15.4배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10.4배 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0~2023년 동안에는 연간 702억원에서 946억원의 주택자금 대출 관련 출연금이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 이전되어 주연보계정 기본재산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⁶⁾

[주연보계정 운용배수 추정(2020~2023)]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금지급 잔액 (a)	53,639	65,821	80,078	96,738
기본재산 (b)	4,179	5,603	7,285	9,286
주신보로부터 이전되는 연간 출연금	702	776	857	946
운용배수 (a/b)	12.8	11.7	11.0	10.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데, 상기 추정에서 주연보계정의 운용배수 산정 시의 기본재산에서 주신보계정으로부터 이전되는 주택자금 대출 관련 출연금을 전액 제외할 경우 2020~2023년간의 운용배수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20년 16.2배에서 2023년 16.5배로 산정된다. 이는 적정운용배수인 13.2~15.4배를 일부 초과하기는 하나, 상기 표에서와 같이 해당 이전 출연금이 반영될 경우 운용배수가 2023년 10.4배 까지 하락하는 바, 상기 출연금 이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²⁷⁾²⁸⁾

25) 아래의 추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9년에 작성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지출내역을 바탕으로, 2019년 작성 시점의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재무전망을 추정한 것이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지원금 확대·가입연령 하향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향후 추가되는 추가적인 가입수요를 반영할 경우 운용배수는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연보계정의 운용배수는 연금지급액만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주택가격 하락, 장수 리스크, 금리변동 등 미래 손실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하므로 기본재산 규모의 적정성이나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주연보계정 운용배수 재추정(2020~2023)]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금지급 잔액 (a)	53,639	65,821	80,078	96,738
기본재산 (b)	4,179	5,603	7,285	9,286
주신보로부터 이전되는 출연금 누적액 (c)	860	1,636	2,493	3,439
기본재산 재계산 (d=b-c)	3,319	3,967	4,792	5,846
운용배수 재계산 (a/d)	16.2	16.6	16.7	16.5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주신보계정에서 수행하는 ‘신용보증’²⁹⁾은 주택의 건축·구입·임차·개량 등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금도 이와 관련한 대출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주신보계정 출연금의 주연보계정으로의 이전이 적정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출연금 이전은 과도한 주신보계정의 여유자금 해소를 위한

28)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주신보계정 출연금의 주연보계정 이전 등으로 확대된 주연보계정을 활용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0.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로 인하되었으며, 주택연금 가입주택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주택 일부에 전세가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방안의 하나로도 여겨지는 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같은 출연금 이전 보다는 주신보계정 출연금 출연료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⁰⁾

30)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주연보계정에서의 주택연금 규모에 비해 주신보계정으로부터의 출연금 이전 규모가 많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여유재원을 주택연금의 보장성 확대 등 주신보계정의 본 목적에 맞게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5-3. 금융기관출연료를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한 금융기관출연료를 조정 등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및 동법 제59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에 출연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출연료는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에 각각 별도로 부과되는데, 각 계정 별 출연금 개요는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출연료는 각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에 출연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출연료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 우대요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금융기관 출연금 개요]

구분		주택신용보증계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 주택수요자에 대한 주택 건축·임차·구입 및 개량용도의 대출금 - 주택사업자·사업주의 주택건설·구입 대출금 - 중도금대출금, 신용보증부대출금 등	- 주택수요자에 대한 주택 건축·구입용도의 대출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출연료율	기준요율	- 만기 5년이상·비거치·분할·고정금리대출 0.05% - 기타 은행대출 0.30% (전세자금대출은 0.26%) - 기타 주택도시기금 대출 0.26%	- 만기 5년이상·비거치·분할·고정금리대출 0.05% - 기타 은행대출 0.3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0.2%¹⁾
	차등요율	직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 0.04% 범위에서 적용	직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 0.04% 범위에서 적용
	우대요율	비거치식 분할, 고정금리대출 등으로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0.06%에서 △0.01% 범위에서 적용	비거치식 분할, 고정금리대출 등으로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0.06%에서 △0.01% 범위에서 적용

주: 1)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0.1%를 적용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은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미적용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대출자에게 혜택이 귀속될 수 있는 금융기관출연료율 인하 또는 보증료율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 ③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대출상품에 따라 시장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수신금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또한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을 반영해 산정되며, 가감조정금리는 대출자의 급여이체 여부,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이 반영되어 산정된다.³¹⁾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구성]

① 기준 금리	②가산금리							③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예보료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률	부수 거래 감면 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 1. 22.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연료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출연료는 ‘법적비용’ 중 하나로 가산금리에 반영되어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의 구성항목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업무원가	인건비 등을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해 산정
리스크프리미엄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 간 차이

31)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 1. 22.

구분	세부내용	
유동성프리미엄	기준금리 변동주기보다 대출 계약만기가 장기인 변동금리대출에 적용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신용프리미엄	차주 신용등급, 담보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법적비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출연료,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 등	
목표이익률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본부·영업점장 조정금리	-

자료: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 1. 22.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료율의 인하는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되는 법적비용의 인하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³²⁾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통계적 방법³³⁾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출연료를 인하하였을 때 보증부 대출 금리 역시 동조하여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 주요 국내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출연료율을 1bp³⁴⁾ 내렸을 때 은행 전체적으로 평균 대출금리가 약 0.35b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⁵⁾

3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출연료 인하가 보증부대출 금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7.7.

3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시계열자료가 확보 가능한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대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집단과 적용되지 않는 통제집단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정책 적용 전후로 정책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분석 방법이다.

34) 1bp(basis point) = 0.01%이다.

35) 그러나 계수의 95% 신뢰구간을 고려할 때 출연료율의 영향을 35%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분석대상이 금융기관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 전체가 아닌 점, 안정적 시계열자료의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을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보증대출로 제한한 점, 외부에서 은행 대출금리의 결정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지속적으로 지출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출연금을 포함한 수입의 발생으로 여유자금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여유자금의 해소방안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우대요율 확대 등 금융기관출연요율의 인하 또는 보증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³⁶⁾

36)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출연료를 인하하는 경우 대부분이 차주의 이익보다는 은행의 수익으로 귀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연료 인하보다는 차주가 직접 납부하는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 중 무주택 저소득 차주에게 보증료를 인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6.30.))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가. 현 황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¹⁾은 우리 기업의 초고위험국가 수주지원 목적의 특별계정 지원여력 확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적정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의 예산현액 300억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0	30,000	0	0	30,000	30,000	100.0	0	0

자료: 기획재정부

상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초고위험국가 수주지원 목적의 특별계정 지원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2018.12.17.)’²⁾에서 발표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B+이하³⁾의 초고위험국가⁴⁾에서의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⁵⁾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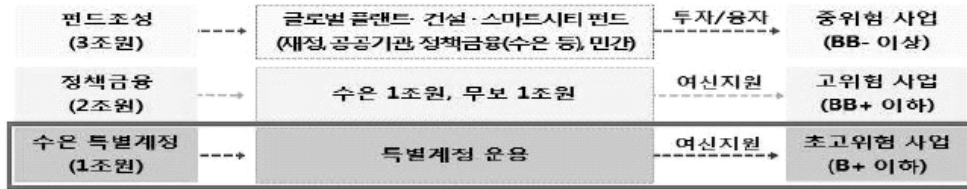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3236-301

2) 관계부처합동,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도자료, 2018.12.17.

3) 신용평가사인 S&P는 투자등급을 Aaa에서 D등급까지 총 22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22개 평가 등급을 ‘투자적격-투자주의-투자부적격’으로 구분할 경우 Aaa에서 BBB-는 ‘투자적격’, BB+에서 CCC-까지는 ‘투자주의’, CC이하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다.

4) 신용평가사 S&P 기준으로 B+이하 주요 국가현황(2020.6.1.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조]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도자료, 2018.12.17.

이후 2019년 2월 발표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⁵⁾에서는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B+이하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상기 지원 목표금액 1조원을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5월에는 상기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내규인 「특별계정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 취급규정」 또한 마련(2019.6)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2018년의 정부 배당성향 축소를 통해 마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익잉여금 2,000억원과 2019년 추정 예산 300억원을 합한 총 2,300억원의 정부 재원을 특별계정으로 편입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공동 부담을 위해 정부 지원액과 동일한 2,30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특별계정에 편입하였으며,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총 4,600억원이 특별계정 재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0년에는 1,600억원의 정부 출자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예산액 수령 시⁷⁾ 동일 금액의 한

S&P 등급	국가명
B+	알바니아, 바레인, 베냉, 볼리비아, 쿡제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몬테네그로, 르완다, 세네갈, 터키
B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몽골, 토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B-	바베이도스, 카메룬, 콩고공화국, 엘살바도르,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CCC+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수리남
CCC-	벨리즈, 잠비아
SD ¹⁾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 베네수엘라

주: 1) SD(Selective Default: 선택적 디폴트)란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지 않은 단계로, 채무 전체가 상환되지 않은 디폴트(채무불이행)보다는 한 단계 높은 등급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5) 또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완전 면책 하는 등 특별계정에서의 여신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6) 관계부처합동,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보도자료, 2019.2.14.

국수출입은행 이익잉여금이 특별계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특별계정 총 편입 금액은 7,800억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자원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정부 자원 (A)		한국수출입은행 자원 (B)		합 계 (A+B)
2019 (완료)	출자	300	이익잉여금	2,300	4,600
	배당금 유보	2,000			
	소계	2,300			
2020 (예정)	출자	1,600	이익잉여금	1,600	3,200
계		3,900	계	3,900	7,8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계정 설치 목적 달성 위해 각별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제출한 2019~2020년간의 특별계정 후보사업의 2020년 5월 현재 세부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별계정과 관련한 상기 후보사업 규모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9년에 5억 7천만 달러, 2020년에 17억 2,5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추진 후보사업 세부 진행현황(202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승인 예산 년도	국가	프로젝트명	금액	진행 현황
2019	나이지리아	NLNG 천연가스 액화 터미널 건설사업	375	2020년 5월 금융계약 체결 완료

7) 정부는 해당 예산액을 2020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위: 백만 달러)

승인 예산 년도	국가	프로젝트명	금액	진행 현황
20 20	이라크	○○○ 수출사업	95	현지 정세 불안 및 내각 사퇴 등 의 사유로 지연 중
		△△△△△ 한도 설정	100	후보사업에서 제외
		합 계	570	
	이라크	○○○ 화력발전소	400	공식 낙찰통지서 접수 지연 중
		화력발전소 확장사업	200	해당 사업의 이라크 정부 예산 포함 확정 후 추진 가능
		○○○ 교육·군수 지원 사업	255	현지 정세 불안 및 내각 사퇴로 관련 협의 지연 중
		△△△ 정수·담수시설 건설사업	184	최근 정세 불안 및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사업추진 협의 지연 중
		○○○ 처리시설 건설 사업	417	최근 정세 불안 및 이라크 정부 예산 배정 절차 지연으로 협의 지연 중
	미얀마	△△△△△ 구축사업	85	해당국 채무상환유예 신청으로 사업추진 지연
	투르크	□□ 수출 사업	100	차주국 정부의 사업 일정 연기 및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사업 일정 지연
	앙골라	☆☆ 수출 사업	84	해당국 채무상환유예 신청으로 사업추진 지연
	합 계		1,7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2020년 7월 현재, 상기 표에서와 같이 2019년 후보사업인 나이지리아의 'NLNG 천연가스 액화터미널 건설사업'의 경우만 2019년 12월 승인된 이후 2020년 5월에 금융계약이 체결되었다.⁸⁾ 나머지 사업의 경우 모두 상기 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지 정세 불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초고위험국가에서의 수주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계정 지원은 사업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정세 불안 등에 따라 실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주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후보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8) 2020년 7월 현재, 관련 자금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2019년에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당성향 축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배당수익을 감소 시켰다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지원과 동일하나, 별도의 국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바 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5월, 상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과 관련한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되었다.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외 운영위원회⁹⁾의 의결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익금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상기 운영위원회는 수출입은행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등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6. 28., 2013. 3. 23.>

1. 수출입은행장
 2. 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본조신설 2019. 5. 28.]

한국수출입은행은 2019년 특별계정의 재원 마련 시 2018년 배당성향을 축소하여 2,000억원을 특별계정으로 편입하였다.

즉,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배당액, 배당성향(2014~2019)]에서와 같이 2014년 22.75%에서 2017년 34.49%로, 결손이 발생한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 이상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 출자기관 이익잉여금 일부를 경제활력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정책기관으로부터 투자계획을 접수·심의하여 배당률 산정에 감안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도 주요 정책 투자과제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2018년 당기순이익 5,970억원에 대한 배당성향은 10.49%로, 2017년 34.49% 대비 24.0%p 감소하였다. 2018년 당기순이익 5,970억원에 2017년 배당성향인 34.49%를 적용할 경우 배당액은 2,059억원 수준으로, 2018년 배당액 627억원에 비해 1,432억원 증가한다. 즉, 해당 배당성향 감소로 인한 유보액 만큼 추가로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¹⁰⁾ 이후 2019년의 배당성향은 36.16%로, 2018년의 10.49%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10) 2020년 6월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주는 대한민국정부(66.4%), 한국은행(9.8%), 및 한국산업은행(23.8%)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배당액, 배당성향(2014~2019)]

(단위: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기순이익(a)	667	220	△14,873	1,728	5,970	3,016
배당금액(b)	152	54	0	596	627	1,090
배당성향(b÷a)	22.75	24.54	-	34.49	10.49	36.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2018년의 배당성향 축소를 통한 해당 금액의 특별계정 편입은, 정부의 배당수익을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 지원과 동일함에도, 이는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익금¹¹⁾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특별계정의 목적 상, 사안에 따라 대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 이익금이 특별계정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히나 2018년도와 같이 향후에도 정부 배당 축소를 통한 대규모의 자금이 국회 심의 없이 특별계정으로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상기와 같이 별도의 국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배당 성향 축소를 통한 대규모 자금의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편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교육위원회



부속
표

가. 현 황

기타경비¹⁾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유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사학연금공단은 2019년 계획현액 101억 6,900만원 중 8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타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타경비	10,169	10,169	0	10,169	8,254	0	1,915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사학연금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과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부프로그램인 ‘금융지식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금융지식나눔활동은 공단의 핵심 역량인 금융지식을 활용한 금융교육과 펀드매너저 및 애널리스트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진로교육으로 공단은 이 활동을 통해 교육부로 부터 2018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19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376-200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20회의 교육은 모두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 교육이었고, 공단 직원은 공단에서 일하는 모교 선배와의 만남에만 강의자로 나섰다.

[2019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금융지식나눔활동 실시 현황]

(단위: 천원)

교육명	교육 주제 및 내용	교육주체(강의자)	횟수	소요비용
시각장애우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실	합리적인 소비와 금융(금융회사, 금융상품)의 이해	△△△ 경제교육센터	6회	4,862
자유학기제 중학생 경영경제 교실	경제·경영 기본개념 및 관련 분야 진로직업 소개	○○교육	10회	22,000
고등학생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금융특강, 진로특강, 공단 모교 선배와의 만남	△△△ 경제교육센터, 공단직원	2회	7,405
눈높이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교실	경제관념 및 용돈관리습 관 형성	△△△ 경제교육센터	2회	5,420
합계			20회	39,68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학연금공단은 2013년 금융지식나눔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대부분의 교육활동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해 왔다. 교육위탁비용도 매년 지출하였는데 2019년에는 3,96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지식나눔활동을 위한 교육위탁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교육위탁운영비
2013	15,268
2014	17,120
2015	31,757
2016	29,464
2017	28,683
2018	30,542
2019	39,68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은 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행하는 기부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한 교육기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²⁾

2) 이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은 2020년 이후부터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단 예산이 아닌 임직원 모금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가. 현 황

기타경비¹⁾ 사업은 사학진흥재단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 7,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타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타경비	3,421	3,421	26	3,447	1,973	13	1,461
임차료	72	72		72	71	0	1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사학진흥재단은 임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월세를 재단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임원 사택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과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사학진흥기금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예산비목별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임원 2인의 거주 목적으로 2채의 사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임차비용으로 1,98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임원 사택은 사학진흥재단이 계약당사자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원이 자신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면 재단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사학진흥기금 2976-200

[사학진흥재단의 임원 사택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임대차 계약관계	보증금 부담자	임차료(월세) 부담자	사학진흥재단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월세)
임원 ○○○ - 임대인 A	임원 ○○○	사학진흥재단	12,000
임원 △△△ - 임대인 B	임원 △△△	사학진흥재단	7,800
합계			19,800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임차료의 사용용도를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건물·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시설·장비 리스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학진흥재단과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지침에서 정한 예산의 사용용도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예산집행이다.

따라서 사학진흥재단은 임원 사택에 대한 임차가 필요한 경우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R&D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330억 8,200만원 중 99.6%인 1,32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133,082	133,082	0	0	133,082	132,517	99.6	0	565
기관운영비	10,426	10,426	0	0	10,426	9,861	94.6	0	565
주요사업비	122,656	122,656	0	0	122,656	122,656	100.0	0	0
시설사업비	0	0	0	0	0	0	0	0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관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으로 출연연 관련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는 ‘출연연 지원육성 사업’, 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 사업’, 출연연 개방형 생태계 조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융합연구사업’, 이공계 신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출연연에서의 R&D 연수(박사후연구원) 기회를 제공하는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2241-4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중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9 결산
출연연 지원육성	출연연 정책기획·조사 분석, 제도개선 및 기관평가 등	4,419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 ·관리지원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성장·도약 지원, 출연연 IP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및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등	3,228
융합연구	2개 이상 출연연과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융합연구단, 창의형 융합연구, 민군융합기술연구, 선행융합연구, 융합클러스터	83,538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이공계 신진 박사학위 취득자의 출연연 R&D 연수(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	5,087
출연연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 (2019년 종료)	산업화형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정부지원을 연계	26,384
합계		122,65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의 공동 기술마케팅 개선 필요

가. 현 황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 사업은 크게 출연연 성과확산 지원 사업과 중소·중견기업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연연 성과확산 지원 사업은 출연연 보유 기술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²⁾)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연연 TLO 성장·도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지원 사업은 출연연, 유관기관, 중소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2019 결산
출연연 성과 확산 지원	공동 기술마케팅 지원	· 기업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 온·오프라인마케팅, 기술교류회·세미나 · 계약 및 협상 지원 · 대중소기업 연계 기술사업화 등	1,250
	출연연 TLO 성장·도약 지원	· TLO 역량강화 지원(모듈형 지원) · In-house변리사서비스 · 연구자직접지원서비스 등	1,250
	출연연IP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기관별 유형별 7개 항목을 선택해 니즈 맞춤 형 IP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484
	기술사업화지원 및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 TLO 역량강화 및 예비창업자 교육 등 · 성과확산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 등	
중소 중견 기업 지원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성과통계 관리 · 중소기업 제도 및 정책 개발 · 출연연 패밀리기업 지원 · 패밀리기업 전문기술교육 등	207
	지역권역별 설명회	·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기술지원협의회 등 대외협력	37
합계			3,228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나. 분석의견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 사업의 공동기술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연연 공동 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실적이 계약 건수 및 전체 기술료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건당 평균기술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R&D투자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정부의 국가R&D사업 예산은 24조 2,195억원 수준이지만, 국가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가R&D 총투자액 대비 기술료 성과는 1.2 ~ 1.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 R&D 투자 대비 기술료 성과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R&D 총투자액 (A)	176,395	188,747	190,044	193,927	197,759
국가R&D 기술료 성과 (B)	2,311.2	3,169.2	2,663.7	2,400.8	2,891.0
비율(B/A)	1.31	1.68	1.40	1.24	1.46

주: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전년도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집행내역 및 성과를 집계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2020년 5월 기준 최신 자료는 2018년도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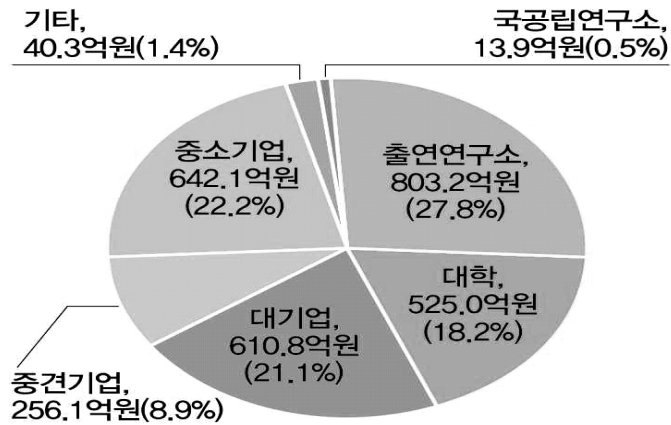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중 출연연³⁾의 경우, 2018년 기준 국가R&D 총 투자액의 21.9%인 4조 3,214 억원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⁴⁾, 기술료 수입은 전체 국가R&D 기술료 성과의 27.8%인 803.2억원으로 나타났다.

3) 여기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및 기타 부처직할 출연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019. 8) 참조.

[2018년 국가R&D 기술료 성과의 연구수행주체별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2020. 1)

이는 타 연구수행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료 성과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 기술을 직접 실시할 수 없고 기술이전을 통해서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비실시주체(NPE; Non Practicing Entity)⁵⁾이기 때문에 기술실시를 통해 직접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의 기술료 성과와 비교할 경우 현재의 수치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⁶⁾

이와 같이 정부R&D 자금이 투입되는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 및 시장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회수하여 또 다른 정부R&D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R&D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 R&D투자의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가R&D사업을 통해 출연연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술 분야의

5) NPE란 제품생산 등을 통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보유주체를 말하며, 주로 대학, 연구소가 이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기술만을 보유하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 NPE도 등장하고 있다.

6) 기업의 경우 국가R&D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업화하여 그로 인해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통계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만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관리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의 기술이전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첫 도입된 2015년에 17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성사시킨 이래 2018년 기준 87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나타내는 등 건수 및 전체 기술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이전 계약 건당 평균기술료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⁷⁾

[공동기술마케팅지원 사업의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기술이전(A)	17	48	58	87	210
기술료(B)	1,170	2,965	6,620	8,360	19,115
평균기술료(B/A)	69	62	114	96	91

주: 동 사업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적을 집계한 기준년도는 사업시작년도이지만 실제로는 차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참고로,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수요기업에 넘기는 양도 계약과 기술에 대한 실시(사용)권한만을 부여하는 기술실시계약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정부가 국가R&D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술을 개발한 주관연구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양도 계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체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R&D 성과물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이전계약은 기술실시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실시계약은 기술의 독점적 실시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 계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나누어진다.

7) 공동기술마케팅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에 첫 도입되어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한 관계로, 2019년 사업의 경우 2020년 9월 종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기술실시계약의 권리유형]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정의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독점·배타권 有)	특허발명을 허락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독점·배타권 無)
권리 범위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권리의 이전, 질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계약 가능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하에 권리의 이전, 질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계약 가능

자료: 「특허법」 관련 조항(제100조~제102조)을 바탕으로 제작성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과 달리 배타적 사용권이 없는 통상실시권의 경우 계약조건이 단순한 반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가 취약하다. 반면에 기술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은 사업(실시)자에게 기술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조건(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⁹⁾)을 요구하게 되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수반된다.

그런데 동 사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의 기술이전 실적을 기술이전 조건(계약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2017년에 체결한 전용실시권 계약(5건)의 평균기술료(4억 6,800만원) 대비 2018년에 체결한 전용실시권 계약(15건)의 평균기술료(9,600만원)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술이전 실적의 평균기술료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다소 낮아진 이유는 전용실시권 계약의 기술료 규모 격차 때문임을 알 수 있다.

9) 정액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과 함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경상기술료는 해당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기술마케팅지원 사업의 기술이전 계약유형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소유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통상실시권 허여	
	건수	금액	건수	기술료 (평균기술료)	건수	기술료 (평균기술료)
2017년	1	14	5	2,340 (468)	52	4,266 (82)
2018년	6	832	15	1,444 (96)	66	6,084 (92)

주: 동 사업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적을 집계한 기준년도는 사업시작년도이지만 실제로는 차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기술이전계약은 기술 분야, 기술의 특성, 계약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액기술료의 평균금액으로 기술이전 협상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¹⁰⁾

다만,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 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3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술료 및 평균기술료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 기술이전 실적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기술이전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이전 계약 실적이 전체 25개 출연연 중 일부 기관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동기술 마케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이며, 연구회는 매년 이들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발굴·매칭하고 마케팅, 협상 및 계약 등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중 특정기관

10) 기술이전계약은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및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액기술료 규모만으로 계약협상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에 실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2년간 함께 10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나타난 반면, 2년간 동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¹¹⁾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사업의 출연연별 기술이전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기관명	2017년	2018년	합계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11	20
2	한국식품연구원	5	12	17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	4	17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8	15
5	한국원자력연구원	6	5	11
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0	11	11
7	세계김치연구소	2	8	10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	10	10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5	7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2	6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2	5
12	안전성평가연구소	1	4	5
13	한국화학연구원	1	2	3
14	국가핵융합연구소	2	1	3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2
16	한국천문연구원	0	1	1
17	한국전기연구원	1	0	1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0	1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	0	0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	0	0
21	한국한의학연구원	0	0	0
22	한국기계연구원	0	0	0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	0	0
24	재료연구소	0	0	0
25	녹색기술센터	0	0	0
	합계	58	87	145

주: 녹색기술센터의 경우 녹색·기후기술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협력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기술사업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관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동 사업은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관 성격상 기술사업화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은 모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7개 기관 중 정부가 민간 기술이전 유인이 많은 것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는 산업화형 출연연¹²⁾도 3개 기관(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이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공동기술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실적이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 산업화형 출연연이란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중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유인이 많은 산업기술 분야의 R&D를 주로 수행하는 11개 출연연을 말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1-2. 융합연구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 제고 필요

가. 현황

융합연구 사업은 출연연 간 개방형 생태계 조성 및 융합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국가·사회현안 및 산업계 기술현안 해결, 선도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융합연구단, 창의형 융합연구, 선행융합연구, 민군융합기술연구 및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 사업의 세부내역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2019 결산
융합연구단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융합연구단에 국가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선도 기술 또는 실용화형 기술개발 지원	31,600
창의형 융합연구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학·연이 참여하여 기술한계 극복 및 창의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소형 융합연구과제 지원	43,318
선행융합연구	2개 이상 출연연 소속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그룹(5명 내외)에 대하여 본 융합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주제 및 핵심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선행연구 지원	1,000
민군융합기술연구 (2019년 종료)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학·연이 참여하여 국방산업시장 개척과 민간기술 응용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형 융합과제 지원(2019년 종료)	2,700
융합클러스터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학·연이 참여하여 융합연구 네트워크 활동 및 융합연구 아이템 발굴 등 지원	4,920
합계		83,538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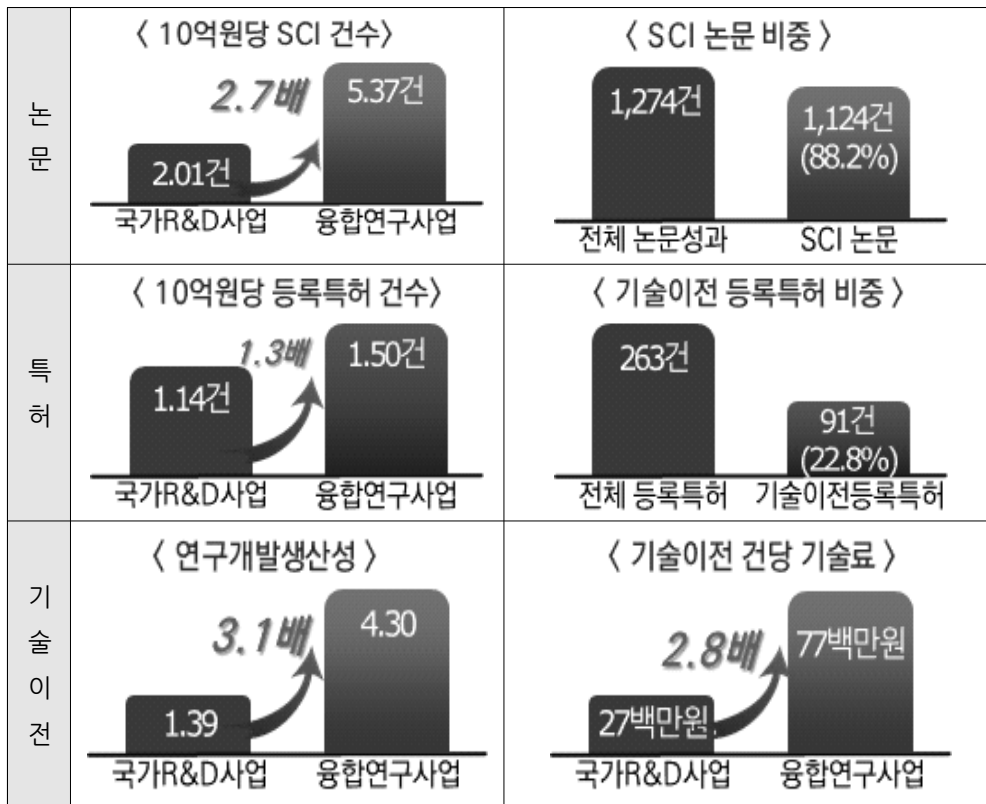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융합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융합연구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국가 R&D 사업의 평균적인 성과 대비 우수하지만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경우 융합연구 취지와 달리 공동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다.

융합연구 사업의 최근 5년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논문·특허, 기술이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국가 R&D 사업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10억원당 SCI논문 건수의 경우 국가 R&D 사업 평균의 2.7배, R&D 투자 10억원당 등록특허 건수도 국가 R&D 사업 평균 대비 1.3배이며,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도 국가 R&D 사업 평균에 비해 2.8배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과 융합연구 사업 성과 비교]



주: 국가R&D사업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이며, 융합연구사업은 2018년도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편, 융합연구 사업은 다양한 소속과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통한 연구자 간 공동연구 성과는 동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융합연구 사업의 전체 연구성과 중 공동연구 성과를 본 결과, 전체 연구(논문·특허) 성과 중 공동연구 성과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연구 사업의 연도별 공동연구 성과 비중]

(단위: 건, %)

구분	논문성과			특허성과		
	총 논문 (A)	공동논문 (B)	비중 (B/A)	총 특허 (A)	공동특허 (B)	비중 (B/A)
2015년	209	12	5.7	209	4	1.9
2016년	377	39	10.3	363	20	5.5
2017년	500	73	14.6	421	40	9.5
2018년	522	103	19.7	430	46	10.7

주: 동 사업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적을 집계한 기준연도는 사업시작년도이지만 실제로는 차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편, 융합연구 사업 중 R&D 전 단계의 협력 네트워킹(융합클러스터)이나 기획연구(선행융합연구)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융합연구(R&D)를 수행하며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2개의 사업으로는 융합연구단 사업과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를 비교해 보면, 융합연구단 사업에 비해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의 비중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융합연구단 사업은 전체 492편의 논문 중 21.1%인 104편의 논문이 공동논문인 반면,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은 전체 1,116편의 논문 중 10.7%인 123편만이 공동논문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융합연구단 사업은 전체 522건의 특허 중 11%인 55건이 공동특허인 반면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은 전체 901건의 특허 중 6%인 54건만이 공동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13)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경우 2018년 공동연구 성과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융합연구단 사업과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 비중 비교]

(단위: %, 건)

구분	융합연구단						창의형 융합연구					
	논문			특허			논문			특허		
	전체	공동	비중	전체	공동	비중	전체	공동	비중	전체	공동	비중
2015	14	4	28.6	14	0	0.0	195	8	4.1	195	4	2.1
2016	103	27	26.2	116	9	7.8	274	12	4.4	247	11	4.5
2017	195	43	22.1	215	26	12.1	305	30	9.8	206	14	6.8
2018	180	30	16.7	177	21	11.9	342	73	21.3	253	25	9.9
합계	492	104	21.1	522	56	10.7	1,116	123	11.0	901	54	6.0

주: 동 사업은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적을 집계한 기준년도는 사업시작년도이지만 실제로는 차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양 사업의 연구과제간 기술 분야, 과제규모, 연구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연구성과의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양 사업 모두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복수의 출연연 연구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기술 분야의 연구과제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중 분야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연구과제에는 함께 참여하지만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은 이중분야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물리적 통합은 가능하였지만, 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자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화학적 융합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지난 2014년에 출범하였으며, 융합연구 사업은 그러한 연구회 통합과 함께 추진된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융합연구 사업의 세부내역 사업 간 공동연구 성과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하락(공동논문 비중 12.4%, 공동특허 비중 2.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년도 과제 중심인 R&D사업의 특성 상 단년도 성과보다는 3~5년 단위로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둘째, 융합연구단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동연구 성과가 미흡한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 및 운영형태의 차이로 인해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융합연구단 사업과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 사업은 연구비, 연구기간 등 과제 규모 면에서 융합연구단 사업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구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복수의 출연연 연구자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여 융합연구를 추진하는 지원 대상 면에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융합연구단 사업과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 비교]

구분	융합연구단 사업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
사업 목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사회 대형 현안해결 및 산업계 신성장분야 핵심기술 개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선도 기술 창출 및 기술한계 극복
지원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이 참여하는 과제	출연(연)과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과제
연구 (사업) 기간	- (미래선도형) 6년 이내(3+3년) - (실용화형) 3년 이내	- (원천·선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3+2년) - (기술한계극복·현장문제해결형) 3년 이내
연구 (사업) 비	- 총사업비 40-80억원 규모 · 연구회 지원금 최대 50억원, 기관부담금 총사업비의 약 30% 규모	- 총사업비 20억원 규모 · 연구회 지원금 최대 14억원, 기관부담금 총사업비의 약 30% 규모
연구 수행 (사업) 운영	- (연구수행·운영) 참여연구원은 융합연구단이 설치되는 연구기관에 결집하여 과제를 수행(on-site) 하고, 과제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개념의 연구수행 - (참여율) 참여연구원 70%이상 과제 참여를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연구단장 과제참여율 100%)	- (연구수행·운영) 참여연구원은 원소속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non on-site) 하며, 정기적인 모임 및 상시적인 on-line 소통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참여율) 주관연구책임자 50%, 세부과제책임자 30% 이상 과제 참여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양 사업의 공동연구 성과 간에 약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를 양 사업간 연구 분야, 과제 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연구과제)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소속의 참여연구원이 단일의 연구현장(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융합연구단 사업은 물리적인 연구현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On-site형 융합연구라고 불리고 있다. 반면에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은 참여연구원이 본인의 소속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모임(평균적으로 분기 1회)과 온라인 소통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과제 참여 및 운영형태의 차이가 양 사업 간 공동연구 성과의 격차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복귀 시 원 소속기관에서의 연구경력 단절 등의 문제로 인해 파견 형식의 융합연구과제 수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 소속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창의형 융합연구 과제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융합연구 과제 추진방식에 따른 공동연구 성과가 명확히 차이가 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창의형 융합연구의 과제수행 방식은 순수한 융합연구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의 협력·교류 등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여 연구과제의 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3. 출연연 지역조직의 운영 실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가. 현황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방발전 촉진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회 소관 출연연으로 하여금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총 61개소(건립 중인 3개소 포함)의 지역조직이 전국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형태는 분원, 본부, 센터 등으로 다양하다.¹⁵⁾

[출연연 지역조직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 원 권	제 주 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운영	7	1	7	0	4	0	5	9	2	6	3	4	3	2	3	2	58
건립	0	0	1	0	0	0	1	0	0	0	0	0	1	0	0	0	3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건립중인 4개 지역조직을 제외한 58개 지역조직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9년 결산 기준 총 4,973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을 통해 지역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역조직”이란 연구기관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포함)을 말한다.

[출연연 지역조직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출연연 지역조직	282,620	305,128	319,130	464,895	497,364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나. 분석의견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연연 지역조직은 5년 단위 평가를 통해 기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5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급연구 인력의 지역유치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연연 지역조직에는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건립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평가 및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자체규정(「소관 연구기관 본원외 조직 설치 운영 규정」)을 통해 지역조직 설치 추진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하여 5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기능조정 및 통합,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지역조직 평가에서는 제한적으로 기능조정 및 통폐합을 시행한 바 있다.¹⁶⁾

2015년 출연연 지역조직 평가 결과, 종합등급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은 41개 평가대상 조직 중 20%인 8개 조직이 해당되었다.

16) '2015년 출연(연) 지역조직평가'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강릉센터는 폐쇄 후 춘천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2016년), 순천센터는 광주센터와 통합(2016년), 제주센터는 2017년 철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와 재료연구소 부안풍력시험동은 단순 시설조직으로 전환되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은 서울 본원과 통합하였다.(2017년)

[2015년 출연연 지역조직의 평가 등급]

(단위: 개, %)

우수	보통	미흡
4개 조직(10%)	29개 조직(70%)	8개 조직(20%)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개 기관의 세부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통폐합을 실시한 기관은 4곳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와 강릉센터는 각각 광주센터와 춘천센터로 통합되었고, 제주센터는 철수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은 서울분원으로 통합되었다.

[2015년 출연연 지역조직 평가 미흡 판정 조직의 세부평가등급]

(단위: 점)

구분	설치 목적 부합성		지역 연계성		대내외 소통		성과의 우수성		최종점수 및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점수	등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릉센터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20	C	15	A	5	C	60	D	67.0	미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20	D	15	B	5	D	60	C	69.0	미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	20	C	15	B	5	C	60	D	65.5	미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융합 R&D센터	20	C	15	D	5	D	60	C	68.0	미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재료연구소 부안풍력시험동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반면에, 성과부문에서 최하등급(D)을 받아 단순시설조직으로 전환시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의 경우,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본원과의 공동연구 또는 본원 수탁 과제 단순실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독자적인 연구수행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투입되는 예산도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R&D	110	260	776	675	581
	전체	2,236	1,979	2,681	2,763	3,198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한, 지역연계성 부문과 설치목적 부합성 부문 등 최하등급을 2개 이상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SoC융합 R&BD센터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의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력 및 사업 이관 등 기능조정을 실시¹⁷⁾하였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규모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SoC융합 R&BD센터의 연도별 인력 및 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SW-SoC융합 R&BD센터	인력	17	15	16	17	16
	결산	7,584	5,671	5,230	6,086	9,612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와 같이 출연연 지역조직은 그 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회에서 시행하는 5년 단위 평가가 출연연 지역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7)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ETRI 서울센터의 경우 지역연계성 적은 사업을 본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재정립을 시행하였고,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의 경우 시제품제작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인력은 14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기존 2개 센터를 1개로 통합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의 경우 인력, 예·결산 등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본원의 이원화를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KISTI 서울분원의 평가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지역조직 평가에서는 설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운영제반 시스템을 정립중인 조직, 평가 당시에 건설 중인 조직, 단순시설 조직, 사실상 본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의 경우 사실상 본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분류되어 2015년 지역조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은 2019년 결산기준 123명의 인력이 20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데이터분석본부 산하에 1단, 4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의 연도별 결산 및 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	결산	18,903	16,836	16,070	18,226	20,275
	인력	104	104	104	125	123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15년 지역조직 평가에서 사실상 본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조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 조직이 본원에 대한 기관평가(3년 단위)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조직 평가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중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관 어디에도 서울분원이 본원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 정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며, 제6조에 의한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은 본원 조직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본원외 조직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본원외 조직에 해당하므로, 출연연 지역조직의 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다.²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5년 단위로 출연연 지역조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해당 지역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설치목적 부합성, 지역연계성 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조직의 기능조정 및 통합,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²¹⁾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 지역조직의 평가 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을 평가대상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 이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연구원 출범 시 서울에 위치한 (구)산업기술정보원에 근무 중인 인력(약 100명)과 시설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원의 통합운영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현재 서울분원의 운영형식이 연구원 정관 및 연구회 규정상 명백히 지역조직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서울분원의 본원조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17조(본원 외 조직에 대한 평가) ①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대상 등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조직의 기능 조정 및 통합,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¹⁾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098억 5,100만원 중 98.9%인 1,08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9,851	109,851	0	0	109,851	108,635	98.9	0	1,216
기관운영비	52,268	52,268	0	0	52,268	51,052	97.7	0	1,216
주요사업비	45,552	45,552	0	0	45,552	45,552	100.0	0	0
시설사업비	12,031	12,031	0	0	12,031	12,031	100.0	0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관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으로 무인기 비행 관련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는 ‘항공우주기반연구 사업’, 발사대 시스템 등 우주센터, 항공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국가 항공우주 인프라 운영 사업’, 국가 위성의 임무 관제 및 위성정보 활용 핵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활용 사업’,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 시설 구축을 위한 ‘우주센터 2단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2241-4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9 결산
항공우주기반연구	무인기 비행시험 기술연구, AI기반 광역탐사 드론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개발, 우주발사체용 다단연소 액체엔진 고성능화 선행기술 확보 등	12,028
국가 항공우주 인프라 운영	발사대시스템 유지 및 운용,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항공센터 운영, 위성/발사체 사업 완수를 위한 청정 조립 및 검증시험 시설 유지 등	12,946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활용	아리랑위성 2호, 3호, 5호, 3A호 등 위성의 안정적 임무운영, 국가위성정보 활용 전담기구로서 역할수행,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수요의 위성정보 생성 및 제공 등 관련 기술연구	11,125
우주센터2단계	한국형발사체(KSLV-II)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 시설/장비 확장 구축/운용	6,439
장비구입	-	3,014
합계	-	45,55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의 안테나 개발 지연

가. 현 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전담기구²⁾로서 2개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고유사업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위성임무관계 및 정보활용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사업인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³⁾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임무관계 및 정보활용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9 결산
위성임무관계 및 정보활용	위성의 안정적 임무운영, 국가위성정보 활용 전담기구로서 역할 수행 및 위성 정보활용 핵심기술개발 및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지원	11,090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국가 위성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국가위성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500
합계	-	11,590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중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은 국가 위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국가위성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출연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1331-407

[2019회계연도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위성통합 운영시스템개발	500	500	0	0	500	500	0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은 2019년 신규 추진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안테나 개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실집행률이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은 2018년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 간 합의했던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4년간 299억 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위성정보활용 전담기구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가위성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500	14,986	13,260	1,220	29,96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르면 2019년에는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의 분야별 시스템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안테나 및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예비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의 2019년도 사업추진계획]

연차	주요 내용	세부일정
1차년도 (2019년)	통합운영시스템 설계검토	3~9월
	지상안테나 예비설계	5~12월
	지상안테나 설치부지 안테나기초 설계	9~12월
	통합운영 지상 네트워크 개발(내부 통합운영을 위한 설계)	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동 사업의 2019년도 실집행률을 보면 안테나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액 5억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1억 8,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 사업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 액	불용 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국가위성통합 운영시스템개발	500	500	500	500	0	500	188	312	0	37.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안테나 계약 지연 사유로 입찰진행 과정에서 수요처 부지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불거져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차년도 이월 예산은 금년 3월에 집행완료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1년 1분기 내 안테나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2022년 1분기에 예정된 전체 시스템 시험 시 안테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 상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안테나 개발을 위한 설계를 2019년 12월에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안테나 개발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 계획된 프로세스가 순연된다고 가정하면 안테나 개발, 시험, 설치 및 운영 일정 면에서 6개월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의 안테나 개발 추진일정]

Program	2019				2020				2021				2022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주요일정	★ 안테나 계약완료 ◆ SDR				◆ PDR				★ 안테나운영 ◆ CDR				★ 시스템 개발 완료 ◆ ORR			
사용자지원 개발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안테나 개발	설계				개발 시험 설치				운영							
네트워크 개발	설계				네트워크 개발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개발				시험 운영			
데이터시스템 개발	설계								개발				시험 운영			
관제수신 개발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처리시스템 개발					설계				개발				시험 운영			

SDR(system Design Review), PDR(Preliminary Design Review), CDR(Critical Design Review), ORR(Operation Readiness Review)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안테나는 위성관제 등 국가위성 통합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계획에서도 기존 안테나 2기의 기능을 보완할 신규 안테나(2기)를 우선 개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안테나 개발 계약 지연은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안테나 개발계약 지연에 따른 전체 안테나 개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안테나 개발 후 시험·설치 및 운영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수신 등 위성운영주체 일원화 검토 필요

가. 현 황

위성임무관제 및 정보활용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국가위성의 안정적 임무운영, 국가위성정보 활용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임무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12억 4,400만원 중 99.3%인 11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8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다.

[2019 회계연도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활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전기 이월	2019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집행률 (B/(A-D))
					이월 (C)	불용 (D)	
위성 임무관제 및 정보활용	154	11,090	11,244	11,166	78	0	99.3
위성 임무관제	154	5,584	5,738	5,697	41	0	99.3
위성 정보활용	0	3,740	3,740	3,731	9	0	99.8
정부 위성정보활용 협의체 지원	0	1,766	1,766	1,738	28	0	98.4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 위성 운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 기상청 및 해양수산부 등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2019년 결산 기준 117억 3,600만원, 2020년 예산 기준 159억 5,9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지궤도 위성 운영 관련 기상청·해양수산부·환경부 2019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주관기관	사업명	2019 결산	2020 예산
기상청	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8,327	9,069
해양 수산부	해양위성센터 (해양과학기술원)	지구관측위성 해양정보 활용시스템 운영 및 한반도 주변 해황변동 연구	265	0
		국가해양위성센터 설립 및 운영기반 마련	0	6,010
		해양탐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2,210	0
환경부	환경위성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활용기반 구축	934	880
합계	-	-	11,736	15,95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위성정보 수요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인 위성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저궤도위성 뿐만 아니라 정지궤도위성의 운영(관제·수신) 주체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임무관제 및 정보활용사업을 통해 국가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활용전담기구로서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국가위성정보의 통합 관리 및 효율적 유통·활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가위성의 관제·수신 등 국가우주자산(위성·지상국)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가위성의 운영체계는 저궤도 위성⁴⁾과 정지궤도 위성⁵⁾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수요처로 이원화

4) 저궤도위성은 지구해수면 기준 200~6,000 km 고도 사이의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공간해상도가 높아야 하는 정찰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이 이에 해당한다.

5) 정지궤도위성은 지구해수면 기준 3만 6,000 km 높이에 있는 위성으로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아 지구상에서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정지궤도라 하며, 지속적인 관측에 유리하므로 통신 위성이나 기상위성에 주로 이용된다.

되어 위성운영(관제·수신)을 수행중이며,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항우연과 기상청, 해양수산부 등 정보수요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성정보의 활용은 저궤도 위성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29개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협의체를 통해 공공부문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기상청·해양수산부·환경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가위성 운영 및 활용체계 현황]

구분	위성	관제		수신		활용
		주관제	부관제	주수신	부수신	
저궤도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항우연	수요처	수요처	항우연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1호)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센터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청)
	천리안 위성(2A)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센터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청)
	천리안 위성(2B)	항우연	항우연	해양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	항우연	해양위성센터 (해양수산부) 환경위성센터 (환경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영상, 통신, 항법 등 위성정보의 공공·민간부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 단위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위성인프라 및 효율적인 위성정보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위성운영은 통합하고, 위성정보의 활용은 해당부처별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술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사업(2019~2022년)을 통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위성운영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향후 운영계획은 저궤도위성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상청·해양수산부·환경부가 위성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의 운영체계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후에도 기존과 같이 분산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구축(2022년) 후 위성운영 및 활용계획]

구분	위성	관계		수신		활용
		주관계	부관계	주수신	부수신	
저궤도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항우연	항우연	항우연	항우연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차세대 중형위성	항우연	항우연	항우연	항우연	국토정보지리원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1호)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센터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청)
	천리안 위성(2A)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센터	항우연	기상위성센터 (기상청)
	천리안 위성(2B)	항우연	항우연	해양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	항우연	해양위성센터 (해양수산부) 환경위성센터 (환경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대다(1:多) 구조의 분산된 위성운영체계는 위성정보 수신을 위한 다수의 지상국을 운영하게 되어 안테나 및 위성정보처리시스템의 중복 운영과 같이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한정된 위성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성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⁶⁾

6) 정부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계획(2011.12), 제1차 및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2014년/2019년) 등을 통해 위성운영은 통합, 위성정보 활용은 해당부처별로 수행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일대다(1:多) 위성운영 구조]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진적 국가위성운영체계 운영전략 수립」(2016)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궤도 위성의 관제 및 위성정보의 수신·처리 등 운영은 우주개발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에도 운영을 기상관측 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위성운영 기관 현황]

구분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
미국	NASA 통합	○ (관제) NASA ○ (수신·처리) NASA, USGS(지질조사국)	NOAA (해양대기청)
EU	ESA 통합	○ (관제) ESA 산하 ESOC(European Space Operation Center) ○ (수신·처리) ESA 산하 ESRIN(European Space Research Institute)	EUMETSAT (기상위성센터)
일본	JAXA 통합	○ (관제) JAXA 산하 SAOC(Satellite Application and Operation Center) ○ (수신·처리) JAXA 산하 EOC(Earth Observation Center)	JMA (기상청)

주: (NASA) National Aeronautic & Space Administration, (ESA) European Space Agency,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정부는 국가위성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도 다원화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우주센터 2단계 건설 등 시설사업비 집행행률 개선 필요

가. 현 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사업비는 우주센터2단계 건설, 노후기숙사환경개선,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설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20억 3,500만원 중 67.8%인 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7,5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다.

[2019 회계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 이월	2019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집행률 (B/(A-D))
					이월 (C)	불용 (D)	
시설사업비	4	12,031	12,035	8,160	3,875	0	67.8
우주센터2단계건설	0	6,301	6,301	2,804	3,497	0	44.5
노후기숙사환경개선(종료)	1	3,600	2,601	3,424	177	0	95.1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	0	0	330	135	195	0	40.9
노후시설보수	3	1,800	1,803	1,797	6	0	99.7

주: 2019년도 종료사업(노후기숙사환경개선) 잔액 1억 7,700만원은 2020년도 불용처리 예정임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분석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설사업비 중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업이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사업비 전체 집행률은 67.8%이며 이를 집행사업 내역 별로 비교해 보면, 우주센터2단계 건설사업과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이 각각 44.5% 및 40.9%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차년도 이월되는 집행잔액의 규모가 전년도 4억원에서 38억 7,5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주센터 2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발사대 이송로 건설공사 중지 등에 따른 대금지급 일정 지연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납품업체의 상용발전기 부품제작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발전기 부품제작 지연의 경우 항우연의 업체공모입찰 과정이 지체되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주센터 2단계 건설사업 2019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예산(A)	2019집행(B)	잔액(A-B)
발사대 이송로 건설공사	511	398	113
해외추적소 건설공사	1,365	1,365	0
부대공사(전력/공조 등)	652	652	0
부대공사(보안시스템)	127	127	0
부대공사(통제동 MDC)	254	254	0
부대공사(상용발전기 도입)	3,384	0	3,384
시설부대경비	8	8	0
계	6,301	2,804	3,497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의 경우, 설계공모가 2차례 유찰되면서 2019년 11월에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일정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63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차년도인 2020년에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수행의 지연은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사업 2019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예산(A)	2019집행(B)	잔액(A-B)
설계용역비	330	135	195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설사업비 중 실집행률이 저조한 우주센터 2단계 건설 및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일정 지연 및 차년도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910억 7,300만원 중 99.7%인 907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1,073	91,073	0	0	91,073	90,766	99.7	0	30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²⁾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ICT 분야 중장기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계획현액 1,029억 3,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102,936	102,936	0	0	102,936	102,936	100.0	0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2241-423

2)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2135-301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유임무 사업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관리강화 필요

가. 현 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입구조는 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 시설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출연금사업’,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정부 R&D사업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받는 ‘정부수탁사업’, 민간기업의 R&D과제를 수주하여 받는 ‘민간수탁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9년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수입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타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5개 출연연 합계	4,701,197	1,895,189	40.3	2,092,929	44.5	318,045	6.8	305,701	6.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13,182	90,766	14.8	406,212	66.2	24,835	40.5	86,954	14.2

주: 1. 총수입은 전기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표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및 기타수입의 비중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2. 기타수입은 기술료 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기관별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을 말하며, 정부수탁사업이란 R&D집행부처별로 시행되는 다양한 국가R&D사업에 출연연이 참여하는 R&D과제 수탁사업을 말한다.

1996년 PBS(Project Based System)³⁾ 제도 도입 이후 출연연의 정부수탁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출연연이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안정 예산⁴⁾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연연의 정부수탁 비중을 낮추고 안정 예산(묶음예산,

3) PBS 제도는 ‘연구과제 중심제도’라고도 하며 과제 수주경쟁을 통해 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4) 출연연이 정부R&D사업의 과제 수주를 통해 확보하는 정부수탁 예산을 경쟁 예산(Competitive Funding)이라 하고, 이와 달리 정부출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을 안정 예산 또는 묶음예산(Block Funding)이라고 한다.

Block Funding)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⁵⁾ 여전히 출연연의 총수입 중 정부수탁사업의 비중은 44.5%로 높은 수준이며,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정부수탁사업 비중이 66.2%로 가장 높다.

반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총수입 중 정부출연금 비중은 14.8%로 전체 출연연 평균 40.3%보다 현저히 낮으며, 25개 출연연 중 유일하게 정부출연금 비중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 연구비 지원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이하, ETRI⁶⁾ 지원) 사업은 정부수탁과제 중심(PBS)의 출연연 R&D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타 출연연 대비 열악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지원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753억원을 신설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R&D 집행부처가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R&D과제와 그 수행기관(출연연)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⁷⁾ 형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전액 지원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ETRI지원)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비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지원 방식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임무 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20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연연 대상 정책지정사업 추진방안」(20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R&R(역할과 책임) 재정립(2019) 등 참조.

6) ETRI는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약자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영문약칭이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ETRI지원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신설되었다.

따라서 ETRI지원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R&D 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ICT 분야 중장기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 함께 기관의 안정 예산(묶음예산)으로 분류된다.

묶음예산(Block Funding)은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정부 R&D 예산 제도로서, 국가별로 연방정부, 주정부, 연구회를 통해 매년 혹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자금을 일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⁸⁾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참고하여 묶음예산(Block Funding)을 정의하면, “연구기관 고유 목적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촉진을 위해 정부가 연구방향과 총액만을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예산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⁹⁾ 즉, 묶음예산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응하는 기존 PBS 방식의 경쟁예산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⁰⁾

8) 전유정 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 동향 및 시사점”, 「KISTEP 이슈페이퍼 2011-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pp.17~32를 참조하였다.

9) 미국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lock Grants: A Comparative Analysis-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 An Assessment and Proposed Policy」(1977) 및 영국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Securing world-class Research in UK Universities」(2009)의 정의를 참조하였다.

10) R&D 묶음예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2017. 8) 191~204쪽에 소개되어 있다.

[묶음예산과 경쟁예산 비교]

구분	묶음예산(Block Funding)	경쟁예산(Competitive Funding)
개념	예산을 줄 때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맡기는 방식	경쟁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강조점	자율성	효율성
변화반응	변화에 즉각적 반응 가능	선정시 제약조건으로 낮은 대응성
사전통제	지침 등을 통한 미약한 통제	선정/미선정의 강력한 통제
절차통제	적법성·적절성 통제	적법성 통제
사후통제	장기적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한 강력한 사후통제	경쟁 선정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미약한 사후통제
평가부담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로 평가부담 완화	각 경쟁별 상이한 선정평가 및 사후 평가로 중복 부담 발생
기간	출연연, 대학 등의 장기적 발전에 적합	단기적 사업에 적합

자료: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그러나 전술한 묶음예산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ETRI지원 사업은 경쟁을 통하지 않는 정책지정 형태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묶음예산 성격이 약한 측면이 있다.¹¹⁾

ETRI지원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직접 출연되는 정부출연금사업과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 상의 차이로 인해 R&D관리 전문기관(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이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 및 R&D 세부과제에 대한 기획·선정평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차·최종평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즉 R&D 관리 전문기관이 과제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담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정부수탁(위탁관리) R&D사업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TRI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주관기관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정책지정 하였기 때문에 과제기획·선정평가 외에 R&D사업 전담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11) 정부에서도 현재의 출연연 지원방식이 순수한 의미의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R&D 전문기관의 전담관리 업무 범위]

구분	주요 수행 업무
중장기전략·사업기획	○ R&D 분야별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 예측 ○ 국가R&D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
R&D과제 기획·선정	○ R&D과제의 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기획 공모에 관한 사항 ○ R&D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공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R&D과제 관리	○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R&D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R&D과제 평가·활용	○ R&D과제의 성과(중간·최종·추적)평가 및 성과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연구시설·장비 및 R&D과제정보 등록·관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사업추진 구조는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편성과 운영 권한을 해당 출연연에 부여하고 별도의 사업평가 없이 3년 단위 기관평가로 대체하는 정부출연금사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는 상이한 것이다.

한편, ETRI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R&D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원천) 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역할재정립(R&R¹²⁾) 방안(2019)과는 배치되는 개발단계 과제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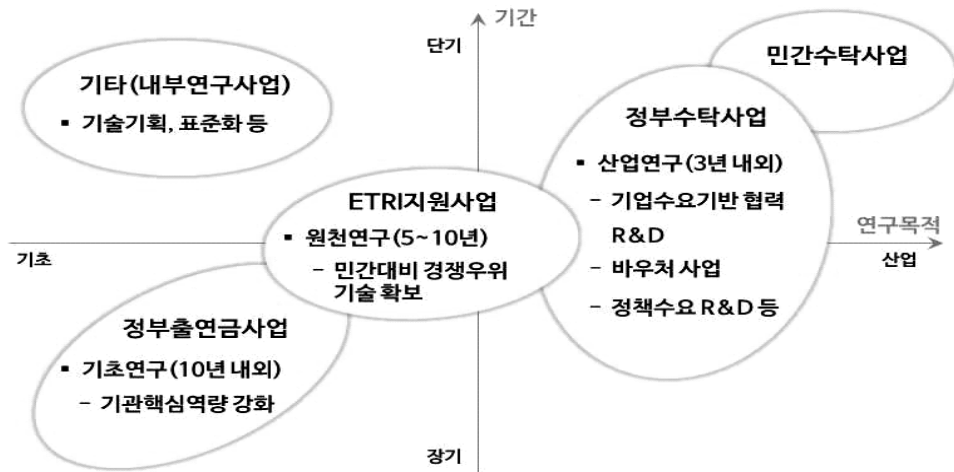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R&D단계
ICT핵심기술개발	ICT분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및 중장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기초·응용·개발
방송통신기술지원	방송통신 산업 분야 관련 기술개발	개발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R&R; Role & Responsibility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R&D 재원별 사업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의 기초연구·장기과제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ETRI 지원사업은 원천연구¹³⁾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기 산업과제(응용·개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R&D재원별 투자 현황]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즉, ETRI 지원사업은 정책지정 형태로 사업 수주 경쟁을 배제시켰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정부수탁사업의 원천기술개발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사업관리체계 상의 차이로 인해 기관 고유 임무 수행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방식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연연의 재정지원방식은 기관별 고유한 특성과 R&D재원 조달 방식(출연금/정부수탁)의 수단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13) 원천연구라는 단어는 R&D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표현으로, R&D단계는 기초·응용·개발단계로 구분되며, 원천은 기술의 고유성(originality)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원천기술(original technology)과 개량기술(improve technology)에서 유래한 것으로 R&D단계와는 무관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TRI지원 사업의 전체 과제 중 5년 이상 과제 비율은 출연금 사업(33.3%)에 비해 높은 74.5%로 중·장기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제별 착수시점의 연구단계 분포는 기초연구 85%, 응용연구 13%, 개발연구 2% 수준으로 기초연구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출연연에 대하여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방식이 PBS 중심의 정부수탁방식 보다 우월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출연연 안정예산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지정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 임무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3-2. 주요사업과 ETRI지원 사업 간 연구성과 불균형

가. 현 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정부출연금) 사업은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 R&D,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위해 기관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으로 ‘SW·콘텐츠 기초·원천기술개발’, ‘안전하고 스마트한 초연결 핵심기술개발’, ‘ICT 소재부품 핵심원천기술개발’, ‘방송·미디어 미래선도기술개발’ 등 장비시스템 구축을 제외한 7개의 대과제(내내역사업)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9 결산
SW·콘텐츠 기초·원천기술개발	자율성장형 AI 핵심원천기술 연구, IDX 플랫폼 원천기술 연구, 지능형 상황인지 및 휴먼 증강 원천기술개발 등	9,960
안전하고 스마트한 초연결 핵심기술개발	초연결 공간의 분산지능 핵심원천기술,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슈퍼브레인 핵심기술개발, 트러스트 데이터 커넥톱 원천기술개발 등	8,446
ICT 소재부품 핵심원천기술개발	임플란터블 능동 전자소자 원천기술개발, ICT 융합소자 핵심기술 개발,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컬러화 소재개발, 흑연계 음극 바인더 국산화 및 셀 및 공적 적용성 검증 등	5,288
방송·미디어 미래선도기술개발	초실감 공간미디어 원천기술개발, 지능형 전파센서 및 무선에너지 전송 원천기술개발 등	3,732
ETRI R&D 역량 강화를 위한 선행적 기획기반 구축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및 표준화 연구, 미래핵심도전연구개발 등	6,395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활성화	호남권/대경권/수도권 지역산업 기반 ICT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7,593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기술사업화 성과확산	ETRI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1,200
장비·시스템구축		1,764
합계		44,3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ETRI지원) 사업¹⁵⁾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ICT 분야 중장기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ICT 핵심기술개발과 ‘방송통신기술지원’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ETRI지원) 사업의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19 결산
ICT핵심기술개발	ICT분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및 중장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	101,711
방송통신기술지원	방송통신 산업 분야 관련 기술개발	1,225

주: ETRI지원 사업은 인건비가 연구비 내에 포함되는 PBS사업으로, 실제 순수 R&D에 투입되는 비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정부출연금) 사업의 주요사업비와 유사한 규모임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관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R&D사업을 주요사업(정부출연금)과 ETRI지원 사업(정부수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양 사업간 연구성과 관리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업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사업과 ETRI지원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다를 뿐 기관의 고유임무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R&D사업이다. 따라서 유사한 분야의 과제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R&D과제의 내용으로는 주요사업인지 ETRI지원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출연금/수탁)에 따라 사업관리 방식이 다르고 세부주체의 R&D단계 및 연구기간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관리 방식의 차이가 실제 양 사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해 양 사업의 최근 5년간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15)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2135-301

성과항목은 국가R&D사업의 질적 평가 강화에 따라 도입된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의 질적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유임무 사업의 성과 현황]

(단위: 건, %, 천원)

성과항목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IF상위 20% SCI 논문	주요사업	11	15	15	16	15	72
	ETRI지원사업	15	27	29	33	20	124
국내등록특허 K-PEG지수 A등급 비율	주요사업	69.2	52.3	0	-	-	61.7
	ETRI지원사업	61.2	80.1	57.1	50	-	65.8
국제특허 출원/등록 건수	주요사업	83/45	70/26	45/5	38/1	-	236/77
	ETRI지원사업	182/68	169/37	199/28	164/2	32/-	746/135
기술이전 건수	주요사업	118	78	54	23	4	277
	ETRI지원사업	93	62	35	33	15	238
건당 평균 기술료	주요사업	35,808	34,710	43,778	30,965	9,625	36,273
	ETRI지원사업	33,679	31,106	29,581	20,030	49,400	31,505

주: 1. IF 상위 20% SCI 논문은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IF(Impact Factor)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논문을 말함

2. K-PEG(Patent Evaluation Grade) 지수는 특허청에서 도입한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로서 S등급부터 C등급 중 A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 건수를 말함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사업과 ETRI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성과에 따르면, 기술이전건수 및 건당 평균 기술료를 제외하고 ETRI지원 사업이 주요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영향력지수(IF) 상위 20% SCI급 논문의 경우 최근 5년동안 ETRI지원사업이 주요사업보다 52건이 많았으며, 국내등록특허 중 질적평가(K-PEG) A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율도 ETRI지원 사업이 주요사업에 비해 평균 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PEG 지수는 특허심사를 통과한 등록특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ETRI지원 사업은 2018년에 수행한 R&D과제에서도 특허등록 사례가 다수 나왔지만 주요사업의 경우 2017년 1건만 특허등록이 되었으며 K-PEG지수는 C등급이 나왔을 뿐, 2018년 이후 아직 특허등록 된 사례가 없다.¹⁶⁾

특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국제특허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에 출원건수를 단순히 양적지표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양 사업의 국제특허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비교하면 ETRI 지원사업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 지표의 경우 사업규모나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사업과 ETRI지원 사업은 사업규모나 R&D과제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양 사업의 성과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특허의 경우 등록 건수에서 양 사업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 국내출원 무심사 전략에 따라 특허출원 시 심사청구를 같이 진행하지 않는 무심사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특허출원 무심사 전략은 과도한 특허관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유망기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미활용특허를 줄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허심사를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보다는 출원일 선점 후 심사청구 유예기간 동안 기술의 가치와 활용성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수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ETRI지원 사업의 경우 무심사전략에도 불구하고 매년 등록특허가 일

16) 특허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심사청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허심사에서 특허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ETRI지원 사업에서 등록특허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특허를 단순히 출원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허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특허출원시에 심사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유예기간(5년)을 최대한 활용하여 권리는 선점하되 특허유지비용 절감 및 미활용특허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사업간 R&D성과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업관리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양 사업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R&D사업별로 자체-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 지원금(정부출연금)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성과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에 출연금지원 사업의 경우, 출연연 기관장 임기를 기준으로 3년 단위 기관평가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성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평가주기 및 평가범위 등을 조정해 준 것이지만 기관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성격의 R&D사업이 사업관리 및 평가방식의 차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금 사업과 정부수탁(PBS) 사업 평가제도 비교]

구분	정부출연금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정부수탁(PBS)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비 지원)
평가단위	기관평가(기관 단위)	사업평가(세부사업 단위)
평가주기	3년(기관장 임기)	1년
평가주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집행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즉, 기관평가를 받는 정부출연금 사업의 경우 출연연의 연구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취임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우수성을 3년 단위로 평가하며 이때 R&D성과는 성과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반면에, 정부수탁(PBS) 사업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 종료 및 종료이후의 추적평가까지 매년 사업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며,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시로 특정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 전반의 진단, 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국가R&D사업 평가유형별 대상 및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ETRI지원 사업은 통상적인 정부수탁(PBS)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R&D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관 고유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의 중장기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금 사업의 주요사업에 비해 연구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TRI지원 사업이 정책지정에 따라 기관의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해 주는 것 외에는 PBS방식의 정부수탁사업과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업성과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원화된 기관 고유임무 지원 R&D사업 간에 나타난 연구성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사업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방식 고도화 필요

가. 현 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ETRI지원)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 지정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R&D사업의 주관기관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책지정사업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R&D)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R&D사업을 말한다.

[국가R&D사업의 정책지정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분석의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ETRI지원) 사업은 국가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에 지원되는 정책지정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R&D과제의 목적성·차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지정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엄격한 공모절차를 거치는 국가R&D사업과 달리 운영되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지정 사업은 매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차년도 정책지정사업(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쳐 연말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해당 부처는 예산 집행시 정책지정 사업에 대해 별도의 과제공모 없이 정책 지정된 해당 출연연에게 R&D과제를 수탁하게 된다.

2019년 출연연 대상 정책지정 사업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기관에서 23개 세부사업(96개 지정과제), 총 5,405억 3,800만원을 정책지정 형태로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출연연 대상 정책지정 사업 선정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대상 세부사업 수(지정과제 수)	지정규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지원 등 14개 세부사업(75개 과제)	175,7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등 6개 세부사업(6개 과제)	271,00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개발 사업(13개 과제)	89,29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1개 과제)	1,079
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1개 과제)	3,454
합계	23개 세부사업(96개 과제)	540,53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가장 큰 규모의 정책지정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형발사체개발, 달탐사 등 우주개발 관련 국가R&D사업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정책지정의 요건에 따라 국가주도가 불가피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지정의 사유가 분명하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ICT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전문기관으로 한국전자통

신연구원이 유일하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¹⁸⁾

특히 ICT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대하여, 정책지정을 통해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경쟁공모에 의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사업목표 달성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정사유 및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ETRI지원 사업과 유사한 분야(ICT 원천기술개발)의 R&D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쟁공모(PBS)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정부수탁사업)은 대략 7개 사업이며 2019년 결산기준 2,613억 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분야 원천기술개발 관련 PBS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19 결산
IC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ICT기반의 산업융합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ICT 융합신산업 육성	62,199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 원천 기반요소 기술개발	106,546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개발	고난이도 차세대 AI핵심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AI, AI제품서비스 원천기술개발	8,435
양자센서핵심 원천기술개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센서 핵심기술, 첨단산업 견인형 양자센서 개발, 양자기반 센서 신뢰성 플랫폼 개발	4,594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디지털콘텐츠 미래원천기술의 선도적 개발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12,624
정보보호핵심 원천기술개발	안전한 국가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기술 등 정보보호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61,905
가상/증강현실 (VR/AR)콘텐츠 원천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산업 육성	5,000
합계		261,303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따르면, 국제특허분류(IPC) 상 전기통신기술(H04) 분야의 가장 선도적인 국내연구기관 중 1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며, 2위 LG전자, 3위 삼성전기, 4위 삼성전자, 5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분야의 국가R&D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사업 모두 ETRI지원 사업과 유사한 ICT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경쟁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는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과제당 수행기간 및 규모 면에서 ETRI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특수한 분야이고, 차세대 이동통신과 같이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전술한 타 정책지정 사업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단위로 특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우주개발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R&D과제) 단위로 기관을 지정하여 부분적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그런데 ETRI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명에 연구분야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국가 R&D사업과 달리 연구 분야 대신에 기관명을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R&D사업이다.¹⁹⁾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예산 지원을 위해 사업 내 모든 과제의 수행기관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정책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관 고유임무 달성을 위해 정책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ETRI지원 사업의 R&D과제에 대하여 정책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제추진의 목적성·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19) 순수하게 기관출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관출연금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건비, 경상비, 자체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사업¹⁾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출연금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 사업 전체의 2019년 예산액 1,696억 4,800만원 중 97.95%인 1,66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 회계연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출연금 사업	169,648	169,648	0	0	169,648	166,168	97.95	0	3,480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48,084	48,084	0	0	48,084	0	100.0	0	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반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다르게 자체 R&D인력을 통해 직접 R&D를 수행하는 R&D 수행기관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는 정보보호, 인터넷주소자원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²⁾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2332-30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1.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료 수입의 사용 배분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R&D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여 총 81억 3,700만원의 R&D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R&D사업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R&D 사업명	예산액	소관부처
1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분석 및정보공유기술개발	1,500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2	경량암호등의암호안전성분석자동화기술개발	300	
3	격자기반양자내성공개키암호스킴개발	150	
4	클라우드기반IoT위협자율분석및대응기술개발	1,700	
5	안전·재난감시용지능형영상장비산업육성기반구축	1,520	
6	자기학습형사이버면역기술개발	1,800	
7	국내시장 글로벌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70	
8	스마트 퍼실러티 환경보호를 위한 신뢰기반 사이버 보안 플랫폼	100	
9	국가기간망 사이버공격 사전 예방을 위한 지능형 5G 코어망 비정상 공격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680	
10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50	국토 교통부
11	인공지능을 이용한 웹 위협 탐지 및 예측 자동화 시스템	267	국방부
합계		8,137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나. 분석의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R&D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료 수입을 배분하면서 정부가 정한 사용비율은 일정 수준 준수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사업을 수행한 후 발생하는 R&D성과를 기업 등에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실시권자(기업 등)가 R&D성과의 소유기관에 기술료를 지급하게 된다.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국가R&D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료의 사용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50% 이상), 기술이전·사업화 경비(1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10%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용(5% 이상)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공공기관)의 기술료 사용범위]

구분	기술료 사용 용도
기술료의 5%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기술료의 50% 이상	R&D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료의 10%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술료의 10%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그 외 나머지 금액	R&D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국가R&D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년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편성 및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도별 기술료 수입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편성	비중	집행	편성	비중	집행	편성	비중	집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35.5	17.0	33	48.5	10.0	48.5	20.5	10.0	6.5
기술개발(R&D) 재투자	35.5	17.0	33	48.5	10.0	48.5	20.5	10.0	6.5
지식재산권 활용	10	5.0	10	24	5.0	18	10	5.0	0
참여연구원 인센티브(보상금)	102	50.0	102	244	50.0	151	101	50.0	101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보상금)	20	10.0	0	0	0.0	0	14	7.2	7
그 외 나머지 금액	1	1.0	1	122	25.0	64	36	17.8	0
총 계	204	100.0	179	487	100.0	330	203	100.0	121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료 수입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사용용도별 비중을 일정수준 준수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부의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던 2017년, 2018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19년의 경우에도 기술료 수입의 7.2%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료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의 경우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으로 기술료의 10%를 편성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서 해당 의무비율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관련 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

그러나 기술료 사용배분에 관한 의무비율 규정은 해당 훈령의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⁵⁾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23조에서도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의무비율 기준은 2010년에 마련된 것으로 기술료 수입을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편성된 금액조차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료 수입의 사용에 있어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지출 비중과 사용용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6)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 또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이를 지급해야 할 기술이전 기여자가 없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만큼 기술이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4-2. R&D 재투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료 사용을 지양할 필요

가. 현 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가R&D사업 성과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의 배분을 위해 자체적인 ‘기술이전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료 수입에 대한 배분 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료 배분 기준]

배분 분류	배분율	내용	비고
지재권 비용	5%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참여연구원 성과금	50% 이상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 필요경비	10%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여자 성과금	10% 이상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성과금	
기타	차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이전업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나. 분석의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R&D 재투자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외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등 R&D 재투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기술료의 24.3%를 R&D재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도별 기술료 수입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술개발(R&D) 재투자	71	34	97	19.9	41	20.2	168	24.3
총 계	204	100.0	487	100.0	203	100.0	691	100.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체 규정을 통해 기술료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R&D 재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과제 기획(자료조사, 전문가 활용), 성과 홍보(전시회 참가, R&D 홍보), 국내·외 출장 여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통상적으로 기술료 수입의 R&D 재투자라고 하면, 신규 R&D과제에 투입되는 비용을 기술료로 지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관운영비에 포함되는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비를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술료 사용배분 시 준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르면, 기술료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 재투자사업의 범위를 ‘재투자 사업’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R&D 재투자 사업의 범위]

구분	사업내용
재투자사업	R&D 과제에 재투자하는 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사업	1. R&D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0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술료 사용범위)를 바탕으로 작성

7)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이전업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참조.

상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R&D 재투자의 범위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까지 확대하더라도 국내외 출장여비 등 기관운영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규정에서 기술료 수입의 사용범위에 별도로 기관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R&D 재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부적절하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R&D 재투자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이 R&D 재투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문비, 인건비, 출장비 등의 예산항목으로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료 수입 중 R&D 재투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2017	o R&D과제 연구개발 주제 발굴,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위한 자문 및 회의 추진비	17
	o 기술개발 행정 업무 지원 및 과제 추진 데이터 생성을 위한 아르바이트 활용비	1
	o 연구개발 성과 홍보 및 전시회 개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운영비	14
	o R&D 연구개발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비	30
	o R&D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비품 등 자산 취득비	2
	o 기술개발 결과 성과확산 및 홍보, 관계부처간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출장비	2
	소 계	66
2018	o R&D과제 연구개발 주제 발굴,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위한 자문 및 회의 추진비	18
	o 연구개발 성과 홍보 및 전시회 개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운영비	43
	o 기술개발 결과 성과확산 및 홍보, 관계부처간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출장비	5
	o 기술개발 행정 업무 지원 및 과제 추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르바이트 활용비	29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o R&D 연구개발 활용 비품 등 자산 취득비	8
	소 계	103
2019	o R&D과제 연구개발 주제 발굴,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위한 자문 및 회의 추진	14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R&D재투자 비용으로 사용하는 자문비, 인건비, 출장비 등은 신규R&D과제 기획 등 과제수주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신규R&D과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행중인 R&D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술료 수입의 R&D재투자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⁸⁾)의 경우, 기술료 수입의 R&D 재투자 시에는 일정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재투자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가, 적정한 신규 R&D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이에 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R&D 재투자 방식은 재투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R&D 재투자 예산의 업무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료 수입의 R&D 재투자 시에 재투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처리절차도 R&D 재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성을 제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료 및 발생품 양여매각수입 관리지침’ 제4조(사용절차) 참조.

집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중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 동 엽 예산분석관
이 은 경 예산분석관
임 길 환 예산분석관
전 수 연 예산분석관
안 옥 진 예산분석관
김 선 영 예산분석관
김 보 은 예산분석관

지원 | 박 미 현 행정실무원
이 하 림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갭 프로세스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310-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